

연구보고서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이명구, 함은구, 배계완, 이경희, 조흠학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 연구진

연구기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명구 (교수, 을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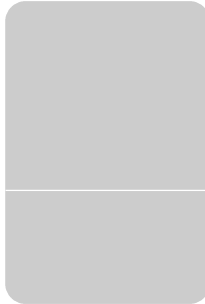
연구원 : 함은구 (조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배계완 (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이경희 (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조흠학 (교수, 인제대학교)





# 요약문

- 연구기간 2024년 04월 ~ 2024년 10월
- 핵심 단어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안전경영, 리더십
- 연구과제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1. 연구배경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결정하는 정점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리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은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인식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경영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은 안전보건교육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부여받지 않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관한 역할과 의무를 인식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을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은 사후 별책교육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국가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 조사,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운영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주 교육과정 재설계(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수행 중 도출된 사업주의 산재예방 역할 인식을 위한 기타 제도·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1) 재해 현황 조사

- (1) 사업의 종류별 근로자수, 사업장수, 재해자수(사망재해자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을 집중관리 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5~49인 규모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장수는 23.5%이나 근로자수는 42.8%, 요양재해자수는 40.4%, 사망자수는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재해자 비율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5~4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안전경영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 (3) 대표적인 재해통계지표인 재해율과 사망만인율과 유사하게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인 요양재해백사율을 산출한 결과, 제조업 및 건설업 모두 평균 8.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측면에서는 13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여야 요양재해 1건이 발생한다는 통계이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요양재해백사율은 낮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는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견인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4) 요양재해건수가 10년에 1건 정도 발생하는 현실에서 재해발생후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계몽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계몽의 출발은 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현행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 이 있어 사업주의 예방교육 및 벌칙교육을 신설(1990.1.13.)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미성숙으로 예방교육을 삭제(1994.3.29.)하고 벌칙교육만 존치하였다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규제완화법으로 벌칙교육 제 도를 정지(1997.8.3.)하였고, 이후 산안법 개정으로 사업주 교육제도는 삭제(2007.7.27.)하였다.
- (2)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어 일부 업종 및 50인 미만 사 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제도를 부활(2013.6.4.)하고 자율제로 운영 하되 이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인하정책을 도입하였고, 산안법 전면 개정(2019.1.15.)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26.)을 통하여 사업 주 벌칙교육을 부활하였다.
- (3) 교육제도 변천사 등을 통하여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교육기관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예방교 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설문조사 결과

-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는 법적 안전보건관리 주체는 사업주이지 만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직책을 묻는 설문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담당직원으로 전이함을 알 수 있었다.

- (2)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에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92.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0%에 육박하여 사업주 교육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 (3)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을 교육받고자 하는 요구도가 가장 강하고, 정부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안내보다는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자료 및 정보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 (4)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중 58명(49.2%)이 사업주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여 전문가 집단의 요구도(63.4%)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1.5%)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제조업(37.1%)은 비교적 의무화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81.8%)이 의무화 요구도가 가장 높고 300인 이상(56.7%)도 평균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고, 5~50인 미만(43.9%)과 5인 미만(30.0%) 사업장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의무화 요구이지만 상당수의 응답자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 (5) 사업주는 응답자 51명 중 22명(43.1%)만 의무화를 선호하여 전체 평균 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의무화 선호도가 높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60.5%)가 가장 높은 의무화 선호도를 보였다. 전문가 중에서는 학계(80.0%)와 교육기관(73.7%) 전문가 집단이 의무화 요구도가 높았다.
- (6) 사업주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7) 사업주 교육과정으로 교육주기는 ‘매년’(56.0%), 교육시간은 ‘2시간’(40.5%), 교육방법은 ‘집체(대면)교육’(65.5%), 교육기관은 ‘정부기관’(53.5%)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교육 도입 필요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3.5%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필요한 이유는 ‘법적 의무 이해’가 가장 높고, ‘안전경영 의지 향상’, ‘안전보건관리 방법 학습’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대상 사업장은 모든 업종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66.3%)이 지배적이고, 교육형태는 의무교육(65.2%)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 (9) 사업주 교육을 자율제로 운영할 것을 대비하여 교육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호하는 항목 3가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0%가 ‘산재보험요율 할인’, 58.0%가 ‘안전보건개선자금 지원액 확대’, 55.5%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 40.0%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을 선호하고 있었다.

#### 4) 전문가 인터뷰 결과

- (1)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이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이 적시에 사업장 경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은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해를 증진시켜 서서히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3) 산업재해예방정책은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자문 및 교육(Consulting & Training)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 방법 컨설팅, 현장중심형 교육 이행 등이 요구된다.
- (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자율제로 한다면 참여율 낮을 것이고 의무제로 한다면 저항이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제로 하고 실속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율제로 하다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제로 전향하자는 의견, 위험한 업종에 한하여 의무제로

하자는 의견, 법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모든 업종에 의무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5) 의무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내용이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도움이 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5) 외국의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

- (1)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할 의무는 있으나 교육을 이수할 의무 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2) 영국의 경우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청의 권고용 가이드에서 소유자 및 고용주(owners and employers)도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 요소 및 방법에 대한 소개로 안전보건계획, 모니터링, 통제수단의 검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등의 교육기관에서 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고 있었다.
- (3)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 조건을 인식, 회피 및 예방하기 위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4) 독일은 DGUV 교육센터(IAG: Institut für Arbeit und Gesundheit)에서 임원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 (5)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행정지침을 근거로 경영수뇌부를 위한 안전위생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상공회의소 연학회 등의 경영자단체 및 산업재해방지단체와 연락을 취하여 종업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6)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 기본 지침”에 근거하여 “작업환경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지만, 산업안전보건 분야 여러 기관들이 개최하는 각종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6)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설계(안)

- (1) 사업주 교육을 의무교육(또는 권고)으로 적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국한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은 자율교육으로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기를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고만 하더라도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사업주 교육 이수를 의무(또는 권고)하는 때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여야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 (3) 사업주 교육은 자율교육을 기반으로 점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은 의무교육으로 전향하거나 많은 사업주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요구되므로,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수급활동과 직결한 안전보건활동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4) 의무교육은 공단 교육원 또는 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자율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적합할 것

이라 판단된다.

- (5)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에 따라 2~3시간으로 개발하고 이를 공단 교육원 등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하되, 교육과정의 정보공개, 수강자 모집 및 이행, 결과보고, 이수증 발급, 만족도 조사 등 정교한 교육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6)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고, 자칫 교육내용의 부실화 또는 목적 외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승인절차를 갖기를 희망한다.
- (7) 교육방법은 정형화된 법령정보, 정부정책 등은 원격교육으로 수행하고, 인식제고 교육, 전문화 교육, 사례중심교육 등은 토론 또는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으로 하는 것이 좋고, 집체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에 정보교류 등 회합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7) 기타 교육제도 개선(안)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현행 법령의 취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책임있게 수행할 전문가를 고용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만 선임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책임자 의무선임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활동을 책임있게 수행하든지 아니면 안전보건활동의 책임자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이므로 현행 선임기준에서 분류한 사업장 종류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명칭을 통일하여야 엄격한 법규이행 근간이 될 것이다.

-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정기교육 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소 직책에 맞는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작업지휘자는 관리감독자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고위험 작업에서 작업시작전 작업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이를 지휘하며, 근로자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들 작업지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기준이 부재하여,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휘자의 직무역량 강화 목적의 직무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국내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명을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검사원 양성교육 등 교육목적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강자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내용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내용과 관계된 직무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 (5) 관리책임자등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면, 동시에 6시간 등을 수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을 듣고 이를 합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6) 미국의 “교육훈련 요구 기준” 또는 일본의 작업주임자 “기능강습규정” 등과 같이 교육내용별 교육과정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구 활용방안

-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실효성 증진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설계(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
- 안전보건교육제도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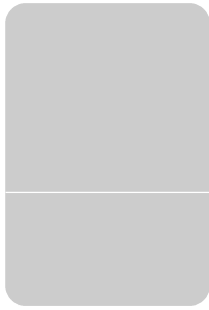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교수 이명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차장 김영형
  - ☎ 052) 703. 0829
  - E-mail item@kosha.or.kr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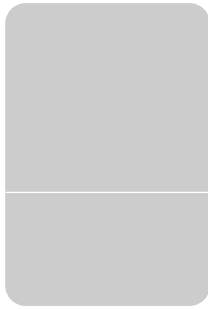
<b>I. 서 론</b> .....	<b>1</b>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표 .....	8
3. 연구의 방법 .....	10
<b>II.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b> .....	<b>13</b>
1. 재해 현황 조사 .....	15
2. 현행 제도 조사 .....	40
3. 설문조사 .....	55
4. 전문가 인터뷰 .....	120



## 목 차

<b>Ⅲ. 외국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제도</b> .....	<b>141</b>
1. 개 요 .....	143
2. 영 국 .....	144
3. 미 국 .....	162
4. 독 일 .....	169
5. 일 본 .....	174
6. 스웨덴 .....	180
7. 소 결 .....	185
<b>Ⅳ.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설계(안)</b> .....	<b>187</b>
1. 개 요 .....	189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필요성 .....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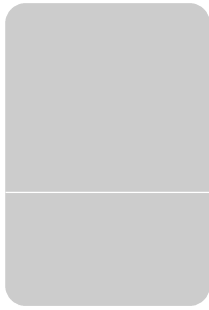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3. 국내 안전보건교육 시장의 여건 .....	197
4.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설계 .....	207
<b>V. 결론 및 건의사항 .....</b>	<b>223</b>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	225
2. 교육과정 설계 .....	226
3. 기타 교육제도 개선(안) .....	228
<b>참고문헌 .....</b>	<b>231</b>
<b>Abstract .....</b>	<b>233</b>
<b>부록 : 설문조사지 .....</b>	<b>239</b>



## 표

〈표 Ⅰ-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 의무자	3
〈표 Ⅰ-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
〈표 Ⅰ-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사업장의 규모	6
〈표 Ⅱ-1〉 사업종류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15
〈표 Ⅱ-2〉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16
〈표 Ⅱ-3〉 사업종류별 재해발생 현황	17
〈표 Ⅱ-4〉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19
〈표 Ⅱ-5〉 사업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21
〈표 Ⅱ-6〉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22
〈표 Ⅱ-7〉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24
〈표 Ⅱ-8〉 제조업의 사업장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27
〈표 Ⅱ-9〉 제조업의 사업장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29
〈표 Ⅱ-10〉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31
〈표 Ⅱ-11〉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재해자 현황	33
〈표 Ⅱ-12〉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34
〈표 Ⅱ-13〉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36
〈표 Ⅱ-14〉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상 사업주 교육의 개정 과정	40
〈표 Ⅱ-15〉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의 경과	50
〈표 Ⅱ-16〉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사업주 대상 예방교육	52
〈표 Ⅱ-17〉 설문지의 구성	55

〈표 II-18〉 응답자의 일반사항 .....	57
〈표 II-19〉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행 주체에 관한 설문 .....	59
〈표 II-20〉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방침 수립자’ 실태 .....	60
〈표 II-21〉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조치 주체’ 실태 .....	61
〈표 II-22〉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호구 제공 주체’ 실태 .....	62
〈표 II-23〉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주체’ 실태 .....	63
〈표 II-24〉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 실태 .....	64
〈표 II-25〉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의견수렴 주체’ 실태 .....	65
〈표 II-26〉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주체’ 실태 .....	66
〈표 II-27〉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인력 선임현황 조사 .....	67
〈표 II-28〉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관한 인식 .....	68
〈표 II-29〉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특성 .....	69
〈표 II-30〉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험 .....	71
〈표 II-31〉 직책이 사업주인 응답자의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 .....	71
〈표 II-32〉 사업주 교육 교육과정별 참여 빈도 .....	72
〈표 II-33〉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별 효과성에 대한 의견 .....	73
〈표 II-34〉 산재예방업무 수행에 있어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	74
〈표 II-35〉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 .....	74
〈표 II-36〉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한 이유 .....	75
〈표 II-37〉 사업장 산재예방의 핵심 직무자 .....	76
〈표 II-38〉 사업장 업종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 조사 실태 ..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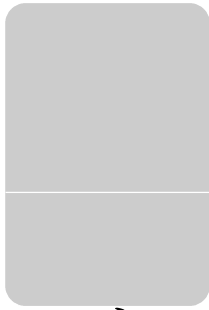
## 표

〈표 II-39〉 사업장 규모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 조사 실태	78
〈표 II-40〉 산재발생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79
〈표 II-41〉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 역량	80
〈표 II-4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필요성	80
〈표 II-4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우선순위	81
〈표 II-44〉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일반사항	82
〈표 II-45〉 사업주 교육을 경영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성	84
〈표 II-46〉 사업주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 선호도	85
〈표 II-47〉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의견	86
〈표 II-48〉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주기’에 관한 의견	87
〈표 II-49〉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시간’에 관한 의견	88
〈표 II-50〉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	90
〈표 II-51〉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91
〈표 II-52〉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주기’에 관한 의견	92
〈표 II-53〉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시간’에 관한 의견	93
〈표 II-54〉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	94
〈표 II-55〉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95
〈표 II-56〉 사업주 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조사	97
〈표 II-57〉 사업장의 업종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98
〈표 II-58〉 사업장의 업종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99
〈표 II-59〉 사업장의 규모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100

〈표 II-60〉 사업장의 규모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101
〈표 II-61〉 사업주 교육 참여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선호도 조사	103
〈표 II-62〉 사업장 업종별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 조사	104
〈표 II-63〉 사업장 규모별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 조사	106
〈표 III-1〉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144
〈표 III-2〉 영국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에 대한 하위 규정	146
〈표 III-3〉 IOSH 훈련과 기술과정	156
〈표 III-4〉 IOSH 사업주/경영자 교육과정	156
〈표 III-5〉 IOSH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157
〈표 III-6〉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162
〈표 III-7〉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163
〈표 III-8〉 미국 OTI 교육 센터 개설 교과목	165
〈표 III-9〉 미국 OTI 교육 센터 개설 교과목의 교육과정 설명 예	167
〈표 III-10〉 독일 IAG의 임원/전문가 교육과정	173
〈표 III-11〉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174
〈표 III-12〉 안전위생교육지침에 의한 교육 과목, 범위 및 시간	177
〈표 III-13〉 스웨덴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기관별 역할	183
〈표 III-14〉 국내·외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 비교	186
〈표 IV-1〉 사업장 종류별, 규모별 분포	197

# 표

〈표 IV-2〉 2023년도 직무교육 수행 실적 .....	200
〈표 IV-3〉 2023년도 직무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분석 .....	202
〈표 IV-4〉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분석 .....	202
〈표 IV-5〉 2023년도 공단 지역본부 사업주 교육 수행 실적 .....	203
〈표 IV-6〉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장수 분포 .....	205
〈표 IV-7〉 사업주 교육의 대상 사업의 종류 .....	207
〈표 IV-8〉 사업주 교육의 대상 사업장의 규모 .....	208
〈표 IV-9〉 근로자 행동에 기인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 .....	209
〈표 IV-10〉 사업주 교육의 교육형태(의무 또는 자율) 검토 .....	211
〈표 IV-11〉 현행 사업주 교육 관련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	212
〈표 IV-12〉 사업주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검토 .....	213
〈표 IV-13〉 사업주 교육의 교육내용 제안 .....	214
〈표 IV-14〉 사업주 교육의 교육방법별 장단점 비교 .....	218
〈표 IV-15〉 사업주 교육의 교육대상자수와 교육기관 여건의 검토 .....	219
〈표 IV-16〉 사업주 교육의 교육대상자 설정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221



## 그림목

[그림 Ⅰ-1] 연구내용 및 목표 .....	8
[그림 Ⅰ-2] 연구의 목적 .....	9
[그림 Ⅱ-1] 사업종류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	15
[그림 Ⅱ-2]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	16
[그림 Ⅱ-3] 사업종류별 재해발생 분포 .....	18
[그림 Ⅱ-4]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분포 .....	20
[그림 Ⅱ-5] 사업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	21
[그림 Ⅱ-6]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	23
[그림 Ⅱ-7]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	25
[그림 Ⅱ-8]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	26
[그림 Ⅱ-9]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	28
[그림 Ⅱ-10]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	29
[그림 Ⅱ-11]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	32
[그림 Ⅱ-12]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	32
[그림 Ⅱ-13]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	35
[그림 Ⅱ-14]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	36
[그림 Ⅲ-1] 안전위생 토크의 세미나 .....	178
[그림 Ⅳ-1] 미국 OSHA의 안전보건교육 요구 기준 .....	217



# I . 서 론

.....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 1) 국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교육의 종류는 <표 I-1>과 같다.

<표 I-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 의무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교육대상	교육 의무자
정기교육	근로자 / 관리감독자	사업주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사업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안전검사 대상기계 검사원 희망자	근로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검사원 자율안전검사기관 검사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사업주
직무교육 (신규교육 / 보수교육)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부여받지 않고 있다.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표 1-2>와 같이 시행하고 있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표 1-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교육의 구분	대상	교육방식	교육시간	관련 근거
벌칙성 교육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	의무교육	200시간 이하	산안법 제174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	의무교육	20시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예방성 교육	산재보험료를 인하를 받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주*	자율교육	4시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5항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시행령 제15조제4항)

## 2) 현행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한계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은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인식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경영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은 안전보건교육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리더(leader)가 있어야 하며, 리더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실질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사업장별 안전보건의 리더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가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선임의무가 있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그러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리더가 없는 실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리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사업주는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 역량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현행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표 I-2>와 같이 산재발생 후에 의무이수하는 벌칙성 교육이 있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으려는 사업장 사업주가 자율이수하는 예방성 교육이 있다.

안전보건 리더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규모는 <표 I-3>과 같고, 그 규모 미만인 사업장은 선임의무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직무에 대한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등으로 차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사업장의 규모<sup>1)</sup>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수

### 3)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은 해당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에 크게 좌우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도 및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제도가 중대재해처벌법이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 기준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로 채택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 산재보험료를 인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도 사업주 의식 수준 인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사업주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갖추고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사후 벌칙보다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

최근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병행하여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정착화한다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할 및 의무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관한 역할과 의무를 인식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을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및 자기규율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의 역할 인식이 중요하나, 산안법은 벌칙성 사업주 교육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과 의무를 인식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상·법령상의 의무를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재설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 2. 연구의 목표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국가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 분석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운영현황 조사
- 사업주 교육과정 재설계(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사업주의 산재예방 역할 인식을 위한 기타 제도·정책적 제언



[그림 I-1] 연구내용 및 목표

##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관한 역할과 의무를 인식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및 자기규율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및 실태조사,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 재설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I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방법

####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제시

- 사업장 종류 및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분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비대상 사업장의 재해률, 강도율 등의 비교)
- 사업주 교육이 의무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완화된 배경 조사를 통한 사업주 의무교육 확대 방안 모색

##### (2) 현행 사업주 교육의 문제점 분석

- 예방성 교육 관련 현행 법령 조사 및 분석(벌칙성 교육은 제외)
- 교육 목적·대상·방식(의무, 자율)·내용·시간·방법(대면, 비대면)·실시주체(정부, 민간)·강사 등 현행 교육과정 분석
- 선행 연구내용, 교육참여자의 만족도 설문 분석

#### 2) 주요 국가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 분석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 대상
- 사업주 교육 관련 법령·제도 분석
- 교육종류 및 교육과정 조사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방향 모색

### 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운영현황 조사

#### (1)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의견수렴

- 교육 참여 사업주, 사업주 단체, 교육실시기관 담당자 설문 및 인터뷰(설문 200개 이상, 인터뷰 20명 이상)
- 사업주 단체(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2개 단체 이상)
- 직능단체(퀵서비스사업자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 교육유형별 교육과정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요구도 조사

#### (2) 교육유형별 개선사항 도출

- 사업장 종류 및 규모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사업주, 경영책임자, 현장책임자 등) 제안
- 교육유형별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실시주체(정부, 민간)·교육방식 등에 관한 개선요구도 조사
-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 4) 사업주 교육과정 재설계(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1)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대상 구분 및 확대 방안

- 교육대상 사업장의 범위(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 교육대상자의 범위(사업주, 최고경영자 또는 현장책임자)

#### (2) 교육과정 개발

- 교육 목적·내용·시간·방법(대면, 비대면)·실시주체(정부, 민간)·강사 등
- 성과측정 지표 개발

5) 사업주의 산재예방 역할 인식을 위한 기타 제도·정책적 제언

(1)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안전보건교육규정」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2)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방안
- 교육이수 내용의 실적 관리 방안
-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의 모니터링

## Ⅱ.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 Ⅱ.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 1. 재해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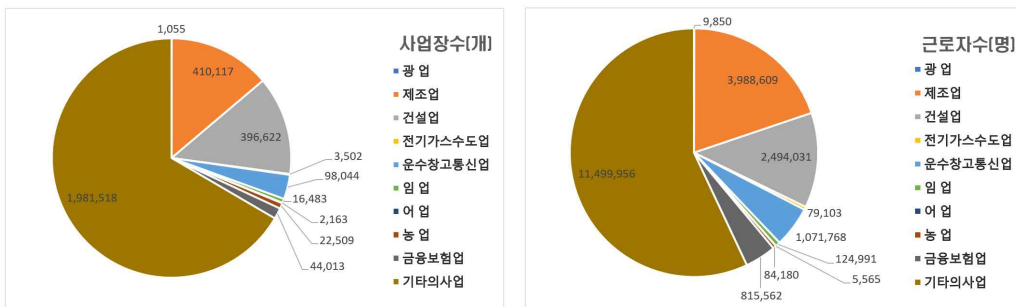
#### 1) 사업장 종류 및 규모별 분포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은 <표 Ⅱ-1>과 같이 전 산업 사업장 수는 2,976천 개 사업장이고 근로자수는 20,173천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 사업종류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2)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 업	어 업	농 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
사업장수	2,976,026	1,055	410,117	396,622	3,502	98,044	16,483	2,163	22,509	44,013	1,981,518
	100	0.04	13.8	13.3	0.12	3.3	0.6	0.07	0.8	1.5	66.6
근로자수	20,173,615	9,850	3,988,609	2,494,031	79,103	1,071,768	124,991	5,565	84,180	815,562	11,499,956
	100	0.05	19.8	12.4	0.39	5.3	0.6	0.03	0.4	4.0	57.0



[그림 Ⅱ-1] 사업종류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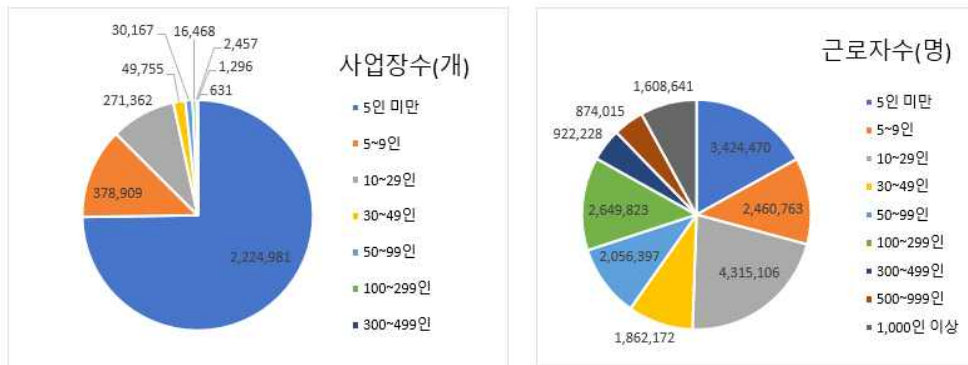
2) 근로복지공단, “2022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2023.10.

사업장수는 기타의 사업이 66.6%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약 13%씩이며, 운수창고통신업이 약 3%, 그 이외의 업종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수는 기타의 사업이 57%로써 가장 높고, 제조업이 약 20%, 건설업이 약 12%, 운수창고통신업이 약 5%이며, 그 이외의 업종은 미미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표 II-2〉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sup>3)</sup>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 산업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2,976,026	2,224,981	378,909	271,362	49,755	30,167	16,468	2,457	1,296	631
	100	74.8	12.7	9.1	1.7	1.01	0.55	0.08	0.04	0.02
근로자수	20,173,615	3,424,470	2,460,763	4,315,106	1,862,172	2,056,397	2,649,823	922,228	874,015	1,608,641
	100	17.0	12.2	21.4	9.2	10.19	13.14	4.57	4.33	7.97



〈그림 II-2〉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분포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전체 사업장수 297만 개소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이 75%에 육박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sup>4)</sup>은 23%를 초과하고, 50인 이상 사업

3) 근로복지공단, “2022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2023.10.

장은 2%가 되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별 소속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 2천만 명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이 17%, 5인 이상 50인 미만은 43%에 육박하여, 50인 미만이 전체의 약 60%, 5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가 약 40% 정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 규모이고,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이 전체 사업장수의 23%, 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 2) 사업의 종류별 재해발생 분포

사업의 종류별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사업종류별 재해발생 현황<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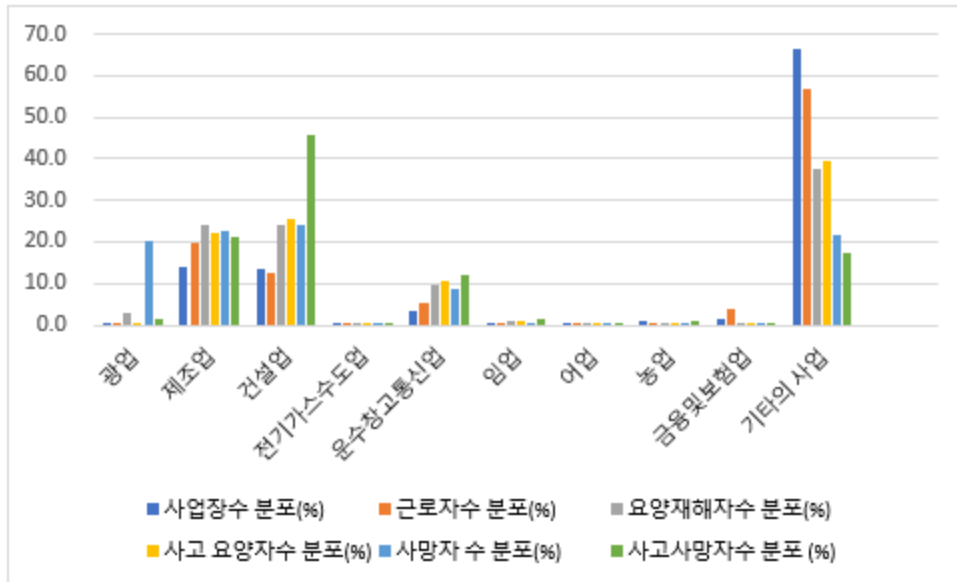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 업	어 업	농 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요양 재해자수	130,348	3,873	31,554	31,245	129	12,468	968	59	682	666	48,704
	100	2.97	24.2	24.0	0.10	9.6	0.74	0.05	0.52	0.51	37.4
사고요양 재해자수	107,214	149	23,764	27,432	105	11,591	928	56	635	465	42,089
	100	0.14	22.2	25.6	0.10	10.8	0.87	0.05	0.59	0.43	39.3
사망자수	2,223	453	506	539	3	198	13	1	12	16	482
	100	20.4	22.8	24.2	0.13	8.9	0.58	0.04	0.54	0.72	21.7
사고 사망자수	874	12	184	402	2	104	11	1	7	1	150
	100	1.4	21.1	46.0	0.23	11.9	1.26	0.11	0.80	0.11	17.2

4) 2024.1.27.부터 추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

5)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3.12.

사업의 종류별로 요양재해자수, 사고요양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 등의 분포를 [그림 II-3]에 나타내었다.



[그림 II-3] 사업종류별 재해발생 분포

광업은 사망자수(453명)는 전체 사망자수(2,223명)의 20%를 초과하고 있으나 사고사망자수(12명)는 전체 사고사망자수(874명)의 1.4%로써 광업의 사망자는 대부분 직업성질병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요양재해자와 사망자도 상당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가스수도업, 임업, 어업,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자는 전 산업 재해자 중에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체 재해자수 및 전체 사망자수의 2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과 건설업이 중점 관리 대상 업종이며, 그 다음은 운수창고통신업이 중점 관리 대상 업종인 것을 알 수 있다.

### 3)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분포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sup>6)</sup>**

(단위 : 명, %)

구 분	전 산업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요양 재해자수	130,348	38,432	16,179	26,506	10,005	9,958	12,878	3,988	4,150	8,252
	100	29.5	12.4	20.3	7.7	7.6	9.9	3.1	3.2	6.3
사고요양 재해자수	107,214	34,557	14,165	22,709	8,357	7,935	9,530	2,604	1,697	5,660
	100	32.2	13.2	21.2	7.8	7.4	8.9	2.4	1.6	5.3
사망자수	2,223	572	225	387	188	184	256	113	173	125
	100	25.7	10.1	17.4	8.5	8.3	11.5	5.1	7.8	5.6
사고 사망자수	874	342	112	176	77	49	71	16	12	19
	100	39.1	12.8	20.1	8.8	5.6	8.1	1.8	1.4	2.2

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수, 사고요양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 등의 분포를 [그림 II-4]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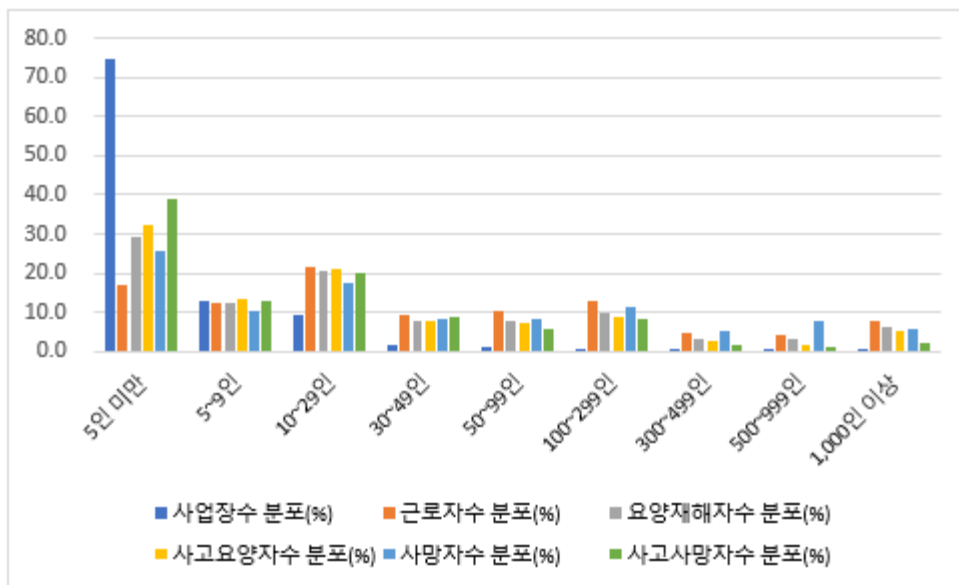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수는 98%를 초과하고 근로자수는 60%에 육박하고 있고, 요양재해자수도 전체의 70%에 근접하고 사망자수도 61%를 초과하며, 사고성 재해는 훨씬 더 많아 사고사망자수는 전체의 80%를 초과하고 있다.

2024.1.27.부터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는 전체의 40%, 사망자수는

6)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3.12.

36%이며, 사고성 재해자수는 요양자 및 사망자 모두 전체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는 전체 재해자 수 감소를 위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II-4]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분포

#### 4) 사업의 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표 II-1>과 <표 II-3>을 이용하여 사업의 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5> 및 [그림 II-5]와 같다.

재해백인율<sup>7)</sup>은 전 산업 평균 0.65 대비 높은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이며, 상대적으로 재해백인율이 낮은 업종

7)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뒤에서 나올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와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백인율이란 용어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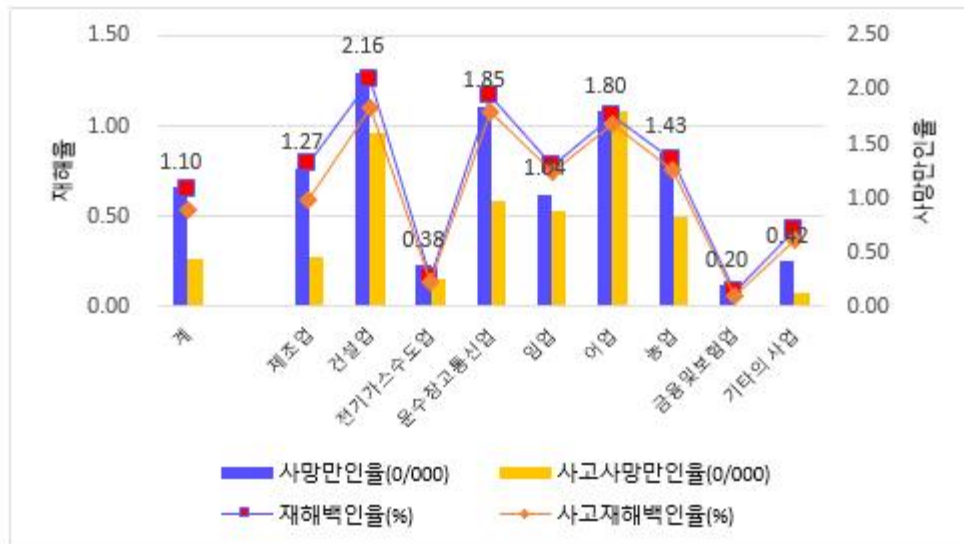
은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이다.

사망만인율은 전 산업 평균 1.10 대비 높은 업종은 재해백인율과 동일한 업종이며, 사망자 중 사고사망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건설업, 임업, 어업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5〉 사업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단위 : %, ‰)

구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
재해백인율	0.65	39.32	0.79	1.25	0.16	1.16	0.77	1.06	0.81	0.08	0.42
사고재해백인율	0.53	1.51	0.60	1.10	0.13	1.08	0.74	1.01	0.75	0.06	0.37
사망만인율	1.10	459.9	1.27	2.16	0.38	1.85	1.04	1.80	1.43	0.20	0.42
사고사망만인율	0.43	12.18	0.46	1.61	0.25	0.97	0.88	1.80	0.83	0.01	0.13



[그림 II-5] 사업종류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광업 제외)

재해백인율 및 사망만인율이 전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이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하면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표 II-2>와 <표 II-4>를 이용하여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6> 및 [그림 II-6]과 같다.

**<표 II-6>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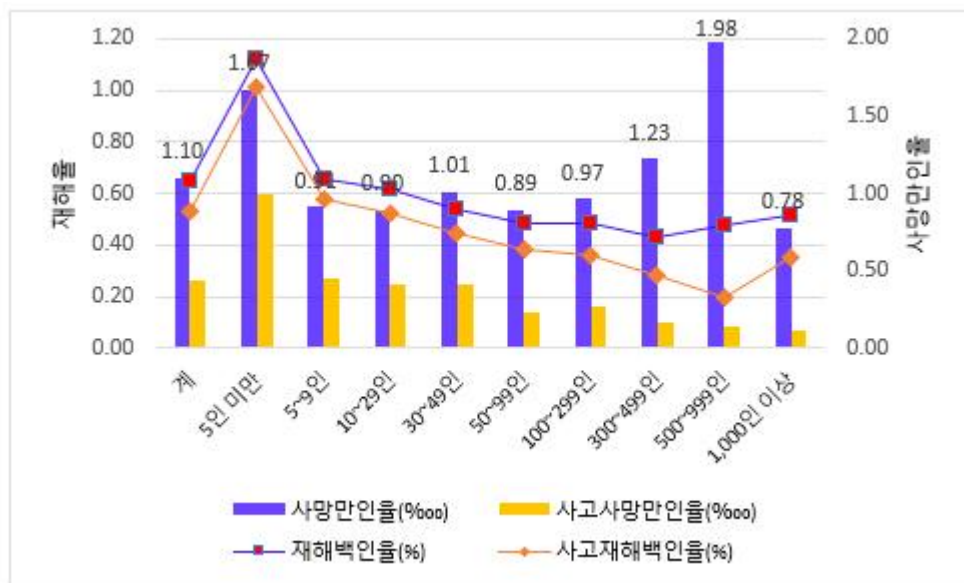
구 분	전 산업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재해 백인율	0.65	1.12	0.66	0.61	0.54	0.48	0.49	0.43	0.47	0.51
사고재해 백인율	0.53	1.01	0.58	0.53	0.45	0.39	0.36	0.28	0.19	0.35
사망 만인율	1.10	1.67	0.91	0.90	1.01	0.89	0.97	1.23	1.98	0.78
사고사망 만인율	0.43	1.00	0.46	0.41	0.41	0.24	0.27	0.17	0.14	0.12

재해백인율은 전 산업 평균 0.65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이 월등히 높고 5~9인 사업장이 약간 높지만 그 이외의 규모에서는 모두 평균 대비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사고재해백인율도 이와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사망만인율은 300~499인, 500~999인 사업장이 전체 평균 대비 오히려 높게 발생되었고, 그 이외 재해백인율, 사고재해백인율, 사고사망만인율은 일상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질병 사망자<sup>8)</sup>가 다수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대규모 사업장은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500~999인 사업장의 사망자 173명 중 사고사망자가 12명, 직업성질병 사망자가 161명이었던 것이다. (<표 II-4> 참조)



[그림 II-6]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 5)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로 판단할 때 제조업은 중점 관리하여야 할 업종에 해당되며, 제조업이 전 산업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8) [그림 II-6]의 사망만인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차에 해당되는 것이 직업성질병 사망만인율이며, 재해백인율도 이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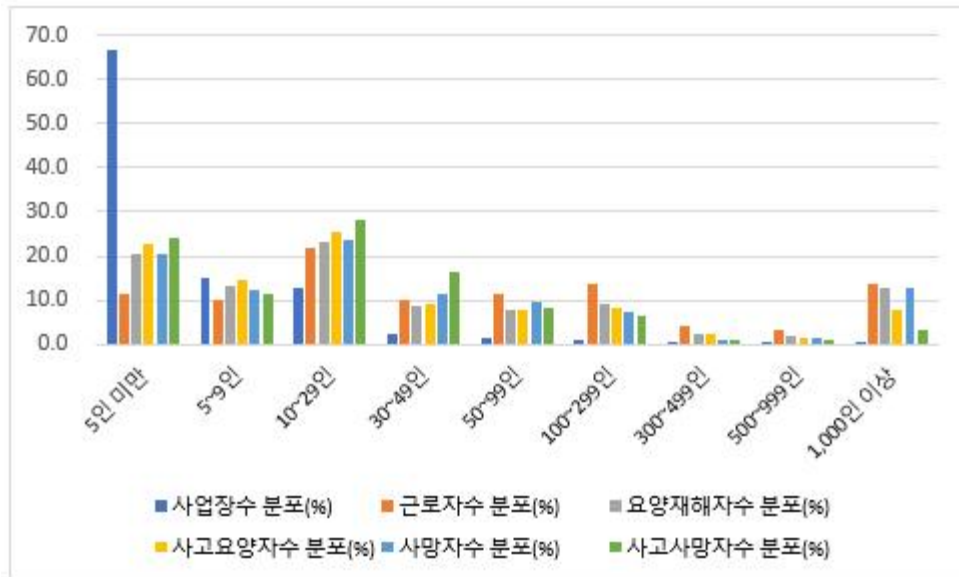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사업장의 수 : 13.8% / • 근로자의 수 : 19.8%
- 요양재해자의 수 : 24.2% / • 사고요양자의 수 : 22.2%
- 사망자의 수 : 22.8% / • 사고사망자의 수 : 21.1%

〈표 II-7〉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단위 : 개소, 명, %, ‰)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410,117	273,119	62,291	53,165	10,647	6,617	3,497	441	202	138
	100	66.60	15.19	12.96	2.60	1.61	0.85	0.11	0.05	0.03
근로자수	3,988,609	452,878	409,129	868,739	403,096	456,575	554,716	166,609	136,066	540,801
	100	11.4	10.3	21.8	10.1	11.4	13.9	4.2	3.4	13.6
요양재해자수	31,554	6,521	4,150	7,281	2,702	2,530	2,920	774	648	4,028
	100	20.7	13.2	23.1	8.6	8.0	9.3	2.5	2.1	12.8
사고요양재해자수	23,764	5,394	3,466	6,029	2,231	1,841	1,994	533	381	1,895
	100	22.7	14.6	25.4	9.4	7.7	8.4	2.2	1.6	8.0
사망자수	506	103	62	120	58	48	37	6	8	64
	100	20.4	12.3	23.7	11.5	9.5	7.3	1.2	1.6	12.6
사고사망자수	184	44	21	52	30	15	12	2	2	6
	100	23.9	11.4	28.3	16.3	8.2	6.5	1.1	1.1	3.3
재해백인율	0.79	1.44	1.01	0.84	0.67	0.55	0.53	0.46	0.48	0.74
사고재해백인율	0.60	1.19	0.85	0.69	0.55	0.40	0.36	0.32	0.28	0.35
사망만인율	1.27	2.27	1.52	1.38	1.44	1.05	0.67	0.36	0.59	1.18
사고사망만인율	0.46	0.97	0.51	0.60	0.74	0.33	0.22	0.12	0.15	0.11



[그림 II-7]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전 산업의 경향과 유사하게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7%를 초과하고, 이에 소속된 근로자는 53%를 초과하고 있다. 5인 미만은 제외하고 5인~49인 사업장만 하더라도 사업장은 전체의 30%가 넘고 근로자는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7]에서 사업장의 규모별 개략적 형상만 보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506명의 47%(5인 미만을 포함하면 67%)를 초과하고, 사고사망자는 전체 184명의 56%(5인 미만을 포함하면 8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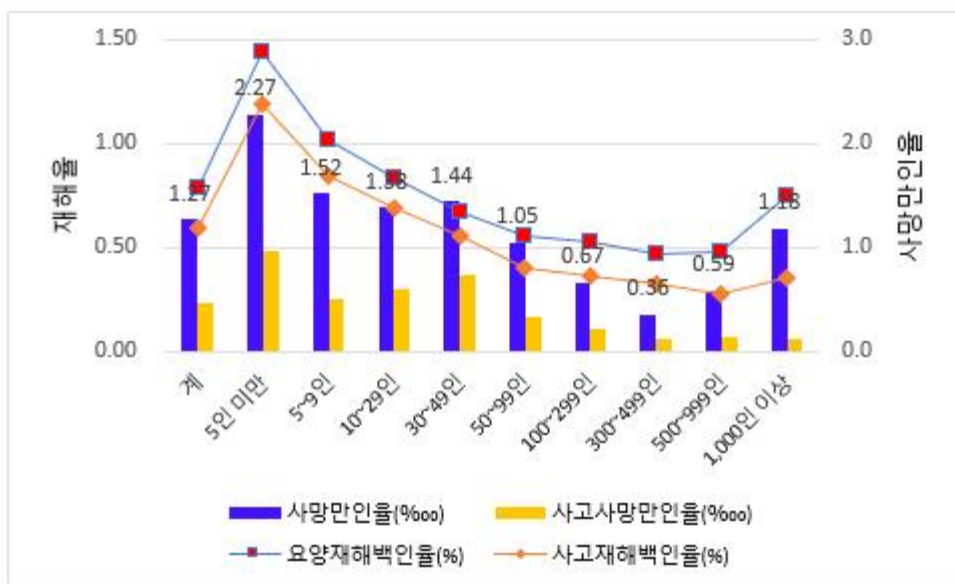
[그림 II-8]은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을 나타낸 것이고 각각에 사고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을 병기하였고 각 범주에서 중방향 크기의 차에 해당하는 것은 직업성질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다.

전체 사망자 506명 중 사고사망자가 184명으로 직업성질병 사망자수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업성질병 사망자 비율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요양재해자인 경우에는 전체 요양재해자 중에서 직업성질병 재해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재해현황 평가지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사고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수는 138개 사업장이고 이에 소속된 근로자수는 540,801명 이었다. 전체 평균 재해백인율이 0.79인데 0.74, 전체 평균 사망만인율이 1.27인데 1.18이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관리가 매우 불량하였음을 뜻한다.



[그림 II-8]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재해예방활동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에 재해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재해율)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사망만인율)와 유사하게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로 산출한 요양재해백사율과 사업장 1,000개당 사망자수로 산출하는 사망천사율 지표를 도입하여 제조업 재해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I-8〉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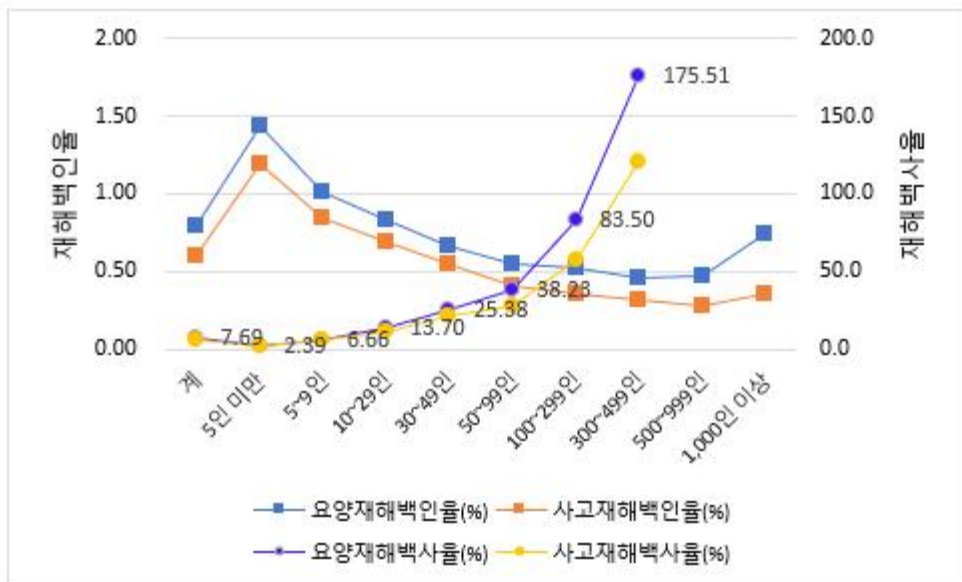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요양재해백인율	0.79	1.44	1.01	0.84	0.67	0.55	0.53	0.46	0.48	0.74
사고재해백인율	0.60	1.19	0.85	0.69	0.55	0.40	0.36	0.32	0.28	0.35
요양재해백사율	7.69	2.39	6.66	13.70	25.38	38.23	83.50	175.51	320.8	2918.8
사고재해백사율	5.79	1.97	5.56	11.34	20.95	27.82	57.02	120.86	188.6	1373.2

\* 요양재해백인율 :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요양재해백사율 :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

제조업 전체 평균 재해백인율은 0.79이며, 규모가 클수록 감소 추세에 있고 사고재해백인율은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활동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인 재해백사율은 전체 평균 7.69로써 100개 사업장 중 약 8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각 사업장 측면에서는 10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8명의 요양재해자가 발생한 것이고 10년 동안 1건의 재해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은 재해예방활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마련이다.

1,000인 사업장은 사업장 100개당 2,9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장당 2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500~999인 사업장은

사업장당 3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규모 사업장은 매년 재해자가 여러 명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재해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예방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재해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II-9]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사망재해 관련 현황을 <표 II-9>와 [그림 II-10]에 각각 나타내었다. 사망 재해도 요양재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는 전체 평균 1.27명이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만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장 1천 개당 사망자수인 사망천사율은 전체 평균 1.23이며, 이는 개별 사업장 입장에서는 1천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때 1명 정도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다는 수치이다. 사망천사율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의 463.8이라는 것은 1천 개 사업장에서 463명의 사망자가 발생(1백 개 사업장에서 46명)하였다는 수치이며, 이는 1,000인 이상 사업장 46%는 매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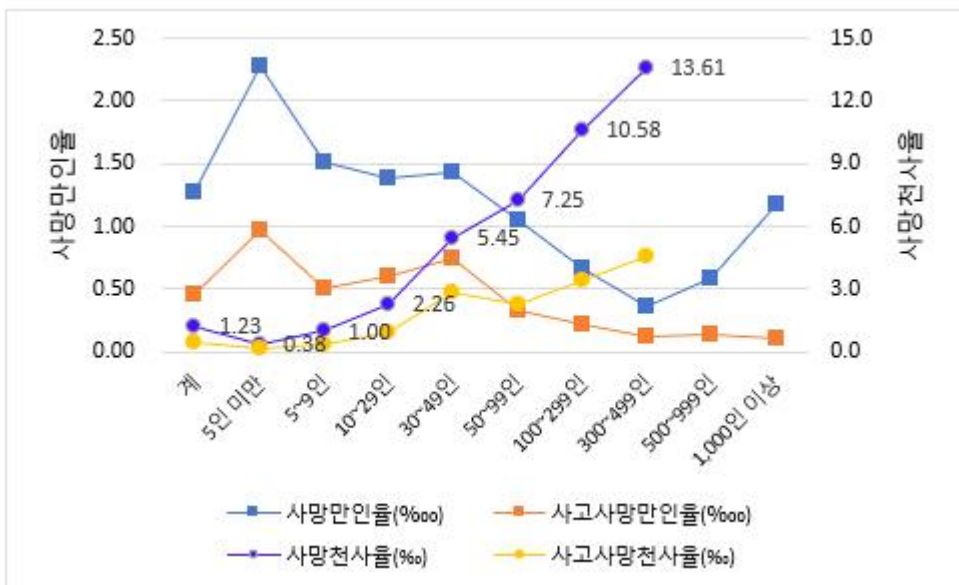
재해자 발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수치이다.

〈표 II-9〉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단위 : %)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망만인율	1.27	2.27	1.52	1.38	1.44	1.05	0.67	0.36	0.59	1.18
사고사망만인율	0.46	0.97	0.51	0.60	0.74	0.33	0.22	0.12	0.15	0.11
사망천사율	1.23	0.38	1.00	2.26	5.45	7.25	10.58	13.61	39.60	463.8
사고사망천사율	0.45	0.16	0.34	0.98	2.82	2.27	3.43	4.54	9.90	43.48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 사망천사율 : 사업장 1천 개소당 사망자수



[그림 II-10]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30~49인 사업장은 사망천사율이 5.45인 것은 1천 개 사업장 중에서 5개 사업장 정도가 사망재해자 1명이 발생하고 그 이외 사업장은 사망재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개별 사업장 입장에서 사망재해 발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사건은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사망재해가 발생할 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의 존폐 위기를 직면할 수 있기에 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 6)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로 판단할 때 건설업은 중점 관리하여야 할 업종에 해당하며, 건설업이 전 산업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의 수 : 13.3%            / • 근로자의 수 : 12.4%
- 요양재해자의 수 : 24.0%    / • 사고요양자의 수 : 25.6%
- 사망자의 수 : 24.3%         / • 사고사망자의 수 : 46.0%

건설업의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백인율, 사망만인율 등을 <표 II-10>에 나타내었다.

건설업은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 전체의 98.2%나 되고 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전체의 49.7%이었다. 50인 미만 규모에서 전체 요양재해자의 74.8%가 발생하였고 전체 사망자도 75.9%나 발생하였으며, 사고재해자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재해백인율은 전체 평균 1.25 대비 5인 미만이 월등히 높고, 규모가 클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사고재해백인율도 이와 동일하다. 사망만인율 및 사고

사망만인율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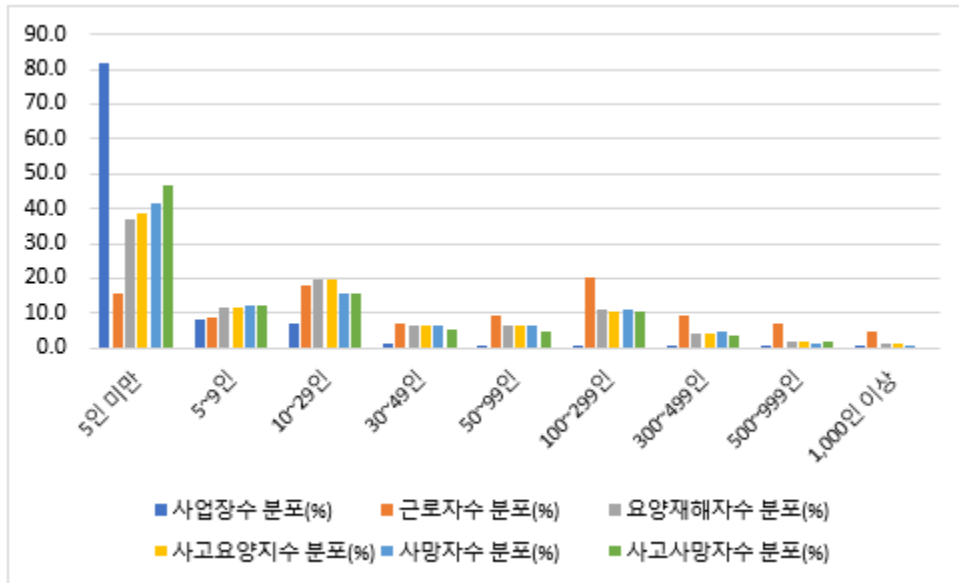
〈표 II-10〉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sup>9)</sup>

(단위 : 개소,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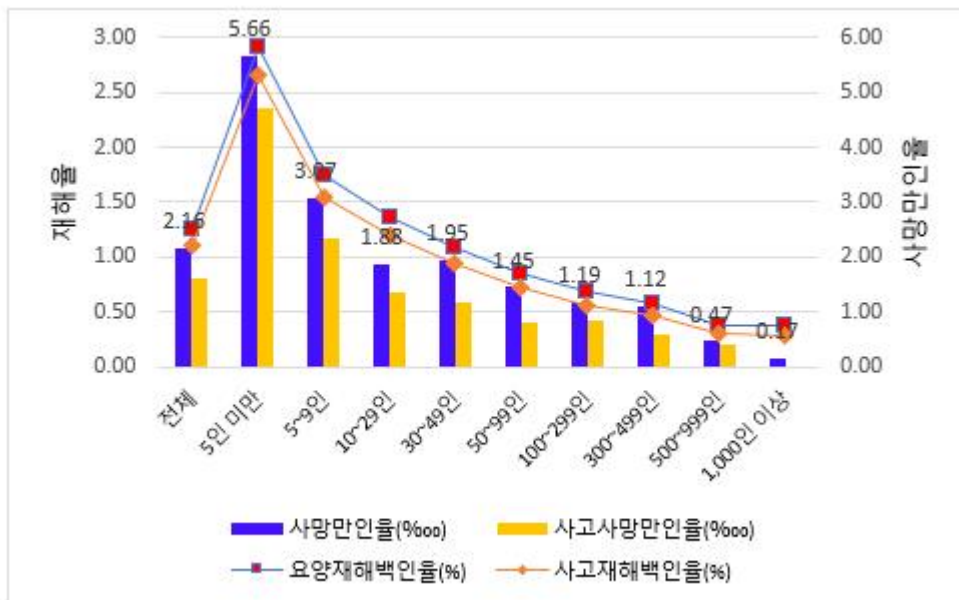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396,622	324,203	32,053	28,316	4,784	3,382	2,938	623	265	58
	100	81.7	8.1	7.1	1.2	0.9	0.7	0.2	0.07	0.01
근로자수	2,494,031	395,474	211,878	452,627	179,680	234,170	504,312	231,866	169,417	114,607
	100	15.9	8.5	18.1	7.2	9.4	20.2	9.3	6.8	4.6
요양 재해자수	31,245	11,522	3,680	6,194	1,964	2,009	3,466	1,326	655	429
	100	36.9	11.8	19.8	6.3	6.4	11.1	4.2	2.1	1.4
사고요양 재해자수	27,432	10,541	3,258	5,416	1,702	1,707	2,868	1,090	511	339
	100	38.4	11.9	19.7	6.2	6.2	10.5	4.0	1.9	1.2
사망자수	539	224	65	85	35	34	60	26	8	2
	100	41.6	12.1	15.8	6.5	6.3	11.1	4.8	1.5	0.4
사고 사망자수	402	187	50	62	21	19	42	14	7	0
	100	46.5	12.4	15.4	5.2	4.7	10.4	3.5	1.7	0.0
재해 백인율	1.25	2.91	1.74	1.37	1.09	0.86	0.69	0.57	0.39	0.37
사고재해 백인율	1.10	2.67	1.54	1.20	0.95	0.73	0.57	0.47	0.30	0.30
사망 만인율	2.16	5.66	3.07	1.88	1.95	1.45	1.19	1.12	0.47	0.17
사고사망 만인율	1.61	4.73	2.36	1.37	1.17	0.81	0.83	0.60	0.41	0.00

[그림 II-11]에서 건설업 사업장 규모에 따른 현황을 보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경시하여서는 건설업 재해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9) 근로복지공단, “2022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2023.10.



[그림 II-11]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



[그림 II-12]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현황

[그림 II-12]에서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재해현황 평가지표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건설업에서는 요양재해자 및 사망자 중에서 사고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질병재해자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수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고, 일상적으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 사업장의 현황을 <표 II-11>에 정리하였다.

**<표 II-11>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재해자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개소	명	명	명	명	명	
총 계	396,622	100	2,494,031	100	539	100	2.16
3억원 미만	287,734	72.5	383,239	15.4	190	35.3	4.96
3억~20억원 미만	60,037	15.1	397,533	15.9	112	20.8	2.82
20억~50억원 미만	15,970	4.0	244,672	9.8	41	7.6	1.68
50억~120억 원 미만	8,061	2.0	195,971	7.9	42	7.8	2.14
120억~300 억원 미만	3,966	1.0	190,179	7.6	32	5.9	1.68
300억~500 억원 미만	1,454	0.4	120,502	4.8	21	3.9	1.74
500억~1,00 0억원 미만	1,672	0.4	215,264	8.6	30	5.6	1.39
1,000억원 이상	2,279	0.6	713,698	28.6	56	10.4	0.78
분류불능	15,449	3.9	32,973	1.3	15	2.8	4.55

<표 II-10>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분류와 비교하면 개략적으로 10인 미만 규모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은 전체 평균 사망만인율 2.16에 비해 높은 사망만인율(3억원 미만은 4.96, 3~20억 원 미만은 2.82)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의 리더가 부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였던 규모이었으나 최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기에 정부 차원의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II-12>와 [그림 II-13]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와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재해예방활동은 사업장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당 발생하는 재해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12>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단위 : %)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요양재해 백인율	1.25	2.91	1.74	1.37	1.09	0.86	0.69	0.57	0.39	0.37
사고재해 백인율	1.10	2.67	1.54	1.20	0.95	0.73	0.57	0.47	0.30	0.30
요양재해 백사율	7.9	3.6	11.5	21.9	41.1	59.4	118.0	212.8	247.2	739.7
사고재해 백사율	6.9	3.3	10.2	19.1	35.6	50.5	97.6	175.0	192.8	584.5

\* 요양재해백인율 :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요양재해백사율 :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백인율은 1.25이고 [그림 II-13]과 같이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 또한 본사에서 지원하는 특성이 있지만

안전보건활동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장 100개당 재해백사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7.9이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5~9인 규모 11.5라는 것은 사업장 100개당 11.5명의 요양재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사업장 측면에서는 10년간 사업을 운영하여도 1건 정도의 요양재해가 발생할 확률이므로 산재예방활동을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림 II-13]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백인율 및 재해백사율 현황

사망재해 관련 현황은 <표 II-13>과 [그림 II-14]에 각각 나타내었고, 사망재해도 요양재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는 건설업 전체 평균 2.16명이고 대규모 사업장 일수록 급격히 감소하나, 사업장 1천 개당 사망자수는 전체 평균 1.36명이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현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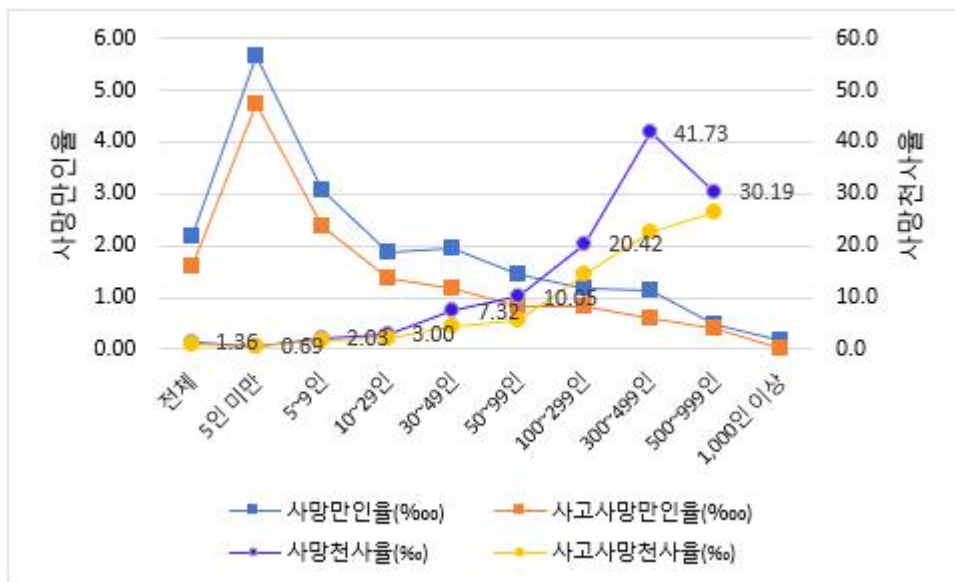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많아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많지 않아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개인에게 발생할 위험성은 매우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Ⅱ-13〉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단위 : %, ‰)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망만인율	2.16	5.66	3.07	1.88	1.95	1.45	1.19	1.12	0.47	0.17
사고사망만인율	1.61	4.73	2.36	1.37	1.17	0.81	0.83	0.60	0.41	0.00
사망천사율	1.36	0.69	2.03	3.00	7.32	10.05	20.42	41.73	30.19	34.48
사고사망천사율	1.01	0.58	1.56	2.19	4.39	5.62	14.30	22.47	26.42	0.00



〔그림 Ⅱ-14〕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망천사율 현황

사업장 단위로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고 발생확률이 낮아 여전히 위험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흡하게 되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운영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보건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7) 재해현황조사의 시사점

사업의 종류별·규모별 사업장수, 근로자수, 요양재해자수(사고+질병), 사망자수(사고+질병) 등 재해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1) 사업의 종류별 분포는 기타의 사업이 전 산업의 66.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13.8%), 건설업(13.3%), 운수창고통신업(3.3%) 순이었으며, 업종별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동일한 업종 순(기타의 사업이 57.0%, 제조업 19.8%, 건설업 12.4%, 운수창고통신업 5.3%)으로 분포하였다.
- (2)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4.8%, 5~49인 사업장이 23.5%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소속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17.0%로 비교적 적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5~49인 사업장에 42.8%로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3) 사업장수의 분포가 높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이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산재예방 감소를 위해 집중 관리하여야 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임을 알 수 있다.
- (4) 사업의 종류별 요양재해자 발생분포는 기타의 사업(37.4%), 제조업(24.2%), 건설업(24.0%), 운수창고통신업(9.6%)의 순으로 발생되었으

며, 사망재해자는 건설업(24.2%), 제조업(22.8%), 기타의 사업(21.7%), 광업(20.4%), 운수창고통신업(8.9%) 순이었다.

- (5) 광업은 사망자수는 많으나 이는 대부분 직업성질병 사망자이고 특별관리하여야 하지만 중점 관리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는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 (6) 사업장 규모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 산업 요양재해자의 69.9%, 사망자 61.7%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요양재해자는 전체의 74.4%, 사고사망자는 80.9%나 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5) 사업의 종류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전 산업 평균 0.65 대비 높은 업종은 광업(39.32)이 단연 높고 건설업(1.25), 운수창고통신업(1.16), 어업(1.06), 농업(0.81), 제조업(0.79), 임업(0.77) 이었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 평균 1.10 대비 높은 업종은 광업(459.9), 건설업(2.16), 운수창고통신업(1.85), 어업(1.80), 농업(1.43), 제조업(1.27) 순으로 동일하였다.
- (6)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로 판단할 때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을 집중관리 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고, 광업, 어업, 농업, 임업은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가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재해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 (7)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49인 규모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장수는 23.5%이나 근로자수는 42.8%, 요양재해자수는 40.4%, 사망자수는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재해자 비율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5~4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안전경영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8) 대표적인 재해통계지표인 재해율과 사망만인율과 유사하게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인 요양재해백사율을 산출한 결과 제조업 및 건설업 모두

평균 8.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측면에서는 13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여야 요양재해 1건이 발생한다는 통계이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요양재해백사율은 낮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는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견인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9) 요양재해건수가 10년에 1건 정도 발생하는 현실에서 재해발생후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계몽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계몽의 출발은 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현행 제도 조사

### 1) 사업주 교육의 변천사

#### (1) 사업주 교육의 제·개정 법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12.31.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제24조(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으로 관리책임자, 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직무교육만을 규정하였다. 그 이후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1990.1.13. 전부개정하면서 제32조(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에 사업주 교육을 신설하였다가 규제 완화 등을 사유로 완화하다가 2007.7.27. 사업주 교육을 법에서 삭제하였다.

〈표 II-14〉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교육의 개정 과정

제·개정일	법 조 문
법 (1981.12.31. 제정)	제24조 (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 관리자 및 보건담당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1990.1.13. 전부개정)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벌칙) ~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규칙 (1990.8.11. 전부개정)	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제1항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제 · 개정일	법 조 문
	<p><b>사업장의 사업주</b>                      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p> <p>제41조 (사업주등 교육) ①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일시 및 장소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으며, 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b>[별표 8] 사업주 교육시간 4시간</b></p>
<p>시행규칙 (1992.3.21. 일부개정)</p>	<p>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t;개정 1992.3.21&gt;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b>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b> 다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한다.                      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b>교육시간은 사업주는 4시간이상</b>, 관리감독자는 6시간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lt;신설 1992.3.21&gt;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b>교육을 위탁받은 기관</b>이 실시한다.&lt;신설 1992.3.21&gt;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b>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b>하고, 그 명단을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신설 1992.3.21&gt;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b>교육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b>하여야 한다.&lt;신설 1992.3.21&gt;                      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lt;신설 1992.3.21.&gt;</p>

제·개정일	법 조 문
	<p>제41조 삭제 &lt;1992.3.21&gt;</p> <p><b>[별표 8의2] 사업주 교육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 책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ul>
<p>시행규칙 (1994.3.29. 일부개정)</p>	<p>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b>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b>(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b>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b>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b>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b>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b>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 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b>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4.3.29.]</p> <p><b>[별표 8] 사업주 교육시간 4시간</b> <b>[별표 8의2] 사업주 교육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 책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ul>
<p>법 (1996.12.31. 일부개정)</p>	<p>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lt;개정 1996.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li> <li>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li> <li>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li> <li>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제·개정일	법 조 문
	제70조 (벌칙) ~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32조제1항(第2號 및 第3號의 者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2조 (과태료) ③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6.12.31> 4. 제32조제1항(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2007.7.27. 일부개정)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b>삭제 &lt;2007.7.27&gt;</b>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시행규칙 (2008.9.18. 일부개정)	제38조 삭제 <2008.9.18>

(2) 사업주 교육제도 변화의 사회적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12.31.) 당시는 제24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자 및 보건담당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산안법 전부개정(1990.1.13.)을 통하여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에서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를 교육 대상으로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1990.8.11.)을 통하여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 사업장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li> <li>· 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li> </ul>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li> </ul>

\* 여기서, “안전담당자”는 당시 법조문 제15조(안전관리자등)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와 다른 자이며, 고위험작업으로 분류한 작업에서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한 자<sup>10)</sup>로서 현행법상 작업지휘자(안전보건규칙 제39조)를 말함

이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하였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결과에 대한 벌칙교육과 산재예방활동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교육까지 교육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0.8.11. 당시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 사업주 교육이수를 명할 수 있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1. 당해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5.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10) <1990.1.13. 전부개정 당시 법조문>

제14조 (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관리감독자(經營組織에서 生産과 관련되는 당해業務와 所屬職員을 직접 指揮·監督하는 部署의 長이나 그 職位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 진단 대상 사업장\_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_시행규칙 제93조제1항〉**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3.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4.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5.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7.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
8.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9. 기타 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이와 같이 사업주 교육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등 재해발생 결과에 따른 벌칙교육도 있었지만,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또는 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 포함)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이수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0년 당시의 교육제도는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포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교육제도 규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대기업을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개정(1992.3.21.)을 통하여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명시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주는 사업주가 교육대상이며, 법인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였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한 법인은 법인대표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0.8.11. 당시는 사업주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다가 1992.3.21. 개정 당시에 교육내용을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 책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사업주 교육을 도입한 당시(1990.1.13.)에 법 제32조제1항의 교육이수를 위반한 사업주는 제69조(벌칙)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는 제32조제1항의 교육이수 의무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까지 벌금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벌칙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을 개정(1996. 12.31.)하여 교육이수 대상자를 각 호로 구분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전문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고 사업주는 종전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였다.

이 당시에 사업주의 교육을 직무교육 속에 포함한 이유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있어 사업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벌칙교육을 병행한 것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해작업의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에 대한 벌칙교육을 함께 도입하였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리더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교육제도를 정립하였다.

1990.1.13. 사업주 교육제도를 신설한 후 1992.3.21. 사업주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좋았으나 아쉽게도 1994.3.29.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업주 교

육을 예방교육은 철폐하고 벌칙교육만 남기고 그것도 사업주 교육 대상자를 오로지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대폭 축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법규정을 따라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의 교육 관련 하위 규정들이 정비되지 못하고 교육의 실효성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육 대상자는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도 포함되므로 수많은 교육대상 사업주가 존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정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주 교육이수명령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과 실효성의 한계 등에 직면하고, 경영계 등의 요구로 사업주 교육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을 것이다.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중소기업 사업장은 그러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 존폐와 직결되어 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사업장 운영과 전혀 무관한 규제가 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악화하는 등 기업활동력 강화정책이 요구되었다. 당시 국가경제위기 타결과 기업활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sup>11)</sup>를 신설(1997.4.10.)하여 관리책임자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사업주 교육을 폐지한 날(2007.7.27.) 이후에 삭제(2007.8.3.)될 때까지 10

11) 제55조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년 이상 유지되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55조의2를 삭제한 것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 재해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개정이유이었다. 그 결과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기관종사자 등의 직무교육은 부활하였으나 사업주 교육은 부활하지 못하였다.

사업주 교육이 부활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예방교육은 기업규제완화법 교육면제 조문 신설(1997.4.10.) 이전에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1994.3.29.)을 통하여 벌칙교육만 유지되었던 것이고, 벌칙교육 대상자는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업장은 교육 이상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벌칙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을 통하여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사업주 포함)에게 2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부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이고, 유죄판결 대상자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는 교육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칙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2021.1.26. 제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20시간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때 교육내용은 “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정하고 있다.

여전히 예방교육은 부활하지 않고 벌칙교육은 일부 부활하였으나 폐지 당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 측면은 미흡하다.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후 벌칙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사업의

일시 중단, 재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 등 교육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칙교육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2) 현행 사업주 교육제도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여 사업주 교육을 신설(1990.1.13.)하고 예방교육과 벌칙교육을 병행하였으나, 예방교육은 교육시장의 여건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벌칙교육만 남고 예방교육은 폐지(1994.3.29.)하였다. 그것마저도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교육제도가 존재는 하였으나 특별법으로 정지(1997.4.10.)되었다가 산업재해의 감소가 규제 완화에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얻어 특별법상 교육면제 규정을 폐지(2007.8.3.)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벌칙교육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제(2007.7.27.)되었다.

그 이후 또다시 사업주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방교육제도<sup>12)</sup>를 신설(2013.6.4.)하였다.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중략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7. 10. 24., 2021. 4.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중략 -

④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8. 12. 31., 2021. 12. 31.>

그 이후 벌칙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2019.1.15.)하면서 제174조에서 법원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범법자가 사업주이면 사업주의 벌칙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행정명령과는 다소 구분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2021.1.26.)하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벌칙교육을 부활하여 20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를 행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주 교육제도의 신설·정지·폐지·부활 등의 경과를 <표 II-15>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II-15>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의 경과**

일자	구분	주요내용
1990.1.13.	산안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대상 교육제도 신설</li> <li>·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1990.8.11.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 사업장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예방교육)</li> <li>-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벌칙교육)</li> </ul> </li> <li>· 교육통지 : 사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li> <li>· 교육시간 : 4시간</li> </ul>
1992.3.21.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 사업장 : 변경없음</li> <li>· 교육 이수 대상 사업주의 정의를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li> </ul> </li> </ul>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나. 하수도업
    - 생략 -

일자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를 총괄하는 자</li> <li>• 교육기관 : 해당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li> <li>• 교육통지 : 변경없음</li> <li>• 교육시간 : 변경없음</li> </ul>
1994.3.29.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 사업장 :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교육은 삭제, 별칙교육만 존치</li> </ul> </li> <li>• 교육대상 사업주의 정의 : 변경없음</li> <li>• 교육기관 : 변경없음</li> <li>• 교육통지 :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기관에 명단 통보,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li> <li>• 교육시간 : 변경없음</li> <li>• 교육내용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 책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ul> </li> </ul>
1996.12.31.	산안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직무교육 대상자를 하나의 조문에 일괄 규정하던 것을 직무자의 직무 성격에 맞게 각호로 분리하여 규정</li> <li>• 별칙 : 사업주는 변경없음(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1997.4.10.	규제완화법 제5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사업주 교육 포함)</li> </ul>
2007.7.27.	산안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사업주 삭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로 인하여 <b>관리감독자 교육도 폐지됨</b></li> </ul> </li> </ul>
2007.8.3.	규제완화법 제5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안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부활</li> <li>-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안법에서 이전에 폐지</li> </ul> </li> </ul>
2008.9.18.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제도의 세부 내용 전면 삭제</li> </ul>
2013.6.4.	보험징수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예방교육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자율교육으로 신설</li> <li>- 사업주 교육 이수한 사업장 산재보험료를 10% 인하</li> <li>- 일부 업종에 한함(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li> </ul> </li> </ul>
2019.1.15.	산안법 제1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사업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칙교육 200시간 이내</li> </ul> </li> </ul>

일자	구분	주요내용
		- 법원이 수강명령(행정기관의 수강명령과는 차별됨)
2021.1.26.	중대재해법 제8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벌칙교육) · 벌칙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예방교육과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벌칙교육이 있다.

현행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사업주 교육은 다음 <표 II-16>과 같다.

**<표 II-16>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사업주 대상 예방교육**

구분	주요내용	근거
법적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의2 ~ 제18조의5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 업종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규모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규정 제3조
운영형태	· 자율(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규정 제4조
교육대상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규정 제6조
교육형태	· 집체교육	규정 제6조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 ·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에 관한 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 ·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규정 [별표 1]
교육시간	· 4시간(위 각 내용별 1시간씩)	규정 [별표 1]
교육교재	·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표준교재	규정 제6조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규정 제2조제1항제4호
교육강사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강사기준과 동일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정 제6조
교육일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공지 ·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통지	규정 제6조
수료기준	· 교육과정 전 과목의 90% 이상 수강한 경우	규정 제6조
수료확인	· 교육기관이 이수한 교육생에게 이수확인서 발급	규정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

구분	주요 내용	근거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함</li> <li>- 인정한 경우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 발급</li> <li>-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임</li> </ul>	규정 제9조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제2호)</li> <li>(cf) 위험성평가 인정기간은 3년</li> </ul>	규정 제10조

현재 정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외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정책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활동 연계 현장교육, 중소기업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1,000대 건설업체 산재예방 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주(관계자) 교육 등을 교육하고 있다.

### 3) 사업주 교육제도의 고찰

사업주 교육제도의 변천사(법령 제·개정 내용 및 시대적 배경)와 현행 사업주 교육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 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
- (2) 사업주 교육제도를 신설(1990.1.13.)할 당시에는 관리책임자등의 직무 교육 대상자 중에 포함하였고, 예방교육과 벌칙교육을 병행하여 규정하였다. 예방교육의 경우 장관이 판단하여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업장 이외에도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재해율을 갖는 사업장, 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여 예방교육 대상 사업장을 폭넓게 정하였다.

- (4) 예방교육 대상자수가 많고 교육기관 등 교육시장 조건 미성숙 등의 사유로 하위법령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으로 예방교육을 삭제(1994.3.29.)하고 별칙교육만 존치하였으나 기업규제완화법의 교육면제 조문 신설(1997.8.3.)에 따라 법령은 존재하였으나 시행을 정지하였다.
- (5) 기업규제완화보다는 높은 재해율로 인한 기업의 경영위기(경제적 손실 등) 또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사유로 규제완화법의 직무교육 면제 조문을 삭제(2007.8.3.)하여,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교육은 부활하였으나,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에 대한 별칙교육은 그 이전에 삭제(2007.7.27.)하여 부활하지 못하였다.
- (6)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어 일부 업종 및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제도를 부활(2013.6.4.)하고 자율제로 운영하되 이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인하정책을 도입하였고, 산안법 전면개정(2019.1.15.)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26.)을 통하여 사업주 별칙교육을 부활하였다.
- (7) 교육제도 변천사 등을 통하여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교육기관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설문조사

#### 1) 개요

##### (1) 설문지의 구성

- 설문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비롯한 대분류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II-17〉 설문지의 구성

대분류	주요 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일반사항	· 성별, 연령, 경력, 작성자 유형(사업장, 전문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6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사업장 소속에 한함)	〈안전보건활동 법적의무주체는 사업주이나 실제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호구 지급 · 안전보건정보 제공 · 안전보건 의견수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인력 선임현황 · 위험 대비 매뉴얼 작성 · 안전보건경영 수준	9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태 (사업장 소속에 한함)	· 사업주 교육 참여 실적 유무 · 사업주 교육 참여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 중 효과적인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의 산재예방업무에 대한 필요성 ·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이유 ·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	6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 사업장 산재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 · 산재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 ·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 역량 · 사업주 교육의 개선 필요성 · 사업주 교육의 개선 필요 항목 · 사업주 교육을 경영교육과 실무교육 분리 필요성	16개

대분류	주요 내용	문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교육에 포함할 교육내용</li> <li>· 사업주 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주기</li> <li>· 사업주 교육의 실시 방식</li> <li>· 사업주 교육의 실시 주체</li> <li>· 관리책임자 미션임 사업장의 사업주 교육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li> <li>- 사업주 교육의 대상 업종 및 규모</li> <li>- 사업주 교육의 운영 형태</li> </ul> </li> <li>· 사업주 교육 참여 인센티브 선호도</li> <li>· 기타 사업주 교육 관련 의견</li> </ul>	

## (2) 설문 방법

- 설문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주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수령하는 방식과 네이버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온라인 설문 주소 : [https://form.naver.com/response/R2u7adz\\_iOU1k1ji9Ksg4g](https://form.naver.com/response/R2u7adz_iOU1k1ji9Ksg4g)

- 네이버 온라인 설문은 교육유형별 교육 참여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교육 실시기관 담당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자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참여를 부탁함
- 전자매체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의 이메일로 발송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고, 직능별 단체가 활용하는 밴드 등에 설문 주소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설문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사례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만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였고, 개인정보와 응답결과를 연계한 분석은 배제하였음
- 생명윤리심의승인 : OSHRI-202405-HR-016
  -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는 설문지 구성 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후 진행하였음

2) 응답자의 일반사항

〈표 II-18〉 응답자의 일반사항

N=200

구 분		응답자수(N)	백분율(%)
성별	남자	152	76.0
	여자	48	24.0
연령	20대	11	5.5
	30대	22	11.0
	40대	52	26.0
	<b>50대</b>	<b>67</b>	<b>33.5</b>
	60대이상	48	24.0
경력	3년미만	15	7.5
	3-5년미만	15	7.5
	5-10년미만	27	13.5
	10-20년미만	52	26.0
	<b>20년이상</b>	<b>91</b>	<b>45.5</b>
응답자 유형	<b>사업장</b>	<b>118</b>	<b>59.0</b>
	전문가	82	41.0
사업장 업종 (n=118)	제조업	35	29.7
	<b>건설업(건설본사 포함)</b>	<b>42</b>	<b>35.6</b>
	운수창고 통신업	3	2.5
	서비스업	26	22.0
	기타	12	10.2
사업장의 종업원수 (n=118)	5인 미만	10	8.5
	<b>5~50인 미만</b>	<b>57</b>	<b>48.3</b>
	50~100인 미만	11	9.3
	100~300인 미만	10	8.5
	300인 이상	30	25.4
사업장 직책(n=118)	<b>사업주</b>	<b>51</b>	<b>43.2</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8	32.2
	안전담당임원(실장, 이사 등)	29	24.6

구 분		응답자수(N)	백분율(%)
전문가직종(n=82)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등)	19	23.2
	직능단체 등 기타 교육운영담당자	8	9.8
	<b>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등)</b>	<b>40</b>	<b>48.8</b>
	학계 등 기타 전문가(교수 등)	15	18.3

-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표 II-18>과 같음
- 남자가 76%로 가장 많고, 50대가 33.5%, 경력 20년 이상이 45.5%로 응답자 빈도가 가장 높았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가 59.0%(118명), 그 이외 전문가가 41.0%(82명)이었으며,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35.6%, 제조업이 29.7%, 서비스업 22.0% 등의 순임
- 전문가의 소속기관별로는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48.8%, 안전보건교육기관 23.2%, 학계 등이 18.3% 순임
- 응답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는 5~50인 미만이 48.3%, 300인 이상이 25.4% 등의 순이며, 응답자의 직책은 사업주가 4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32.2%, 안전담당임원이 24.6%이었음

### 3)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 (1)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설문

-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의 법적의무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실제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19>와 같음

〈표 II-19〉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행 주체에 관한 설문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안전보건관리 방침 수립자	1	67	23	11	4	12	118
	0.8	<b>56.8</b>	19.5	9.3	3.4	10.2	100.0
안전보건관리 조치 주체	0	34	37	4	14	29	118
	0	<b>28.8</b>	31.4	3.4	11.9	24.6	100.0
안전보호구 제공 주체	0	60	26	2	3	27	118
	0	<b>50.8</b>	22.0	1.7	2.5	22.9	100.0
안전보건관리 정보제공 주체	0	44	26	5	10	33	118
	0	<b>37.3</b>	22.0	4.2	8.5	28.0	100.0
안전보건 교육실시 주체	0	37	38	5	7	31	118
	0	31.4	<b>32.2</b>	4.2	5.9	26.3	100.0
안전보건관리 의견수렴 주체	0	46	31	5	8	28	118
	0	<b>39.0</b>	26.3	4.2	6.8	23.7	100.0
안전보건관리 매 뉴얼 작성 주체	2	40	31	7	16	22	118
	1.7	<b>33.9</b>	26.3	5.9	13.6	18.6	100.0
계	3	328	212	39	62	182	826
	0.4	<b>39.7</b>	25.7	4.7	7.5	22.0	100.0

-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업주(39.7%), 안전보건관리책임자(25.7%), 담당직원(22.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이 48.3%인 것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교차분석하였음

\*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

○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 실행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II-20>부터 <표 II-26>과 같음

<표 II-20>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방침 수립자’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1	8	0	1	0	0	10
	전체대비	0.8	6.8	0.0	0.8	0.0	0.0	8.5
	규모대비	10.0	80.0	0.0	10.0	0.0	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33	15	3	3	3	57
	전체대비	0.0	28.0	12.7	2.5	2.5	2.5	48.3
	규모대비	0.0	57.9	26.3	5.3	5.3	5.3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5	2	1	0	3	11
	전체대비	0.0	4.2	1.7	0.8	0.0	2.5	9.3
	규모대비	0.0	45.5	18.2	9.1	0.0	27.3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3	2	3	0	2	10
	전체대비	0.0	2.5	1.7	2.5	0.0	1.7	8.5
	규모대비	0.0	30.0	20.0	30.0	0.0	2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18	4	3	1	4	30
	전체대비	0.0	15.3	3.4	2.5	0.8	3.4	25.4
	규모대비	0.0	60.0	13.3	10.0	3.3	13.3	100.0
계	빈도	1	67	23	11	4	12	118
	전체대비	0.8	56.8	19.5	9.3	3.4	10.2	100.0

\*  $p=0.052 > 0.01$

○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 방침 수립자’의 실질적 주체를 교차분석한 결과  $p=0.052$ 로 분석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 방침 수립자’는 전체 응답자의 56.8%가 사업주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19.5%)임

〈표 II-21〉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조치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0	6	3	1	0	0	10
	전체대비	0.0	5.1	2.5	0.8	0.0	0.0	8.5
	규모대비	0.0	60.0	30.0	10.0	0.0	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20	19	2	10	6	57
	전체대비	0.0	16.9	16.1	1.7	8.5	5.1	48.3
	규모대비	0.0	35.1	33.3	3.5	17.5	10.5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3	2	0	0	6	11
	전체대비	0.0	2.5	1.7	0.0	0.0	5.1	9.3
	규모대비	0.0	27.3	18.2	0.0	0.0	54.5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1	3	0	1	5	10
	전체대비	0.0	0.8	2.5	0.0	0.8	4.2	8.5
	규모대비	0.0	10.0	30.0	0.0	10.0	5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4	10	1	3	12	30
	전체대비	0.0	3.4	8.5	0.8	2.5	10.2	25.4
	규모대비	0.0	13.3	33.3	3.3	10.0	40.0	100.0
계	빈도	0	34	37	4	14	29	118
	전체대비	0.0	28.8	31.4	3.4	11.9	24.6	100.0

\* p=0.012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조치 주체’는 전체 응답자의 31.4%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 다음이 사업주(28.8%)임
- 5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 직원(54.0%, 50.0%, 40.0%)이 주로 안전보

건 관리 조치 주체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치 주체는 사업주가 직접 실행한다고 응답하였고, 5인 미만은 60.0%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3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33.3%)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안전보건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 규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22〉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호구 제공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0	6	1	0	0	3	10
	전체대비	0	5.1	0.8	0.0	0.0	2.5	8.5
	규모대비	0	60.0	10.0	0.0	0.0	3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35	15	1	0	6	57
	전체대비	0	29.7	12.7	0.8	0.0	5.1	48.3
	규모대비	0	61.4	26.3	1.8	0.0	10.5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6	1	0	0	4	11
	전체대비	0	5.1	0.8	0.0	0.0	3.4	9.3
	규모대비	0	54.5	9.1	0.0	0.0	36.4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5	2	0	0	3	10
	전체대비	0	4.2	1.7	0.0	0.0	2.5	8.5
	규모대비	0	50.0	20.0	0.0	0.0	3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8	7	1	3	11	30
	전체대비	0	6.8	5.9	0.8	2.5	9.3	25.4
	규모대비	0	26.7	23.3	3.3	10.0	36.7	100.0
계	빈도	0	60	26	2	3	27	118
	전체대비	0	50.8	22.0	1.7	2.5	22.9	100.0

\* p=0.083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역할이 높다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음

〈표 II-23〉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0	6	2	0	0	2	10
	전체대비	0	5.1	1.7	0.0	0.0	1.7	8.5
	규모대비	0	60.0	20.0	0.0	0.0	2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24	17	4	8	4	57
	전체대비	0	20.3	14.4	3.4	6.8	3.4	48.3
	규모대비	0	42.1	29.8	7.0	14.0	7.0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4	1	0	0	6	11
	전체대비	0	3.4	0.8	0.0	0.0	5.1	9.3
	규모대비	0	36.4	9.1	0.0	0.0	54.5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1	3	0	1	5	10
	전체대비	0	0.8	2.5	0.0	0.8	4.2	8.5
	규모대비	0	10.0	30.0	0.0	10.0	5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9	3	1	1	16	30
	전체대비	0	7.6	2.5	0.8	0.8	13.6	25.4
	규모대비	0	30.0	10.0	3.3	3.3	53.3	100.0
계	빈도	0	44	26	5	10	33	118
	전체대비	0	37.3	22.0	4.2	8.5	28.0	100.0

\* p=0.002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주체’는 전체 응답자의 37.3%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 다음이 담당 직원(28.0%)임
- 5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 직원(54.5%, 50.0%, 53.3%)이 대부분 안전 보건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주체인 것이 42.1%로 높고, 5인 미만 사업장은 60.0%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가 담당하는 안전보건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표 II-24〉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0	3	4	0	0	3	10
	전체대비	0	2.5	3.4	0.0	0.0	2.5	<b>8.5</b>
	규모대비	0	<b>30.0</b>	<b>40.0</b>	0.0	0.0	3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24	21	4	6	2	57
	전체대비	0	20.3	17.8	3.4	5.1	1.7	<b>48.3</b>
	규모대비	0	<b>42.1</b>	36.8	7.0	10.5	3.5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3	4	0	0	4	11
	전체대비	0	2.5	3.4	0.0	0.0	3.4	<b>9.3</b>
	규모대비	0	27.3	<b>36.4</b>	0.0	0.0	<b>36.4</b>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3	0	0	0	7	10
	전체대비	0	2.5	0.0	0.0	0.0	5.9	<b>8.5</b>
	규모대비	0	30.0	0.0	0.0	0.0	<b>70.0</b>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4	9	1	1	15	30
	전체대비	0	3.4	7.6	0.8	0.8	12.7	<b>25.4</b>
	규모대비	0	13.3	30.0	3.3	3.3	<b>50.0</b>	100.0
계	빈도	0	37	38	5	7	31	118
	전체대비	0	31.4	<b>32.2</b>	4.2	5.9	26.3	<b>100.0</b>

\* p=0.001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공 주체’는 전체 응답자의 32.2%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사업주(31.4%)임
-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 직원(70.0%, 50.0%)이 대부분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임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42.1%)가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사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역량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표 II-25〉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의견수렴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0	5	2	0	0	3	10
	전체대비	0	4.2	1.7	0.0	0.0	2.5	8.5
	규모대비	0	50.0	20.0	0.0	0.0	3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30	16	4	5	2	57
	전체대비	0	25.4	13.6	3.4	4.2	1.7	48.3
	규모대비	0	52.6	28.1	7.0	8.8	3.5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0	4	3	0	0	4	11
	전체대비	0	3.4	2.5	0.0	0.0	3.4	9.3
	규모대비	0	36.4	27.3	0.0	0.0	36.4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3	0	0	1	6	10
	전체대비	0	2.5	0.0	0.0	0.8	5.1	8.5
	규모대비	0	30.0	0.0	0.0	10.0	6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4	10	1	2	13	30
	전체대비	0	3.4	8.5	0.8	1.7	11.0	25.4
	규모대비	0	13.3	33.3	3.3	6.7	43.3	100.0
계	빈도	0	46	31	5	8	28	118
	전체대비	0	39.0	26.3	4.2	6.8	23.7	100.0

\* p=0.002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의견수렴 주체’의 경우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52.6%, 50.0%)가 직접 의견수렴하는 경향이 높고, 50인 이상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주가 담당하던 것을 담당직원이 의견수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표 II-26〉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주체’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미실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1	4	3	0	1	1	10
	전체대비	0.8	3.4	2.5	0.0	0.8	0.8	8.5
	규모대비	10.0	40.0	30.0	0.0	10.0	1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0	28	16	6	4	3	57
	전체대비	0	23.7	13.6	5.1	3.4	2.5	48.3
	규모대비	0	49.1	28.1	10.5	7.0	5.3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1	4	3	0	0	3	11
	전체대비	0.8	3.4	2.5	0.0	0.0	2.5	9.3
	규모대비	9.1	36.4	27.3	0.0	0.0	27.3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0	2	1	0	3	4	10
	전체대비	0	1.7	0.8	0.0	2.5	3.4	8.5
	규모대비	0	20.0	10.0	0.0	30.0	4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0	2	8	1	8	11	30
	전체대비	0	1.7	6.8	0.8	6.8	9.3	25.4
	규모대비	0	6.7	26.7	3.3	26.7	36.7	100.0
계	빈도	2	40	31	7	16	22	118
	전체대비	1.7	33.9	26.3	5.9	13.6	18.6	100.0

\* p=0.001 < 0.05

- 응답결과는 유의수준 5%(0.05)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
-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주체’의 경우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49.1%, 40.0%)가 직접 작성하는 경향이 높고, 50~100인 미만인 경우도 사업주(36.4%)가 작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주가 담당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담당직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설문 결과임

(2)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인력 선임 실태

-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업무 담당인력을 모두 선정하도록 하였음

〈표 II-27〉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인력 선임현황 조사

N=118, (단위 : 명, %)

안전보건 담당인력	선임 빈도	백분율(%)	사업장수에 대한 비 (N=1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6	29.5	64.4
안전관리자	33	12.8	28.0
보건관리자	32	12.4	27.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5	21.3	46.6
관리감독자	42	16.3	35.6
기타(겸직)	20	7.8	16.9
계	258	100.0	-

- 응답자는 118명이었으나 전체 258명을 선임하고 있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 118명(개별 사업장이라 가정)의 64.4%이었고,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선임의무 있

는 사업장이 전체 응답자의 43.2%인 것(<표 II-18> 참조)에 비하면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음(서비스업과 기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선임의무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21.2% 이상 사업장이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현황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35.6% 밖에 되지 않은 것은 법적 이해도가 낮은 개연성이 있으며, 향후 개별 작업 종류별 관리감독자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3)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관한 인식

-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표 II-28〉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관한 인식

N=118, (단위 : 명,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매우 낮음	3	2.5
약간 낮음	26	22.0
약간 높음	58	49.2
매우 높음	31	26.3
계	118	100.0

- 응답자 118명 중 29명인 24.5%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 29명을 대상으로 그의 직책,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등을 교차분석하였음

〈표 II-29〉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특성

N=29,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전체응답자수	백분율(%) <sup>1)</sup>
사업장 업종 (N=29)	제조업	10	35	28.6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7	42	16.7
	운수창고 통신업	3	3	100.0
	서비스업	2	26	7.7
	기 타	7	12	58.3
	계	29	118	24.6
사업장의 종업원 수(N=29)	5인 미만	3	10	30.0
	5~50인 미만	14	57	24.6
	50~100인 미만	8	11	72.7
	100~300인 미만	3	10	30.0
	300인 이상	1	30	3.3
	계	29	118	24.6
사업장 직책 (N=23)	사업주	13	51	25.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8	38	21.1
	안전담당임원(실장, 이사 등)	8	29	27.6
	계	29	118	24.6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전체응답자에 대한 낮다고 응답한 자의 비

-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수창고통신업의 응답자는 3명밖에 되지 않아 판단의 어려움이 있지만 응답자 모두 낮다고 평가하였고, 제조업 응답자 35명 중 10명이 낮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24.6%) 대비 낮다고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

(28.6%)이 높았음

- 건설업(16.7%)과 서비스업(7.7%)는 전체 평균(24.6%)보다 본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자의 비율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이 통계가 현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석한 결과
  - 50~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명 중 8명이 낮다고 평가하여 72.7%, 100~300인 미만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0.0%의 순으로 낮다고 평가하였음
  -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응답자 30명 중 1명만 낮다고 평가하여 비교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일정 수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이 미흡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직책별로 분석한 결과
  - 직책별 큰 차이는 없으나 안전담당임원이 전체 응답자 29명 중 8명으로 27.6%, 사업주가 51명 중 13명인 25.5%로써 평균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낮다고 인식한 것이 실제 안전보건경영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다고 인식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와는 일정 부분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25%가 본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여 안전보건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태

(1)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

○ 응답자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30〉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험

N=118,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유	65	55.1
무	53	44.9
계	118	100.0

○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중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자는 55.1%이었음

○ 응답자는 사업주가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어 직책이 사업주인 자 51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을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주 중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험자는 전체의 80.4%이었음

〈표 II-31〉 직책이 사업주인 응답자의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

N=51,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유	41	80.4
무	10	19.6
계	51	100.0

○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자 65명 중 사업주는 41명, 그 이외의 자는 24명이었으며, 사업주가 아님에도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자 65명을 대상으로 이수한 사업주 교육의 교육 과정 종류를 확인하였음

〈표 II-32〉 사업주 교육 교육과정별 참여 빈도

N=65(복수 선택), (단위 : 명, %)

교육과정 구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N=65)
법정교육(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38	22.0	58.5
법정교육(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명령(처분)	20	11.6	30.8
법정교육(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수강명령(처벌)	10	5.8	15.4
공단교육(자율) - 산재예방요율제	20	11.6	30.8
공단교육(자율) - 위험성평가	36	20.8	55.4
공단교육(자율)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21	12.1	32.3
공단교육(자율) - 중소기업 산재사업장	2	1.2	3.1
공단교육(자율) - 외국인 고용	4	2.3	6.2
민간교육(자율) - 원하청/계열사	7	4.0	10.8
민간교육(자율) - 직능단체(직종)	3	1.7	4.6
민간교육(자율) - 안전보건전문기관	6	3.5	9.2
민간교육(자율) - 경영단체	6	3.5	9.2
계	173	100.0%	266.2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빈도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자(65명)는 평균 2.6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73개/65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가 가장 많고(58.5%), 다음은 위험성평가 교육과정(55.4%),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32.3%), 산재예방요율제(30.8%) 등의 순임
- 사업주 교육 이수자 65명 중 24명(사업주 41명을 제외한 수)이 모두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38명 중 최소한 14명(이수자 중 36.8%) 이상은 사업주 직책을 갖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주 교육 중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는 순으로 3가지만 응답하도록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II-33〉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별 효과성에 대한 의견

N=65(복수 선택), (단위 : 명, %)

교육과정 구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N=65)
법정교육(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49	25.3	75.4
공단교육(자율) - 산재예방요율제	34	17.5	52.3
공단교육(자율) - 위험성평가	55	28.4	84.6
공단교육(자율)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23	11.9	35.4
공단교육(자율) - 중소기업 산재사업장	10	5.2	15.4
민간교육(자율) - 원하청/계열사	8	4.1	12.3
민간교육(자율) - 안전보건전문기관	9	4.6	13.8
민간교육(자율) - 직능단체(직종)	4	2.1	6.2
민간교육(자율) - 경영단체	0	0.0	0.0
공단교육(자율) - 외국인 고용	2	1.0	3.1
계	194	100.0	298.5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효과성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사업주 교육과정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교육과정은 위험성평가 교육과정(전체 응답자의 84.6%)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과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과정 순으로 평가하고 있음

(2)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 다음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 결과임

〈표 II-34〉 산재예방업무 수행에 있어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N=65,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매우불필요	1	1.5
불필요	4	6.2
필요	41	63.1
매우필요	19	29.2
계	65	100.0

-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92.3% 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II-35〉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

N=6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 (N=60)
법적 의무 안내	45	25.3	75.0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	44	24.7	73.3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31	17.4	51.7
정책과 지원사업 소개	16	9.0	26.7
안전경영 노하우 공유	24	13.5	40.0
안전경영 의지 향상	18	10.1	30.0
계	178	100.0	296.7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필요성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표 II-35>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0명에게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 결과임
  - 법적 의무 사항 안내(전체 응답자의 75.0%),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안전경영 노하우 공유, 안전경영의지 향상, 정책과 지원사업 소개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결과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강하고, 정부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안내보다는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자료 및 정보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5명에게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어진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임
  - 불필요한 이유는 전체 응답자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이 ‘실무에 활용이 어려움’이라고 답하였으며, ‘위험하지 않음’, ‘참석이 어려움’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음

**<표 II-36>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한 이유**

N=5(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 (N=5)
알고 있는 내용	5	83.3	100.0
실무에 활용 어려움	1	16.7	20.0
위험하지 않음	0	0	0.0
참석이 어려움	0	0	0.0
계	6	100.0	120.0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불필요성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5)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 (1)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무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 사업주(안전담당임원)라고 답한 자가 53.0%이었으며, 다음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임

〈표 II-37〉 사업장 산재예방의 핵심 직무자

N=200,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사업주(안전담당임원)	106	5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62	31.0
관리감독자(부서장)	15	7.5
안전/보건관리자	3	1.5
담당 직원	14	7.0
계	200	100.0

-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업종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음

〈표 II-38〉 사업장 업종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 조사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빈도
제조업	빈도	23	11	0	0	1	35
	전체대비	19.5	9.3	0.0	0.0	0.8	29.7
	업종대비	65.7	31.4	0.0	0.0	2.9	100.0

구 분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건설업 (본사 포함)	빈 도	12	22	5	2	1	42
	전체대비	10.2	18.6	4.2	1.7	0.8	35.6
	업종대비	28.6	<b>52.4</b>	11.9	4.8	2.4	100.0
운수창고통신업	빈 도	1	1	0	0	1	3
	전체대비	0.8	0.8	0.0	0.0	0.8	2.5
	업종대비	<b>33.3</b>	33.3	0.0	0.0	33.3	100.0
서비스업	빈 도	17	5	3	0	1	26
	전체대비	14.4	4.2	2.5	0.0	0.8	22.0
	업종대비	<b>65.4</b>	19.2	11.5	0.0	3.8	100.0
기타	빈 도	10	1	0	0	1	12
	전체대비	8.5	0.8	0.0	0.0	0.8	10.2
	업종대비	<b>83.3</b>	8.3	0.0	0.0	8.3	100.0
계	빈도	63	40	8	2	5	118
	전체대비	<b>53.4</b>	33.9	6.8	1.7	4.2	100.0

\* p=0.006 < 0.05

- 응답결과는 유의미(p=0.006)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및 산재예방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자라고 답하였고, 건설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응답하였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의 53.4%로 전문가를 포함한 응답 결과인 53.0%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음

〈표 II-39〉 사업장 규모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에 대한 인식 조사 실태  
N=118, (단위 : 명, %)

구 분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담당 임원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	계
5인 미만	빈 도	5	4	0	0	1	10
	전체대비	4.2	3.4	0.0	0.0	0.8	8.5
	규모대비	<b>50.0</b>	40.0	0.0	0.0	10.0	100.0
5 ~ 50인 미만	빈 도	42	11	1	0	3	57
	전체대비	35.6	9.3	0.8	0.0	2.5	48.3
	규모대비	<b>73.7</b>	19.3	1.8	0.0	5.3	100.0
50 ~ 100인 미만	빈 도	6	4	1	0	0	11
	전체대비	5.1	3.4	0.8	0.0	0.0	9.3
	규모대비	<b>54.5</b>	36.4	9.1	0.0	0.0	100.0
100 ~ 300인 미만	빈 도	5	4	1	0	0	10
	전체대비	4.2	3.4	0.8	0.0	0.0	8.5
	규모대비	<b>50.0</b>	40.0	10.0	0.0	0.0	100.0
300인 이상	빈 도	5	17	5	2	1	30
	전체대비	4.2	14.4	4.2	1.7	0.8	25.4
	규모대비	16.7	<b>56.7</b>	16.7	6.7	3.3	100.0
계	빈도	63	40	8	2	5	118
	전체대비	<b>53.4</b>	33.9	6.8	1.7	4.2	100.0

\* p=0.003 < 0.05

- 응답결과는 유의미(p=0.003)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핵심 직무자는 사업주라고 답하였음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를 사업주(16.7%)보다는 안전보관리책임자(56.7%)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다음은 산재발생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임
  -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전체 응답자 200명 중 154명, 77.0%),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58.0%), 유해위험요인 미파악(55.5%) 등의 순임
  -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함
-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교육 역량 향상이 요구됨
  - 근로자 안전의식 계도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

〈표 II-40〉 산재발생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N=20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N=200)
시설, 도구 등 작업환경 불량	86	14.4	43.0
유해위험요인 파악 못함	111	18.6	55.5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경영의 후순위로 생각)	116	19.4	58.0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154	25.8	77.0
근로자의 정보 및 교육(훈련) 부족	81	13.5	40.5
자체감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50	8.4	25.0
계	598	100.0	299.0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산재발생 원인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표 II-41>은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 역량에 관한 설문 결과임
  -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전체 응답자 200명 중 169명, 84.5%),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70.5%),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61.5%) 순으로 나타났음
- 사업주 교육을 시행한다면 다음 교육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순위 : 사업주의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 2순위 : 산재발생으로 인한 사업운영 손실액 대비 안전예산 투자확대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내용
- 3순위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 교육, 근로자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교육

〈표 II-41〉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 역량

N=20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N=200)
시설개선 등 예산 확보	141	23.6	70.5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식	123	20.6	61.5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	169	28.3	84.5
교육 및 정보 확보 및 제공	97	16.2	48.5
조직관리 노하우	67	11.2	33.5
계	597	100.0	298.5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필요 역량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요구도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로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음

〈표 II-4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필요성

N=200,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불필요	7	3.5
불필요	6	3.0
필요	109	54.5
매우필요	78	39.0
계	200	100.0

- 사업주 교육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항목 순으로 복수 선택한 결과
  - 개선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교육내용(전체 응답자 200명 중 113명, 56.5%), 교육의무화(55.0%), 실무활용 연계(46.0%), 이수시 혜택(29.5%) 등의 순임
  -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요구가 있었음

**〈표 II-4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우선순위**

N=20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N=200)
교육 의무화	110	18.3	55.0
교육 과정	36	6.0	18.0
교육 내용	113	18.8	56.5
교육 주기와 시간	43	7.2	21.5
교육 실시방식	49	8.2	24.5
실시 주체	35	5.8	17.5
강사 역량	49	8.2	24.5
교육 시설(편의성 등)	14	2.3	7.0
실무활용 연계	92	15.3	46.0
이수시 혜택	59	9.8	29.5
계	600	100.0	300.0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자(N=110)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N=200)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무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55.0%이었고,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118명 중 58명(49.2%), 전문가 응답자 63.4%가 사업주 교육 의무화를 사업주 교육 개선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음

- 이는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기에 의무화가 3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 응답자의 55.0% 이상이 사업주 교육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44〉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일반사항

N=110,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응답자수(명)	의무화 요구 응답자수(명)	의무화 요구비율(%)
성별	남자	152	86	56.6
	여자	48	24	50.0
연령	20대	11	6	54.5
	30대	22	16	72.7
	40대	52	26	50.0
	50대	67	38	56.7
	60대이상	48	24	50.0
경력	3년 미만	15	7	46.7
	3~5년 미만	15	11	73.3
	5~10년 미만	27	17	63.0
	10~20년 미만	52	27	51.9
	20년 이상	91	48	52.7
응답자 유형	사업장	118	58	49.2
	전문가	82	52	63.4
사업장 업종 (N=118 중 58명)	제조업	35	13	37.1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42	22	52.4
	운수창고 통신업	3	1	33.3
	서비스업	26	16	61.5
	기타	12	6	50.0
사업장의 종업원수	5인 미만	10	3	30.0
	5~50인 미만	57	25	43.9

구 분		전체 응답자수(명)	의무화 요구 응답자수(명)	의무화 요구비율(%)
(N=118 중 58명)	50~100인 미만	11	9	81.8
	100~300인 미만	10	4	40.0
	300인 이상	30	17	56.7
사업장 직책 (N=118 중 58명)	사업주	51	22	4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8	23	60.5
	안전담당임원(실장, 이사 등)	29	13	44.8
전문가직종 (N=82 중 52명)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등)	19	14	73.7
	직능단체 등 기타 교육운영담당자	8	4	50.0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등)	40	22	55.0
	학계 등 기타 전문가(교수 등)	15	12	80.0

○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전체 평균 55.0%)을 연령, 경력, 응답자 유형, 사업장의 업종·규모·직책, 전문가의 그룹 등으로 상대 평가하였음

- 연령별로는 30대가 응답자 중 72.7%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50대도 평균보다 높은 56.7%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음
- 경력별로는 3~5년 미만이 73.3%로 높은 의무화 요구도를 보이고, 5~10년 미만도 63.0%로 평균보다 높은 의무화 요구가 있었으며, 비교적 경력이 높은 2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52.7%)이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음
- 전문가 그룹이 63.4%의 의무화 요구가 있고,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49.2%로 의무화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61.5%로 의무화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관리 집중관리 대상인 제조업(37.1%), 건설업(52.4%), 운수창고통신업(33.3%)로 의무화의 요구도가 평균보다 낮게 응답하였음

-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의 81.8%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이 평균보다 높은 요구도(56.7%)를 나타내고 있음
- 직책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 60.5%가 의무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는 43.1%에 그치고 있어 본인의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화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 수가 더 많았음
- 전문가 직종 중에는 직능단체 등 교육운영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전문가가 평균 이상으로 의무화 의견을 나타내었고, 그중에서 교수 등 학계전문가 중 80.0%가 의무화를 교육제도 개선 우선순위로 선정함

○ 다음은 사업주 교육을 경영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 \* 경영상 교육 : 기업 경영과 접목한 안전보건교육
- \* 실무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

**〈표 II-45〉 사업주 교육을 경영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성**  
N=200,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불필요	7	3.5
불필요	42	21.0
필요	83	41.5
매우필요	68	34.0
계	200	100.0

○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4.5%이었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5.5%이었음

- 굳이 사업주 교육을 경영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

○ 다음은 사업주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교육내용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음

〈표 II-46〉 사업주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 선호도

N=20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 (N=200)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 중소기업장 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88	14.7	44.0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 등 법령상 의무	135	22.5	67.5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안전투자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 등	101	16.8	5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와 실무 - 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계획 수립, 성과측정 등	77	12.8	38.5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 안전인식 제고, 안전생활 실천 등	108	18.0	54.0
조직관리 역량 강화 - 의사소통, 구성원 역량 및 참여 강화, 책임과 권한 부여 등	91	15.2	45.5
계	600	100.0	300.0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선호도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사업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항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순임
- 사업주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음

〈표 II-47〉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의견

N=200(단일 선택), (단위 : 명, %)

내 용	구 분	빈도	백분율(%)
교육주기	매년	112	56.0
	2년마다	61	30.5
	3년마다	20	10.0
	최초 1회	7	3.5
	소계	200	100.0
교육시간	2시간	81	40.5
	4시간	70	35.0
	8시간	46	23.0
	기타	3	1.5
	소계	200	100.0
교육방법	집체(대면)	131	65.5
	원격(실시간)	13	6.5
	원격(동영상)	27	13.5
	집체+원격(동영상)	29	14.5
	소계	200	100.0
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63	31.5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등)	24	12.0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	107	53.5
	대학교, 직능단체, 기타 협회	6	3.0
	소계	200	100.0

-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주기는 매년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0%로 가장 높고
  - 교육시간은 2시간이 40.5%, 4시간이 35.0%, 8시간이 23.0% 이었음
  - 교육방법은 집체(대면)교육이 65.5%로 가장 높고, 집체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혼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14.5%로 나타났음
  -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도 31.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제도와 교육 환경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을 교차 분석하였음

〈표 II-48〉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주기’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매년	빈 도	17	28	3	13	6	67
	분 포	25.4	41.8	4.5	19.4	9.0	100.0
	업종중 비율	48.6	66.7	100.0	50.0	50.0	56.8
2년마다	빈 도	10	11	0	9	6	36
	분 포	27.8	30.6	0.0	25.0	16.7	100.0
	업종중 비율	28.6	26.2	0.0	34.6	50.0	30.5
3년마다	빈 도	7	2	0	2	0	11
	분 포	63.6	18.2	0.0	18.2	0.0	100.0
	업종중 비율	20.0	4.8	0.0	7.7	0.0	9.3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최초 1회	빈 도	1	1	0	2	0	4
	분 포	25.0	25.0	0.0	50.0	0.0	100.0
	업종중 비율	2.9	2.4	0.0	7.7	0.0	3.4
계	빈 도	35	42	3	26	12	118
	분 포	29.7	35.6	2.5	22.0	10.2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297 > 0.05$

- 업종별 교육주기에 관한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 $p=0.297$ )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업종에서 교육주기 선호도는 ‘매년’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장 소속 118명 중 67명(56.8%)이 ‘매년’을 선호하고 있고, 건설업이 응답자 42명 중 28명(66.7%)이 ‘매년’을 선호하고 있음
  - 제조업도 응답자 35명 중 ‘매년’이 48.6%, ‘2년마다’가 28.6%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매년’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음

〈표 II-49〉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시간’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2시간	빈 도	25	12	3	20	7	67
	분 포	37.3	17.9	4.5	29.9	10.4	100.0
	업종중 비율	71.4	28.6	100.0	76.9	58.3	56.8
4시간	빈 도	6	14	0	5	4	29
	분 포	20.7	48.3	0.0	17.2	13.8	100.0
	업종중 비율	17.1	33.3	0.0	19.2	33.3	24.6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8시간	빈 도	3	15	0	1	0	19
	분 포	15.8	78.9	0.0	5.3	0.0	100.0
	업종중 비율	8.6	<b>35.7</b>	0.0	3.8	0.0	<b>16.1</b>
기타	빈 도	1	1	0	0	1	3
	분 포	33.3	33.3	0.0	0.0	33.3	100.0
	업종중 비율	2.9	2.4	0.0	0.0	8.3	<b>2.5</b>
계	빈 도	35	42	3	26	12	118
	분 포	29.7	35.6	2.5	22.0	10.2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01 < 0.05

- 업종별 교육시간에 관한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p=0.001)을 보이고 있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보면 교육시간은 ‘2시간’(56.8%)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4시간’(24.6%), ‘8시간’(16.1%) 순이며, 업종별로 교육시간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전문가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N=200)의 응답 결과는 ‘2시간’(40.5%), ‘4시간’(35.0%), ‘8시간’(23.0%)과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4시간’을 더 많이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2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건설업은 ‘8시간’(35.7%), ‘4시간’(33.3%), ‘2시간’(28.6%) 순으로써 ‘8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

〈표 II -50〉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집체(대면)	빈 도	15	29	1	13	6	64
	분 포	23.4	45.3	1.6	20.3	9.4	100.0
	업종중 비율	<b>42.9</b>	<b>69.0</b>	<b>33.3</b>	<b>50.0</b>	<b>50.0</b>	<b>54.2</b>
원격(실시간)	빈 도	4	3	1	1	1	10
	분 포	40.0	30.0	10.0	10.0	10.0	100.0
	업종중 비율	11.4	7.1	33.3	3.8	8.3	8.5
원격(동영상)	빈 도	13	5	1	6	1	26
	분 포	50.0	19.2	3.8	23.1	3.8	100.0
	업종중 비율	37.1	11.9	33.3	23.1	8.3	<b>22.0</b>
집체+원격	빈 도	3	5	0	6	4	18
	분 포	16.7	27.8	0.0	33.3	22.2	100.0
	업종중 비율	8.6	11.9	0.0	23.1	33.3	15.3
계	빈 도	35	42	3	26	12	118
	분 포	29.7	35.6	2.5	22.0	10.2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104 > 0.05$

○ 업종별 교육방법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미흡 ( $p=0.104$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업종에서 집체교육(54.2%)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전문가를 포함한 N=200의 응답결과의 집체교육 선호도 65.5%보다는 다소 낮음

〈표 II-51〉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빈 도	7	9	1	15	3	35
	분 포	20.0	25.7	2.9	42.9	8.6	100.0
	업종중 비율	20.0	21.4	<b>33.3</b>	<b>57.7</b>	25.0	<b>29.7</b>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등)	빈 도	8	2	1	1	2	14
	분 포	57.1	14.3	7.1	7.1	14.3	100.0
	업종중 비율	22.9	4.8	<b>33.3</b>	3.8	16.7	11.9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	빈 도	20	30	1	10	7	68
	분 포	29.4	44.1	1.5	14.7	10.3	100.0
	업종중 비율	<b>57.1</b>	<b>71.4</b>	<b>33.3</b>	38.5	<b>58.3</b>	<b>57.6</b>
대학교, 직능단체, 기타 협회	빈 도	0	1	0	0	0	1
	분 포	0.0	100.0	0.0	0.0	0.0	100.0
	업종중 비율	0.0	2.4	0.0	0.0	0.0	0.8
계	빈 도	35	42	3	26	12	118
	분 포	29.7	35.6	2.5	22.0	10.2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34 < 0.05

- 업종별 교육기관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값(p=0.034)을 보이고 있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보면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57.6%)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도 29.7%로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교육기관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음

- 전문가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N=200)의 응답 결과와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을 57.7%로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38.5%)의 순임
- 이러한 설문결과는 업종별로 교육기관을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52〉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주기’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매년	빈 도	4	27	6	8	22	67
	분 포	6.0	40.3	9.0	11.9	32.8	100.0
	규모중 비율	40.0	47.4	54.5	80.0	73.3	56.8
2년마다	빈 도	2	21	5	1	7	36
	분 포	5.6	58.3	13.9	2.8	19.4	100.0
	규모중 비율	20.0	36.8	45.5	10.0	23.3	30.5
3년마다	빈 도	2	8	0	0	1	11
	분 포	18.2	72.7	0.0	0.0	9.1	100.0
	규모중 비율	20.0	14.0	0.0	0.0	3.3	9.3
최초1회	빈 도	2	1	0	1	0	4
	분 포	50.0	25.0	0.0	25.0	0.0	100.0
	규모중 비율	20.0	1.8	0.0	10.0	0.0	3.4
계	빈 도	10	57	11	10	30	118
	분 포	8.5	48.3	9.3	8.5	25.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17 < 0.05

- 업종별 교육기관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p=0.017)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교육주기는 ‘매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동일 규모 응답자 중 ‘매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장 규모별 교육주기를 ‘매년’을 선호하는 비율은 5인 미만 40.0%, 5~50인 미만 47.4%, 50~100인 미만 54.5%, 100~300인 미만 80.0%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매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표 II-53〉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시간’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2시간	빈도	7	43	6	3	8	67
	분포	10.4	64.2	9.0	4.5	11.9	100.0
	규모중 비율	<b>70.0</b>	<b>75.4</b>	<b>54.5</b>	30.0	26.7	<b>56.8</b>
4시간	빈도	3	10	2	2	12	29
	분포	10.3	34.5	6.9	6.9	41.4	100.0
	규모중 비율	30.0	17.5	18.2	20.0	<b>40.0</b>	24.6
8시간	빈도	0	2	3	4	10	19
	분포	0.0	10.5	15.8	21.1	52.6	100.0
	규모중 비율	0.0	3.5	27.3	<b>40.0</b>	33.3	16.1
기타	빈도	0	2	0	1	0	3
	분포	0.0	66.7	0.0	33.3	0.0	100.0
	규모중 비율	0.0	3.5	0.0	10.0	0.0	2.5
계	빈도	10	57	11	10	30	118
	분포	8.5	48.3	9.3	8.5	25.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01 < 0.05

- 사업장 규모별 교육시간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p=0.001$ )을 보이고 있음
- 사업장 규모별 교육시간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2시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의 50% 이상(54.5%, 75.4%, 70.0%)이 '2시간'을 선호하였음
  - 100~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8시간'(40.0%)을 오히려 더 선호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시간'(40.0%), '8시간'(33.3%)을 선호하고 있었음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교육시간 '2시간'은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2시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

〈표 II-54〉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집체(대면)	빈도	4	24	7	7	22	64
	분포	6.3	37.5	10.9	10.9	34.4	100.0
	규모중 비율	40.0	42.1	63.6	70.0	73.3	54.2
원격(실시간)	빈도	0	6	0	1	3	10
	분포	0.0	60.0	0.0	10.0	30.0	100.0
	규모중 비율	0.0	10.5	0.0	10.0	10.0	8.5
원격(동영상)	빈도	4	17	2	1	2	26
	분포	15.4	65.4	7.7	3.8	7.7	100.0
	규모중 비율	40.0	29.8	18.2	10.0	6.7	22.0
집체+원격	빈도	2	10	2	1	3	18
	분포	11.1	55.6	11.1	5.6	16.7	100.0
	규모중 비율	20.0	17.5	18.2	10.0	10.0	15.3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계	빈 도	10	57	11	10	30	118
	분 포	8.5	48.3	9.3	8.5	25.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249 > 0.05

○ 규모별 교육방법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p=0.249)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집체교육 선호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5인 미만부터 300인 이상까지 각각 40.0%, 42.1%, 63.6%, 70.0%, 73.3%로 각 사업장 규모별 응답자 중에서 '집체(대면)교육'을 선호하고 있음

〈표 II-55〉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N=118, (단위 : 명, %)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빈 도	2	19	5	2	7	35
	분 포	5.7	54.3	14.3	5.7	20.0	100.0
	규모중 비율	20.0	33.3	45.5	20.0	23.3	29.7
안전보건전문기관 (대행기관 등)	빈 도	1	12	0	0	1	14
	분 포	7.1	85.7	0.0	0.0	7.1	100.0
	규모중 비율	10.0	21.1	0.0	0.0	3.3	11.9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	빈 도	7	26	5	8	22	68
	분 포	10.3	38.2	7.4	11.8	32.4	100.0
	규모중 비율	70.0	45.6	45.5	80.0	73.3	57.6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대학교, 직 능단체, 타 협회	빈 도	0	0	1	0	0	1
	분 포	0.0	0.0	100.0	0.0	0.0	100.0
	규모중 비율	0.0	0.0	9.1	0.0	0.0	0.8
계	빈 도	10	57	11	10	30	118
	분 포	8.5	48.3	9.3	8.5	25.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17 < 0.05$

- 규모별 교육기관에 관한 차이를 다중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 $p=0.017$ )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을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을 선호하고 있지만 규모별 미소한 차이가 있음
  - 10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각각 80.0%, 73.3%)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설문결과는 규모별로 교육기관을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 교육 실시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음

〈표 II-56〉 사업주 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조사

(단위 : 명, %)

내 용	구 분	빈도	백분율(%)
교육의 필요성 (N=200, 단일 선택)	매우 불필요	0	0
	불 필 요	13	6.5
	필 요	88	44.0
	매우 필요	99	49.5
	소계	200	100.0
필요한 이유 (N=187, 복수 선택)	법적 의무 이해	150	26.7
	안전보건관리 방법 학습	93	16.6
	교육자료 및 정보 습득	85	15.2
	정책과 지원사업 참여	50	8.9
	안전경영 노하우 학습	75	13.4
	안전경영 의지 향상	108	19.3
	소계	561	100.0
교육대상 사업장 (N=187, 단일 선택)	모든 업종	124	66.3
	고위험업종	34	18.2
	고위험업종, 30인 이상	18	9.6
	모든 업종, 30인 이상	11	5.9
	소계	187	100.0
교육형태 (N=187, 단일 선택)	의무교육(법정)	122	65.2
	자율교육(공단)	38	20.3
	자율교육(교육기관)	20	10.7
	자율교육(협회 등)	7	3.7
	소계	187	1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93.5%(응답자 200명 중 187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안전보건 리더가 없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리더의 역량 강화 교육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음

-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187명에 대하여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법적 의무 이해’(26.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경영 의지 향상’(19.3%), ‘안전보건관리 방법 학습’(16.6%) 등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편중없이 고르게 응답하였음
- 사업주 교육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66.3%가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고위험업종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은 18.2%이며, 사업장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동의자가 많지 않음
-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의 65.2%가 사업주 교육의 의무제 운영을 선호하고 있고, 자율로 하더라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20.3%,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10.7%로 나타났음
-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 187명은 사업장 소속 응답자가 106명, 전문가가 81명임
  -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89.8%(106명/11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전문가 소속 응답자는 98.8%(81명/82명)가 필요하다고 응답
- 사업장 소속 긍정 응답자(N=106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별 특성에 관하여 교차분석을 하였음

〈표 II-57〉 사업장의 업종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N=106,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모든업종	빈 도	20	33	3	17	5	78
	분 포	25.6	42.3	3.8	21.8	6.4	100.0
	업종중 비율	71.4	84.6	100.0	70.8	41.7	73.6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고위험업종	빈 도	6	3	0	3	4	16
	분 포	37.5	18.8	0.0	18.8	25.0	100.0
	업종중 비율	21.4	7.7	0.0	12.5	33.3	15.1
고위험업종, 30인 이상	빈 도	2	3	0	2	2	9
	분 포	22.2	33.3	0.0	22.2	22.2	100.0
	업종중 비율	7.1	7.7	0.0	8.3	16.7	8.5
모든업종, 30 인 이상	빈 도	0	0	0	2	1	3
	분 포	0.0	0.0	0.0	66.7	33.3	100.0
	업종중 비율	0.0	0.0	0.0	8.3	8.3	2.8
계	빈 도	28	39	3	24	12	106
	분 포	26.4	36.8	2.8	22.6	11.3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235 > 0.05

- 업종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p=0.297)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았음
- 교육대상 사업장을 ‘모든업종’으로 하자는 의견은 전문가 응답자를 포함한 설문 결과는 66.3%이었으나 사업장 소속 응답자만의 설문 결과에서는 73.6%로 더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음(<표 II-56 참조)

<표 II-58> 사업장의 업종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N=106,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의무교육 (법정)	빈 도	14	32	2	14	4	66
	분 포	21.2	48.5	3.0	21.2	6.1	100.0
	업종중 비율	50.0	82.1	66.7	58.3	33.3	62.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자율교육 (공단)	빈 도	12	6	1	5	6	30
	분 포	40.0	20.0	3.3	16.7	20.0	100.0
	업종중 비율	42.9	15.4	33.3	20.8	50.0	28.3
자율교육 (교육기관)	빈 도	2	0	0	4	2	8
	분 포	25.0	0.0	0.0	50.0	25.0	100.0
	업종중 비율	7.1	0.0	0.0	16.7	16.7	7.5
자율교육 (협회 등)	빈 도	0	1	0	1	0	2
	분 포	0.0	50.0	0.0	50.0	0.0	100.0
	업종중 비율	0.0	2.6	0.0	4.2	0.0	1.9
계	빈 도	28	39	3	24	12	106
	분 포	26.4	36.8	2.8	22.6	11.3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60 > 0.05$

- 업종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p=0.060$ )은 낮지만, ‘의무교육(법정)’의 요구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 교육형태를 ‘의무교육(법정)’으로 하자는 의견은 전문가 응답자를 포함한 설문 결과는 65.2%이고, 사업장 소속 응답자만의 설문 결과도 62.3%로 비슷한 수준임(<표 II-56 참조)

〈표 II-59〉 사업장의 규모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N=106, (단위 : 명, %)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 인 미만	300인 이상	계
모든업종	빈 도	5	29	9	7	28	78
	분 포	6.4	37.2	11.5	9.0	35.9	100.0
	규모중 비율	55.6	60.4	81.8	77.8	96.6	73.6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고위험업종	빈 도	4	10	1	1	0	16
	분 포	25.0	62.5	6.3	6.3	0.0	100.0
	규모중 비율	44.4	20.8	9.1	11.1	0.0	15.1
고위험업종, 30인 이상	빈 도	0	6	1	1	1	9
	분 포	0.0	66.7	11.1	11.1	11.1	100.0
	규모중 비율	0.0	12.5	9.1	11.1	3.4	8.5
모든업종, 30인 이상	빈 도	0	3	0	0	0	3
	분 포	0.0	100.0	0.0	0.0	0.0	100.0
	규모중 비율	0.0	6.3	0.0	0.0	0.0	2.8
계	빈 도	9	48	11	9	29	106
	분 포	8.5	45.3	10.4	8.5	27.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52 > 0.05

○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교육 대상 사업장에 관한 의견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p=0.052)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대상을 ‘모든업종’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았음

〈표 II-60〉 사업장의 규모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N=106, (단위 : 명, %)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의무교육 (법정)	빈 도	6	22	6	7	25	66
	분 포	9.1	33.3	9.1	10.6	37.9	100.0
	규모중 비율	66.7	45.8	54.5	77.8	86.2	62.3
자율교육 (공단)	빈 도	2	19	4	1	4	30
	분 포	6.7	63.3	13.3	3.3	13.3	100.0
	규모중 비율	22.2	39.6	36.4	11.1	13.8	28.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자율교육 (교육기관)	빈 도	0	7	1	0	0	8
	분 포	0.0	87.5	12.5	0.0	0.0	100.0
	규모중 비율	0.0	14.6	9.1	0.0	0.0	7.5
자율교육 (협회 등)	빈 도	1	0	0	1	0	2
	분 포	50.0	0.0	0.0	50.0	0.0	100.0
	규모중 비율	11.1	0.0	0.0	11.1	0.0	1.9
계	빈 도	9	48	11	9	29	106
	분 포	8.5	45.3	10.4	8.5	27.4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07 < 0.05$

-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교육 교육형태에 관한 의견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p=0.007$ )이 있음
- 모든 규모에서 교육형태를 ‘의무교육(법정)’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교육(법정)’의 선호도(77.8%, 86.2%)가 절대적으로 높으나, 5인~50인 미만과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교육(공단)’을 선호하는 비율(39.6%, 36.4%)도 다소 높게 나타났음

(5)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의 인센티브

- 다음은 사업주 교육 참여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임
- 사업주 교육을 자율로 할 때 사업주 교육 참여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선호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요율 할인’(22.5%)이 가장 높고, ‘안전보건개선자금 지원액 확대’(19.5%), ‘정부의 근로감독 보

류'(18.7%) 등의 순이었음

〈표 II-61〉 사업주 교육 참여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선호도 조사

N=200(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sup>1)</sup>	응답자의 비 (N=200)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	111	18.7	55.5
안전보건개선자금(시설, 용자) 지원액 확대	116	19.5	58.0
산재보험요율할인	134	22.5	67.0
법인세 감면	67	11.3	33.5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2	5.4	16.0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	80	13.4	40.0
사업운영을 위한 용자금 지원 확대(저금리)	55	9.2	27.5
계	595	100.0	297.5

(주) 1) 백분율(%)은 각 항목별 선호도에 대한 가중치의 의미가 있음

○ 다음은 사업장 업종별 선호하는 인센티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대상으로 업종별 인센티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임

-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 할인'(23.8%)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4.0%, 25.3%)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 제조업 종사자가 선호하는 인센티브는 '산재보험요율 할인'(23.8%), '안전보건 개선 지원금 확대'(22.9%),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1.0%), '법인세 감면(18.1%) 등의 순임
- 건설업 종사자가 선호하는 인센티브는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4.0%), '산재보험요율 할인'(23.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14.4%), '안전보건 개선 지원금 확대'(12.0%) 등의 순임

- 서비스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는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5.3%), ‘산재보험요율 할인’(20.3%), ‘안전보건 개선 지원금 확대’(16.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13.9%) 등의 순임

〈표 II-62〉 사업장 업종별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 조사

N=118(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계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	빈 도	22	30	2	20	3	77
	분 포	28.6	39.0	2.6	26.0	3.9	100.0
	업종중 비율	21.0	<b>24.0</b>	22.2	<b>25.3</b>	8.3	<b>21.8</b>
안전보건개선 자금(시설, 용자) 지원액 확대	빈 도	24	15	3	13	10	65
	분 포	36.9	23.1	4.6	20.0	15.4	100.0
	업종중 비율	22.9	12.0	<b>33.3</b>	16.5	<b>27.8</b>	18.4
산재보험요율 할인	빈 도	25	29	2	16	9	81
	분 포	30.9	35.8	2.5	19.8	11.1	100.0
	업종중 비율	<b>23.8</b>	23.2	22.2	20.3	25.0	<b>22.9</b>
법인세 감면	빈 도	19	14	2	9	4	48
	분 포	39.6	29.2	4.2	18.8	8.3	100.0
	업종중 비율	18.1	11.2	22.2	11.4	11.1	13.6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빈 도	5	11	0	6	0	22
	분 포	22.7	50.0	0.0	27.3	0.0	100.0
	업종중 비율	4.8	8.8	0.0	7.6	0.0	6.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	빈 도	5	18	0	11	5	39
	분 포	12.8	46.2	0.0	28.2	12.8	100.0
	업종중 비율	4.8	14.4	0.0	13.9	13.9	11.0
사업운영을 위한 용자금 지원 확대(저금리)	빈 도	5	8	0	4	5	22
	분 포	22.7	36.4	0.0	18.2	22.7	100.0
	업종중 비율	4.8	6.4	0.0	5.1	13.9	6.2
계	빈 도	105	125	9	79	36	354
	분 포	29.7	35.3	2.5	22.3	10.2	100.0
	업종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다음은 사업장 규모별 선호하는 인센티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대상으로 규모별 인센티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임
-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 종사자 전체 평균으로는 ‘산재보험 요율 할인’(22.9%),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1.8%), ‘안전보건 개선 자금 지원액 확대’(18.4%), ‘법인세 감면’(13.6%) 등의 순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5.8%), ‘법인세 감면’(22.6%), ‘안전보건 개선 자금 지원액 확대’(16.1%), ‘산재보험 요율 할인’(16.1%) 등의 순임
  - 5~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요율 할인’(24.6%), ‘안전보건 개선 자금 지원액 확대’(23.4%), ‘법인세 감면’(17.0%),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16.4%) 등의 순임
  -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4.2%), ‘산재보험 요율 할인’(24.2%), ‘안전보건 개선 자금 지원액 확대’(15.2%), ‘법인세 감면’(15.2%), 등의 순임
  - 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30.0%), ‘산재보험 요율 할인’(23.3%), ‘안전보건 개선 자금 지원액 확대’(20.0%),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10.0%),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10.0%) 등의 순임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7.0%), ‘산재보험 요율 할인’(21.3%),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16.9%),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12.4%) 등의 순임
  -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 인센티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 시 가점 혜택’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인 경우도 입찰 참가 가점부여와 연관되는 항목임

〈표 II-63〉 사업장 규모별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 조사

N=118(복수 선택), (단위 : 명, %)

구 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	빈 도	8	28	8	9	24	77
	분 포	10.4	36.4	10.4	11.7	31.2	100.0
	규모중 비율	<b>25.8</b>	16.4	<b>24.2</b>	<b>30.0</b>	<b>27.0</b>	21.8
안전보건개선 자금(시설, 용자) 지원액 확대	빈 도	5	40	5	6	9	65
	분 포	7.7	61.5	7.7	9.2	13.8	100.0
	규모중 비율	16.1	23.4	15.2	20.0	10.1	18.4
산재보험요율 할인	빈 도	5	42	8	7	19	81
	분 포	6.2	51.9	9.9	8.6	23.5	100.0
	규모중 비율	16.1	<b>24.6</b>	<b>24.2</b>	23.3	21.3	<b>22.9</b>
법인세 감면	빈 도	7	29	5	2	5	48
	분 포	14.6	60.4	10.4	4.2	10.4	100.0
	규모중 비율	22.6	17.0	15.2	6.7	5.6	13.6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빈 도	0	7	1	3	11	22
	분 포	0.0	31.8	4.5	13.6	50.0	100.0
	규모중 비율	0.0	4.1	3.0	10.0	12.4	6.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등 혜택	빈 도	3	16	2	3	15	39
	분 포	7.7	41.0	5.1	7.7	38.5	100.0
	규모중 비율	9.7	9.4	6.1	10.0	16.9	11.0
사업운영을 위한 용자금 지원 확대(저금리)	빈 도	3	9	4	0	6	22
	분 포	13.6	40.9	18.2	0.0	27.3	100.0
	규모중 비율	9.7	5.3	12.1	0.0	6.7	6.2
계	빈 도	31	171	33	30	89	354
	분 포	8.8	48.3	9.3	8.5	25.1	100.0
	규모중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 설문조사 결과 고찰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과 관계 전문가 82명, 총 2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장은 제조업(35명), 건설업(42명) 등으로 분류하고, 5~50인 미만(57명), 300인 이상(30명) 등 규모별로 분류하였으며, 직책은 사업주(51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38명) 등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운영실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는 법적 안전보건관리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직책을 묻는 문항으로, 안전보건관리 방침 수립·안전보건관리 조치·안전보호구 지급·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관리 의견 수렴·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등을 실제로 이행하는 직책에 대한 것이다.

- (1) 안전보건관리 핵심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자는 사업주가 가장 우선이며,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안전보건관리 방침을 실제로 수립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교차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수립한다는 응답자가 56.8%로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19.5%)가 수립하고 있다.
- (3)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로 안전보건 담당직원이 수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의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4) 안전보호구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의 직책에 관한 설문을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하지만 사업주의 역할이 높다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 (5) 안전보건관리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직원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보 제공 주체는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에서 점점 클수록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직원으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6)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는 비율(32.2%)이 가장 높았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경향이 높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는 정보 제공 주체와 유사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직원이 수행하는 비율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교육실시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7) 안전보건관리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가 직접 의견 수렴하는 경향이 높고, 50인 이상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주가 담당하던 것을 담당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또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견 수렴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8)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실제로 작성하는 자의 직책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중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작성한다는 비율이 높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담당직원이 작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 (9)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대부분 직접 수행하고, 50인 이상은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보건관리 실제 주체가 사업주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직원으로 전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0)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규모이며 안전보건관리 직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자가 대부분 사업주이므로 사업주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11)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중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4.5%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 (12)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자의 업종·규모·직책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24.5%)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낮다고 생각한 업종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이었고 규모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었으며 직책은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임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것이 실제 안전보건경영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다고 인식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와는 일정 부분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 25%가 본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운영 실태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중에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험자는 65명(전체의 55.1%)이었고, 사업주인 응답자는 51명 중 41명(80.4%)이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을 갖는 사람이었으며, 사업주 이외의 자도 65명 중 24명(36.9%)가 사업주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업주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의 참여 빈도가 높은 교육과정, 효과성이 높은 교육과정,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및 필요한 이유,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 (1) 사업주 교육의 참여 빈도가 높은 순의 교육과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 65명 중 38명(58.5%)이 참여하여 가장 높았고, 위험성평가 교육(55.4%),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32.3%),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과정(30.8%) 등의 순이었다.
- (2) 참여한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교육과정은 위험성평가 교육(65명 중 55명인 84.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75.4%), 산재예방요율제 교육(52.3%),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35.4%) 등의 순이었다.
- (3)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에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65명 중 60명(92.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매우 필요하다는 사람도 30%에 육박하여 사업주 교육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 (4)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을 교육받고자 하는 요구도가 가장 강하고, 정부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안내보다는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자료 및 정보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 (5) 사업주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교육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실무 활용 곤란을 이유로 선택하여 교육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 (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역량, 사업주 교육의 개선 요구도, 교육과정의 개선사항, 선호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설문·분석하였다.

-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직무자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200명 중 106명(53.0%)이 사업주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31.0%)의 순으로 답하였다.
- (2)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사업주(53.4%), 안전보건관리책임자(33.9%)로 전문가를 포함한 의견과 유사하였다.
- (3) 사업장 업종별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종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건설업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52.4%)가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고 사업주(28.6%)는 후순위이었다. 그 이외 업종은 모두 사업주가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였으며, 제조업 65.7%, 서비스업 65.4%, 기타업종 83.3%로 사업주를 높게 평가하였다.
- (4) 사업장 규모별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규모별 산재예방 핵심 직무자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56.7%)를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고 사업주(16.7%)는 후순위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가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100~300인 미만 50.0%, 50~100인 미만 54.5%, 5~50인 미만 73.7%로 사업주를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였다.
- (5) 산재발생 주된 원인이 무엇인냐는 설문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77.0%),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58.0%), ‘유해위험요인 미파악’(55.5%)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6)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안전 의식 개선 및 고취(84.5%),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70.5%),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61.5%) 순으로 나타났다.
- (7) 사업주 교육의 교육내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하여 1순위 ‘사업주의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2순위 ‘산재발생으로 인한 사업운영 손실액 대비 안전예산 투자확대의 효과성’, 3순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 교육’, 4순위 ‘근로자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5순위 ‘조직관리 노하우’ 등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 (8) 사업주 교육의 개선 요구도는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개선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교육내용, 교육의무화, 실무활용 연계, 이수시 혜택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 (9) 사업주 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 110명(55.0%)이었고, 연령은 30대(72.7%)와 50대(56.7%)에서 평균(55.0%) 이상으로 의무화를 선호하였고, 경력은 3~5년 미만(73.3%), 5~10년 미만(63.0%)이 평균 이상으로 선호하였다.
- (10)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중 58명(49.2%)이 사업주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여 전문가 집단의 요구도(63.4%)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1.5%)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제조업(37.1%)은 비교적 의무화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81.8%)이 의무화 요구도가 가장 높고 300인 이상(56.7%)도 평균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고, 5~50인 미만(43.9%)과 5인 미만(30.0%) 사업장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의무화 요구이지만 상당수의 응답자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 (11) 사업주는 응답자 51명 중 22명(43.1%)만 의무화를 선호하여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의무화 선호도가 높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0.5%)가 가장 높은 의무화 선호도를 보였다. 전문가 중에서는 학계(80.0%)와 교육기관(73.7%) 전문가 집단이 의무화 요구도가 높았다.
- (12) 사업주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13) 사업주 교육과정으로 교육주기는 ‘매년’(56.0%), 교육시간은 ‘2시간’(40.5%), 교육방법은 ‘집체(대면)교육’(65.5%), 교육기관은 ‘정부기관’(53.5%)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 (14) 사업장의 업종별 ‘교육주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든 업종이 ‘매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교육시간’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건설업은 ‘8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그 이외 업종인 제조업 등은 ‘2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4시간’을 선호하고 있다. ‘교육방법’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모든 업종이 ‘집체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모두 ‘정부기관’을 선호하고 있다.
- (15) 사업장의 규모별 ‘교육주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모든 규모에서 ‘매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그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교육시간’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300인 이상은 ‘4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100~300인 미만은 ‘8시간’을, 그 이외의 규모는 ‘2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교육방법’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모든 규모가 ‘집체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모든 규모가 ‘정부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규모가 클수록 그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교육 도입 필요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3.5%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였

다. 필요한 이유는 ‘법적 의무 이해’가 가장 높고, ‘안전경영 의지 향상’, ‘안전보건관리 방법 학습’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대상 사업장은 모든 업종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66.3%)이 지배적이고, 교육형태는 의무교육(65.2%)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교육의 ‘교육대상 사업장’과 ‘교육형태’에 관하여 응답자의 소속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별 응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업종별 ‘교육대상 사업장’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든 업종’으로 하자는 의견이 73.6%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고 이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분석한 66.3%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업종별 ‘교육형태’도 통계적 유의성은 낮으나 기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의무교육’을 가장 선호(62.3%)하고 있었다. 규모별 ‘교육대상 사업장’은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지만 모든 규모에서 ‘모든 업종’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96.6%가 ‘모든 업종’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규모별 ‘교육형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모든 규모에서 ‘의무교육’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교육대상이 될 사업장 규모인 5인~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1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교육(공단)’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 (4) 인센티브의 선호도 조사

사업주 교육 참여도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 교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 인센티브로 선호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요율 할인’(67.0%)이 가장 높고, ‘안전보건개선자금 지원액 확대’(58.0%),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55.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40.0%) 등의 순이었다.

- (2) 사업장 업종별 선호하는 인센티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대상으로 업종별 인센티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 할인’(23.8%)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24.0%, 25.3%)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 (3) 사업장 규모별 선호하는 인센티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속 응답자(N=118)만을 대상으로 규모별 인센티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이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할인’(24.6%)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 (5) 종합의견

-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질적 실행 주체에 대한 설문에서 사업주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실제로 실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알 수 있다.**
- (2) 안전보건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방침수립, 안전보건관리 조치, 보호구 지급, 정보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견수렴, 매뉴얼 작성 등을 각각 설문하고 이를 사업장 업종별, 규모별 교차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모든 항목에서 사업주가 실질적 실행 주체이고, 50인 이상으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직원으로 그 직무 이행자가 전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3) 응답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을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6%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것이 실제 안전보건경영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다고 인식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와는 일정 부분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도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25.5%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본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제조업도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28.6%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 (4) 기존의 사업주 교육과정 중에서 참여빈도가 높고 효과성이 우수한 교육과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5)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에 대한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2.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필요한 이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을 교육받고자 하는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안내보다는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자료 및 정보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 지식을 습득함에 목말라 있음을 확인하였다.
- (6)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직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3.0%가 사업주라고 답하였고,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31.0%)라고 답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건설업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52.4%)라고 답하고 그 이외 제조업(65.7%), 서비스업(65.4%), 기타업종(83.3%)은 사업주가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56.7%)라고 답하였고 그 이외 30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50.0~73.7%로 사업주가 핵심 직무자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직무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7) 산재발생 주된 원인이 무엇인냐는 설문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유해위험요인 미파악’ 등의 순이었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의 순으로 답하였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직무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산재발생으로 인한 사업운영 손실액 대비 안전예산 투자확대의 효과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식 교육’, ‘근로자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조직관리 노하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8)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0%가 의무화에 찬성하였고,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49.2%로 전문가의 찬성률 61.5%보다는 낮았다. 사업주 직책을 갖는 응답자는 43.1%가 의무화에 찬성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1.5%)만 높은 의무화를 요구하였고 제조업은 37.1%로 찬성률이 낮았다.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81.8%)로 높고, 300인 이상(56.7%)도 평균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는 92.3%의 높은 동의를 하지만 의무화에는 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9)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한 설문 결과, 교육주기는 ‘매년’, 교육시간은 ‘2시간’, 교육방법은 ‘집체(대면)교육’, 교육기관은 ‘정부기관’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사업장의 업종별 교차분석한 결과, ‘교육시간’은 건설업은 ‘8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그 이외 업종은 ‘2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4시간’을 선호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모두 ‘정부기관’을 선호하고 있었고,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사업장의 규모별 교차분석한 결과, ‘교육주기’

는 모든 규모에서 ‘매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그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교육시간’은 300인 이상은 ‘4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100~300인 미만은 ‘8시간’을, 그 이외의 규모는 ‘2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교육기관’은 모든 규모가 ‘정부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규모가 클수록 그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 교육방법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 실효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5%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교육대상 사업장은 ‘모든 업종’(66.3%), 교육형태는 ‘의무교육’(65.2%)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사업장 소속 응답자 중 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교육의 대상 업종 및 교육형태를 교차분석한 결과, 사업장 규모별 교육형태는 모든 규모에서 ‘의무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이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5~50인 미만 및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교육’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외 업종별 교육대상 사업장 및 교육형태, 규모별 교육대상 사업장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든 업종’ 및 ‘의무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의 사업주 교육을 도입할 때 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교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규모가 큰 사업장(300인 이상)이 86.2%로 의무화 요구도가 높은 것은 도급계약 상 수급인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여 의무교육을 피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1) 자율교육으로 할 때는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인센티브는 의외로 ‘정부의 근로감독 보류’에 대한 선호도

가 높기 때문에 연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수립할 때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비교적 안전보건 개선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이라 같음하여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후순위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입찰 참가 시 가점 부여를 위한 혜택과 정부포상 추천 대상 사업장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의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 산재보험요율할인과 안전보건개선자금 지원액 확대 등은 기존의 예방요율제 대상 사업의 종류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제도와 재정지원 사업의 선제조건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전문가 인터뷰

### 1)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

- 직능단체 5명(경총, 노총,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퀵서비스협회)
- 관련 전문가 5명(컨설팅업체, 기술지도업체 등)
- 제조업 임원 6명
- 건설업 임원 4명

### 2) 인터뷰 내용

2.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은 백점 만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국내 사업장 전반적 수준~??

- 30점부터 85점까지 다양한 평점이 있었으나 대부분 60~70점
- 50인 미만 사업장은 30점 미만, 그 이외에는 60~70점이란 의견
- 일부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비교적 높으나 그 이외는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이 공통적 의견
- 대기업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많고,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는 많지 않음
- 다국적 기업에 비하면 국내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3-1 (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낮은 이유(또는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제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이 있으나 적시에 그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홍보가 미흡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이 적시에 사업장 경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정부의 정책 및 제도는 법규 준수만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규제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 안전규제는 그에 대한 원리 및 이해 등을 제공하는 지침 또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실무이행지침(Recommended Practice)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규 준수 여부만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 보다는 형식적 문서행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제도나 정책의 제정 취지,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
- 소규모 건설사는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도 많지 않음
  - 사장 1인에 여직원 1인, 그 이외는 각 현장에 투입된 상태
  - 사장이 직접 현장 근로를 수행하는 회사도 많이 있음
- 경제적 수익창출이 우선이지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가 현장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

**3-2 (70점 이상인 경우) 귀사의 안전보건 활동으로 우수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내용 1~2가지 설명해 주세요.**

- 매일 아침조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성을 안내함
-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최대 규모의 산업보건센터 보유(의사 6명 포함)
- 매년 현장 안전보건 부문 개선 비용 천억원 이상 투자
- 불안정한 행동 개선을 위한 계층별 직무안전교육과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지원 진행
-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험 여부 및 효과??**

**5. (사업주가 아닌 전문가)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이 진행될 때 교육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
-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보건 정보 습득, 이를 통한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 효과
-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의지·노력·관심이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좌우한다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 이행은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음
- 단순히 이수 여부만을 판단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경영상태 증진과 연계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안전과 사업진흥이 연계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6.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세부적 법규, 안전보건체계 등 세부적 내용 보다는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 향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임
- 사업주가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 체계구축 등에 대하여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임
-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refresh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임
-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해를 증진시켜 서서히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이수를 통해 경영 과정에 접목시키거나 현장 단위별로 건설현장 소장 및 근로자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임
- 매년 안전보건 부문 최신 동향 및 사고사례, 정부정책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사의 안전보건 부문 최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정도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사업주가 교육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주 이외에도 사업장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도 될 것임

**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위험성평가 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30%까지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제조업 직종 또는 전문가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건설업종 종사자를 포함하여 일부 전문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함
- 일부 전문가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함
  -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증이 취소
  - 개별실적요율제도 또한 재해 발생하면 급격히 불리하게 됨
  - 소규모사업장은 30% 할인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므로 관심도 낮음
  - 전문건설업은 원청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므로 혜택이 무의미함 (전문건설업의 연평균 75% 이상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

**8.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장의 규모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직무에 따른 안전보건 직무교육(신규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대부분 잘 알고 있으나, 20명 미만 사업장 소속 임원은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함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대부분 잘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였음

**10.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누구의 의지(또는 역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담자 모두 사업주(최고경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함
-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리더십도 중요함을 강조함

**11.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부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자문 및 교육(Consulting & Training)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 방법 컨설팅
  - 현장중심형 교육 이행
- 예방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예방활동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평가하여야 하지 결과에 대한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함
- 정부정책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점검(개선책 권고)과 안전보건 지원정책이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함
-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개월 2회 기술지도가 진행되지만 한계가 있고 상시적인 정부차원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사업주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나 산업재해는 감소되고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 있고, 근로자 통제를 위해 노동단체들도 역할을 하여야 함
-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이나 감독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유도가 효과적이라 생각함
- 시설개선 자금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사업주의 안전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
-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도 있음

**12. 최근 발생하는 산업재해들은 어떠한 원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십니까?**

- 안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원가 문제(저가 수주로 인한 악순환), 외국인 근로자 등
  -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원가는 더 낮아지고 더욱 불안정한 상태가 됨
- 안전대책 수립·매뉴얼의 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위험에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계적 대처 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장별로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야 함
- 사업장별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비상시 연락방법, 비상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징후의 전조 증세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가 필요
- 작업장 불안정한 상태 방치와 근로자 불안정한 행동이 가장 큰 문제점
- 근로자 분야를 성역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근로자 책임 소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 및 불안정한 행동 근절이 필요함
- 행안부에서 재난예고 문자 송부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고발생 후 동종 사업장에 전파하는 체계구축으로 안전의식 향상 필요
- 하도급 공사에서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가 미흡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재, 생산성 위주의 노동구조, 안전보건활동의 비활성화, 사고성 재해 위주의 예방정책, 산안법의 적용 제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 신입직원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안정한 행동과 안전문화에 대한 의지와 인식 부족

**13-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원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

-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참여율이 낮을 것임. 의무제로 한다면 저항이 강할 것임. 자율제로 하고 실속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사업주 단체 입장).
- 자율제로 할 경우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 대규모 사업장을 포함하여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임(전문가 입장)
- 의무제로 하는 것이 좋음. 경영(사업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자율도 좋음. 그와 무관하게 교육내용이 충실하여야 함(전문가 입장)
- 사업주 교육을 시행한다면 의무제로 하여야 하며, 인센티브 부여 자율로 하면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것임
- 곧바로 의무제는 반발이 심해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일정한 시행 후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제 도입 필요.
- 위험한 업종에 한하여 의무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법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모든 업종에 의무제로 하여야 함. 다만, 위험업종은 교육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임
- 자율제 운영이 바람직하며 일괄적인 집체교육 의무제 반대. 현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의무제 운영은 형식적 교육 실시 가능성 높음.(경영자 단체)
  - \* 정기교육 등이 내실있게 진행되기보다 법규 리스크 해소 위한 서명지 관리 등에만 집중
  - 만약 위험업종을 우선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업종인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면 의무제가 바람직할 것임.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리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발

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노동자 단체)

-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면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하여도 될 것임
  - 만약 자율제로 실시한다면, 현재도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이 16,000여개 사업장에 불과한데 또 다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유인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임.
- 매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자율제를 선호하지만 의무제로 하더라도 정부시책을 존중하며, 의무제로 한다면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는 것이 좋음(사업주)
  -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을 것임

**13-2 의무제로 한다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위험업종이라 판단되는 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

- 일부 고위험 업종에 한하여 의무제 도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음
- 의무제 도입을 원하는 면담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는 것을 주장함
- 위험업종에 대한 교육은 교육내용을 특화하여 추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13-3 의무제로 한다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은 그 내용이 차별화 되어야 하므로 그 내용은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
- 전문가의 이론적 내용으로는 딱딱 맞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도로 도입할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

**13-4 만약 자율제로 운영한다면 사업주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이외에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많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세요.**

-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 정기 근로감독 보류 또는 횟수 조정
- 안전보건 시설/장치 설치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도 형량 1/2 감형
- 입찰 관련 가점 제공
- 경영평가에 가점, 정부포상, 산재보험예방요율제 등등
- 50인 이상은 근로감독 점검을 유예하고, 크린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자율제로 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며, 대리 참석이 많을 것임

- 안전지수평가 등 하도급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영업활동에 연계되는 인센티브가 가장 유효할 것임(신인도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 산안법상 과태료 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 필요(경영 단체)
  - 현실적으로 산안법의 완벽한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정부 감독 시 다수의 산안법 위반 사항 적발로 상당 금액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면 사업장 비용 부담 심화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개선 및 안전문화 향상에 사업주의 안전리더십이 강조되는 만큼, 꾸준한 교육 참여와 관심을 보이는 사업주(사업장)에게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계도 기회를 좀 더 부여하면서 안전리더십을 현장에서 잘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협력업체일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시 가점 부여도 고려 대상이고, 정부·공단의 기술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함(경영 단체)
- 교육비 감면, 안전보건표지판(중량물, 보호구 등)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위험성평가, 유해요인조사 등) 양식 제공 등

1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의내용에 포함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 ① 안전보건 관련 정부정책의 이해
-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해
- ③ 재해손실의 경제적 가치 이해
- ④ 안전문화 실천
-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천
- ⑥ 의사소통능력
- ⑦ 대인관계능력

-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해”, 2순위

“① 안전보건 관련 정부정책의 이해”, 3순위는 “③ 재해손실의 경제적 가치 이해”와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천”이 동일하고, 5순위 “④ 안전문화 실천”, 6순위 “⑥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

○ 그 이외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안전보건리더십”, “역할과 책임”,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매 2년 마다)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4시간(인정기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시간 및 보수교육 주기에 대한 의견~??**

- 신규교육 2시간, 정기교육 2시간(주기 1년)
- 신규교육 4시간, 정기교육 4시간(주기 1년)
- 신규교육 4시간, 정기교육 4시간(주기 2년)
- 신규교육 6시간, 정기교육 6시간(주기 1년)
- 신규교육 6시간, 정기교육 6시간(주기 2년)
- 신규교육 8시간, 정기교육 4시간(주기 1년)
- 신규교육 8시간, 정기교육 8시간(주기 1년)
- 신규교육 8시간, 정기교육 8시간(주기 2년)
- 위와 같이 다양한 교육시간과 교육주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종합분석할 때 주기는 매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예방요율제와 동일한 4시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연구자 의견)

17. 교육방법은 집체·현장교육(대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비실시간, 비대면 실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학습의 자율권 보장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방법을 차등적으로 운영 등 포함)

- 대면교육의 실효성 있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실효성은 미흡
- 실효성 측면에서는 대면교육이 가장 우수
- 4시간인 경우 2시간은 집체교육, 2시간은 비대면 교육 등으로 혼용하여도 좋음
- 신규는 대면 교육, 보수교육은 원격 교육
-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천” 이외는 모두 비대면 교육 가능
- 사전교육(인터넷 교육 이수한 후) 대면 교육
- 대면 집체교육
- 인터넷교육(비대면 실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

18. 예방요율제 적용을 위한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본부이며, 관리책임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기관은 정부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어디에서 교육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기관을 차등적으로 운영 등 포함)

-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는 것이 교육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임
- 만약 민간교육기관이 담당하더라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엄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민간교육기관도 사업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사의 자질과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기를 원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 인터넷 교육인 경우에는 민간교육기관도 교육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
- 대면교육을 하는 때에는 교육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안전보건공단만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접근 애로사항이 예상됨
- 교육내용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전문화·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기관을 정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필요
-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기를 희망하고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민간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자질 또는 교육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
- 민간교육기관의 강사자질, 강의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정부에서 인증하여 업선)에서 민간교육기관도 사업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필요

**18-1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교육 내용(상기 13번 문항 또는 그 이외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아래 교육과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부 전문가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응답함
  - ① 안전보건 관련 정부정책의 이해
  -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해
  - ④ 안전문화 실천
  -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천

**18-2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인식도 증진을 위해 여러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정보수집도 중요하여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관련 특강 등을 참여이수한 것도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같음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세요.**

-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하였음
- 반대하는 이유는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교육이수 하였음을 인정하여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관리 절차가 어렵다는 것임
- 또한 반대자의 의견은 사업주(최고경영자)는 교육을 통하여 정부정책 이나 관계 법령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세미나 등의 참여를 교육 이수한 것으로 확대하면 세미나 등의 내용이 교육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찬성하는 의견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개방하자는 것이며,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도 증진 또는 경영상 사업증진과 연계된 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임
- 또한, 찬성자의 의견은 정형화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으로 국한한다면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수년 내에 그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임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직능단체, 대학, 학회 등을 포함)일지라도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속 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unit ; CEU)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한 사업주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정례적 특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 특강, 학술단체에서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 참여 등등

- 다만, 개별 CEU를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을 때 이에 참여한 실적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 수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과정 이수시간과 그 이외의 CEU에 참여한 참여시간을 1:1로 하기보다는 참여시간의 1/2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같음하는 등의 인정시수를 정할 필요 있음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한다면, 신규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수하고 보수(정기)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임

**19.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는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지도사 면허 소지자)**

-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대의견의 비중이 다소 높았음
- 토론회나 세미나로 같음하는 것은 좋으나 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단순 참여만으로 교육 이수로 같음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리포트가 필요할 것임
- 석·박사, 기술사, 지도사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관리 차원에서 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것은 반대임
- 사업주 교육은 단순히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안전경영 의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하여 사업주 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을 한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이와 차별화되는 것

이므로 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부절절하며, 관리책임자와 사업주는 차별화가 필요

- 사업주 보수(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 석·박사 학위 취득, 기술사 등 자격 취득 등을 한 경우에 보수(정기)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를 계속 면제하는 것은 바르지 않음
-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때에는 오히려 도태될 수 있음

**20-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기준은 차등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세요.**

- 사업주 교육 강사 자격기준과 근로자 교육 강사 자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차별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
-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개개인 강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지 강사가 어느 수준의 자격(자격증, 학위, 경력 등)을 갖추었느냐는 외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강의 능력은 훨씬 못한 사례들도 많기 때문
-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사업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일반 근로자 대상 교육 강사와는 그 역량이 우수하여야 하므로 강의 경험이 많거나 커뮤니케이션, 안전문화, 안전리더십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합당
- 의견들을 종합하면, 자격기준을 학위, 자격, 경험 등 외형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 교육 강사 자격기준과 차별화하기 어렵고, 강사의 역량이 사업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경영관리적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음

**20-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 실무경력, 강의경력 등이 우수한 자로 하여야 함
- 특급기술자, 기술사, 석·박사 등 높은 수준의 강사로 구성할 필요 있음
- 대학교수,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기술사급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급변하는 시대이므로 많은 정보 등을 접하고 알기 위해서는 강사도 지속적으로 재교육받는 것이 좋을 것임
- 사업주 시각에서 산안법령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강사 자격요건 검토 필요
- 안전공단 혹은 교육기관의 관리자 직책 이상 수행자 또는 20년 이상 경력자 등이어야 할 것임

**20-3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제30조(강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세요**

- 강사 역량강화교육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강의 기법 또는 교육 운영 형태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공단 강사교육 내용은 강사의 스킬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단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이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설기관의 강사양성기관에서는 하는 것이 오히려 우수하며, 능률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강사양성교육이 오히려 더 우수함
- 공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주 강사로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공단 자체적인 교육과정 개편·보완 노력 필요

**2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제안해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 수강생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교육과정 필요, 깨우침과 감동을 주는 교육
- 손에 잡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산재예방요율제 30% 할인, 산재예방교육을 받은 경우 처벌을 경감 등
- 사업주 교육 이수자가 실망하는 이유는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음. 눈높이를 잘 맞추어 줄 필요가 있음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망각하지 않기 위해 보수교육 또한 매년 실시해야 함. 또한 안전보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포커스를 맞추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운영해야 함
-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현장 인프라가 필요함. 예방비용은 손실이 아닌 투자라는 측면을 인식하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 사업주 교육의 주체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이 신뢰성이나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정 교육기관도 주입식 강의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예:참여형 교육)의 교육을 진행한다던 효과적일 것임
  -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경영과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인식제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안전보건경영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 집체 교육 개념 보다는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사업주가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최소한의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 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고 경영의 차원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임
- 어렵겠지만 틀에 박힌 교육방식 및 내용에 사로잡히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개선과 관심 제고, 현장 안전관리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에 고민해주길 요망
- 사업주교육 4시간 또는 6시간 등의 참여는 기회비용이라 생각되므로 반드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고용부 지도감독을 면제를 하거나 감독의 횟수, 혹은 감독내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3) 인터뷰 결과 고찰

- (1)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이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이 적시에 사업장 경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은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해를 증진시켜 서서히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3) 산업재해예방정책은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자문 및 교육(Consulting & Training)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 방법 컨설팅, 현장중심형 교육 이행 등이 요구된다.

- (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자율제로 한다면 참여율 낮을 것이고 의무제로 한다면 저항이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제로 하고 실속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율제로 하다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제로 전향하자는 의견, 위험한 업종에 한하여 의무제로 하자는 의견, 법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모든 업종에 의무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5) 의무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내용이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도움이 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Ⅲ. 외국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제도





### Ⅲ. 외국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제도

#### 1. 개 요

외국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제도를 확인하여 국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확인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 스웨덴

확인 방법은 각 국가별 정부의 홈페이지 탐색, 기존 연구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2. 영국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사업주(employer)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3조 제1항이다. 제33조 제1항은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person)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로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정의가 없지만, 1978년 해석법(the Interpretation Act 1978)에 규정되어 있다. 1978년 해석법 제5조에 따르면 사람은 법인 혹 비법인단체 모두(body of persons corporate or unincorporate)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3조 제1항의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자연인으로서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도 영국은 의무이행의 주체가 모두 동일하게 사업주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교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않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일부 경영진의 교육이 필요하여 일부교육 과정에서 경영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법적근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제2조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일반 의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I-1〉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원문	2 General dutie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an employer's duty under
----	--

	<p>the preceding subsection, the matters to which that duty extends include in particular—</p> <p>(c)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instruc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as is necessary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his employees;</p>
번역	<p>제2조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일반적인 의무</p> <p>② 전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의 일반성에 대한 편견 없이, 그 의무가 확장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p> <p>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침, 훈련 및 감독의 제공;</p>

영국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과 안전보건관리규정(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및 보건안전(근로자 상담)규정(The 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 1996)에 명시되어 있다<sup>13)</sup>.

- 산업안전보건법 1974: 근로자 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정보, 지침, 훈련 및 감독 제공에 대한 의무) 규정
- 보건안전관리규정 1999: 고용주의 안전보건 지원 인력 임명, 안전보건 지침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위험지역 접근 금지 의무 및 안전보건 훈련 조건 및 방법에 대한 규정, 근로자의 의무(장비 사용을 위한 훈련 및 지침 준수 의무) 규정
- 근로자 상담 보건안전(근로자 상담)규정 1996: 안전보건 문제를 지닌 근로자

13)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의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53쪽 발췌 인용

로자 상담과 훈련계획 및 조직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규정

〈표 III-2〉 영국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에 대한 하위 규정

구 분	내 용
안전보건관리규정 14)	고용주의 의무사항 수행 보조를 위한 인력 확보(충분한 훈련을 받고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유자격자 임명)
	제7조 건강과 안전 지원 (1) 모든 고용주는 ((6)항 및 (7)항에 대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된 요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유자격자를 한 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5) (1)항과 (8)항의 목적을 위해, (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히 지원하여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고 경험이나 지식, 기타 자질을 갖춘 자는 책임자로 본다
	고용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제한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
	제8조 심각하고 절박한 위험 및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 모든 고용주는~ (c) 근로자가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받지 않는 한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근로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훈련 •훈련이 필요한 경우: 신규 채용, 업무전환 또는 책임 변경, 새로운 장비의 도입 또는 작업 장비의 변경, 새로운 기술 도입, 새로운 작업시스템의 도입 또는 작업시스템의 변경 •훈련방법: 적절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 안전보건 위험요소 반영, 근무시간 중 실시
	제13조 기능 및 훈련 (2)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과 안전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a) 고용주에게 신규 채용된 경우 (b) 다음의 이유로 인해 새롭거나 증대된 위험에 노출된 경우 (i) 고용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전근되거나 책임 변경이 주어진 경우

구 분	내 용
	<p>(ii) 고용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작업 장비에 새로운 작업 장비가 도입되거나 작업 장비가 변경된 경우                      (iii) 고용주의 사업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경우(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to the employer's undertaking), or                      (iv) 고용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작업시스템에 새로운 작업시스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경우</p> <p>(3) 훈련은 다음을 참조하여 ~해야 한다                      (a) 적절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b)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새롭거나 변경된 위험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c)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p> <p>고용주가 제공한 장비 등의 사용을 위한 근로자의 훈련 및 지침 준수 의무</p> <p>제14조 근로자의 의무                      (1)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한 기계, 장비, 위험물질, 운송장비, 생산수단 또는 안전장치를 해당 장비에 대한 훈련과 법률 조항 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과된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p>
<p>보건안전(근로자 상담)규정<sup>15)</sup></p>	<p>안전보건 문제를 지닌 근로자 상담과 훈련계획 및 조직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p> <p>제3조 고용주의 상담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작업장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시에 상담해야 하며                      (d)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건강과 안전 훈련을 계획하고 조직하여야 한다</p>

14) UK legislation. (2022, April 12).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9/3242/contents>

15) UK legislation. (2022, April 12). TThe 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 199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6/1513/contents/made>

## 2)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정 해석

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사업주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 자신들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적 규제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HSE)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권고하고 있다.(INDG 345 Health and safety training;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용 가이드)

- ① 소유자 및 고용주(owners and employers)
- ② 관리자 및 감독자(managers and supervisors)
- ③ 고용자(employees)
- ④ 자영업자(the self-employed)

이는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제도는 없으나 안전보건 지식을 배우고자할 경우에 대응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쉽게 다수의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주들이 스스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전문가를 피고용인 중에서 지명해도 된다.(INDG420 Getting specialist help with health and safety for advice at [www.hse.gov.uk/pubns/indg420.pdf](http://www.hse.gov.uk/pubns/indg420.pdf).)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의무 및 그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영국 HSE의 사업주 안전보건 guidance 제공

- 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적 단계에 관한 가이드(안내서)를

제시

- 안전보건관리 요소 및 방법에 대한 소개는 안전보건계획, 모니터링, 통제 수단의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목록

- ① 안전보건정책의 수립
- ② 작업장 리스크관리 및 위험성평가 실시
- ③ 사고 및 상해 보고
- ④ 정보 및 훈련제공
- ⑤ 작업자에게 컨설팅
- ⑥ 올바른 작업장 시설 설치
- ⑦ 응급조치
- ⑧ 법 포스터 게시
- ⑨ 안전보건전문가 지정

- 위 항목별 법적 의무 근거, 실행 단계, 템플릿 등을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건강 위험물질 통제(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COSHH) guidance 제공

- 화학물질, 흙, 먼지 등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와 작업자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

- 목록

- ① COSHH 기초
- ② COSHH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③ COSHH 핵심 지침
- ④ 화학물질안전 data sheet
- ⑤ 작업장 노출한계

⑥ COSHH 및 당신의 작업장 영향

⑦ 작업장 감염

⑧ 관련 자료 링크

- 관련 법 근거, 적용 범위, 위험의 평가 및 통제 방법, 사례 등을 제공

### (3) 사업주의 주요 의무

- 법적 주요 의무를 안내

① 안전보건정책의 수립

② 작업장 리스크관리 및 위험성평가 실시

③ 사고 및 상해 보고

④ 정보 및 훈련 제공

⑤ 작업자에게 컨설팅

⑥ 올바른 작업장 시설 설치

⑦ 응급조치

⑧ 법 포스터 게시

⑨ 안전보건전문가 지정

- 법 적 근거 및 방법론을 제공

### (4) 자격증 취득 및 보고 의무(담당 기관을 파악하고 접촉)

- 가게, 식당, 술집, 유치원 및 놀이방, 숙박업소, 요양업체 등과 같은 작업장은 지자체의 환경보건부서와 접촉하여 정확한 규제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 HSE와 접촉하는 방법

① 안전보건 문제 신고

② 사고신고센터

③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 요구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질의
  - ⑤ RIDDOR 보고
  - ⑥ 가스 안전 자격 보고
  - ⑦ HSE 사무소
  - ⑧ 법적 조언 불편 제기
  - ⑨ 신고서 또는 지원서 제출
  - ⑩ 언론매체의 연결
  - ⑪ 근무시간 외 접촉
  - ⑫ 이온방사능 작업 신고
-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요구, 신고, 자격증 취득 및 미취득 신고 등에 관해 Local authority 및 HSE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 (5) 작업장 리스크 관리 및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는 작업자 및 주변 사람들을 유해로부터 방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작업장안전보건관리법 1999에서 최소한 조건으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Hazards)의 식별
  - ② 빈도와 강도(Risk)의 결정
  - ③ 위험을 제거하거나, 불가능하면 제어
- 위험관리 단계, 위험성평가 양식 및 사례, 일반적인 작업장 리스크, 세부적 리스크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6) 건설업

- 건물안전법(Building Safety Act)는 HSE를 건물안전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 목 록

① 건설업의 개별 주체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확인

- 소규모 시행자
- 영업 목적 발주자
- 개인 발주자
- 주 도급자
- 주 설계자
- 설계자
- 건설업자
- 작업자

② 건설업 CDM 2015 법

③ 건설업 개별 역할 담당자로서의 의무

④ 안전 위험

- 고소작업, 굴착, 인양, 전기, 화재, 장비, 해체 등

⑤ 질병의 원인들

⑥ 자원

- 가이드스, 사례연구, 감독등록, 포스터, TBM, 비디오 등

- 건설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사고신고(RIDDOR) 법규 안내

- 상해, 질병 및 위험한 사건에 대한 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① 신고해야하는 사고 및 사례

② 신고의무자

③ RIDDOR 신고방법

④ 특정, 신고 가능한 상해

⑤ 위험한 사건

⑥ 신고가능한 직업병

⑦ 발암성 물질 및 생물학적 인자

(8)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및 민법 소개

- 산업안전보건법은 형법, 보상법은 민법이다.
- 산업별 특정 안전보건법규 소개

(9) 석면관련 안내

- 석면의 위험성을 소개하고 석면 작업 자격 및 훈련을 안내하고 있다.

- ① 석면안전 소개
- ② 건물 석면관리 의무
- ③ 석면안전에 관한 작업자 가이드
- ④ 석면업무 지침
- ⑤ 석면의 위치 및 올바른 행동
- ⑥ 허가가 필요한 석면 작업

3)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교육 과정

(1)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교육과정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는 교통사고의 증가, 가로등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경종을 울리고자 1916년 개최된 ‘런던 안전제일(Safety First)위원회’가 발전한 조직이다. 훈련영역은 직업안전(occupational safety), 차량안전(fleet safety), 가정안전(home safety), 놀이안전(play safety), 레저안전(leisure safety) 및 RoSPA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sup>16)</sup>.

16)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56쪽 발췌 인용

직업안전(occupational safety) 분야로는 영국의 안전보건 분야의 안전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고 상담과 심사, 정보보급, 정책영향, 안전보건 사고예방, 지역의 안전그룹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주 즉 경영진의 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RoSPA는 영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안전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며, 다국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실시간 가상 수업(virtual live classroom),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과 사내훈련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sup>17)</sup>.

- 실시간 가상 수업(virtual live classroom): 관리자의 의무, 위험사정, 사고조사, 디스플레이 스크린, 근로자를 위한 IOSH 안전보건, 건설설계관리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건강위험물질관리, 안전보건 대표자과정, 안전관리체계 감사와 심사, IOSH 안전관리와 IOSH 안전작업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수업방식은 대부분 실시간 토의와 사례연구가 포함된 실시간 대화식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온라인 수업(online classroom): 콘텐츠 주문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가 원하는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며, NEBOSH, IOSH의 일부과정을 연계하고 있다.
  - NEBOSH 학위과정, 일반자격과정, 국제자격과정
  - IOSH 안전관리 관리자 과정, 안전관리 보수과정, 근로자 과정, 직업건강과 웰빙관리과정, 2015 건설설계와 관리규정 심화 이해과정
- 대면수업(face-to-face classroom): 영국 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일일 또는 수일의 과정이 있다.
- 사내훈련(in-company training): 여러 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 대상자가 시간과 출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면수

17)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57쪽 발췌 인용

업과정과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2022년 현재 직업안전 분야의 훈련과정은 NEBOSH 과정과 IOSH과정, 업무기반 과정, 정신건강과 안녕 과정, 수작업 취급 과정, 이동보조 과정(가정에서 환자의 이동보조), 기계안전 과정, 위험평가 과정, 역할 및 책임 과정, 전문가 교육 과정, 안전보건심사원 과정 및 응급처치 과정 등이 있다. 가장 인기있는 훈련과정은 NEBOSH 과정, IOSH 과정, 업무기반 과정, 정신건강 및 웰빙 과정, 수작업 취급 과정, 이동보조 과정, 기계안전 과정과 위험평가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sup>18)</sup>.

## (2)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교육과정(Institu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OSH)

영국의 산업안전보건협회(Institu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OSH)는 1945년에 설립된 보건과 안전전문가를 위한 비정부기관으로, 전세계 130개국에 47,500개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협회의 교육은 안전, 보건과 안녕(safety, health and wellbeing)에서 6개의 우선순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웰빙(신체와 정신건강), 직업성 암, 지속 가능성 및 인적 자본, 재활(업무 복귀), 비건강 관련 사망과정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훈련과 기술 과정(training and skills courses)<sup>19)</sup>은 총 38개로, 경영자 프로그램(Executive Program), 관리자 훈련프로그램(Management Training Program), 핵심 기술(Core Skills) 및 전문직 발전 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자과정으로 3개과정이 구성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8) RoSPA. (2022, September 15) Health and safety training courses.

<https://www.rospa.com/safety-training/work>

19) 대부분의 강좌가 OSH 전문가나 실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업과 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 제공

출처: <https://iosh.com/employees/awareness-courses/>

〈표 III-3〉 IOSH 훈련과 기술과정

교육과정	IOSH 자체 과정	맞춤형 과정	CPD 과정	계
경영자 과정	3개	2개	-	5개
관리자 과정	6개	7개	14개	27개
근로자 과정	3개	2개	-	5개
기타	-	1개	-	1개
합계	12개	12개	14개	38개

가) IOSH 안전보건 인식과정(Health and safety awareness courses)

① IOSH 사업주/경영자 및 임원 교육과정

사업주/경영자 및 임원교육(executive education)은 총 3개 과정으로 임원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로 기업지배구조, 기업위험요소, 안전하게 이끌기(leading safely) 과목이 개설되어있다. 각 교육의 개요와 대상, 교육 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20)</sup>.

〈표 III-4〉 IOSH 사업주/경영자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개요	대상	기타
임원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기업지배구조	산업안전보건이 조직의 기존 기업 지배구조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 탐구	회사 이사회 및 기타 관리 기관의 구성원, 비상임이사, 고위 의사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1일, 3시간 30분 워크숍
Corporate Governance	워크숍 내용 Part 1: 훌륭한 거버넌스 원칙의 관련성(국제 표준) Part 2: 원칙을 안전보건에 적용하기 제공자: 5개의 IOH 네트워크(IOSH 승인 기관)에서 제공(21개의 이러닝)		
임원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CEO, 이사회 구성원 등이 조직 거버넌스의	CEO, 이사회 구성원 및 전무이사 (executive	

20)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 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73쪽~77쪽 발췌 인용

교육명	교육개요	대상	기타
기업위험요소 Corporate Risk Essentials	일부로 위험 관리 문화를 이해, 계획 및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고안 기술 제공 ISO 3100 원칙을 사용하여 위험 기반 의사결정을 조직의 거버넌스에 통합하기 위한 방향 제공	director)	
안전하게 이끌기 Leading Safely	생산성 향상, 수익 증대, 기업 평판 향상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목적 직업안전보건(OSH)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OSH 우수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도록 함 주요 내용 리더십 역할에서 안전보건의 의미 리더의 책임과 행동 효과적인 안전보건 리더십의 모습과 이점 제공자: 113개의 IOH 네트워크(IOSH 승인 기관)에서 제공(21개의 이러닝)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후 수강 가능	상급관리자 또는 리더십 역할자	1일 5시간((1시간: 사전 온라인, 4시간 대면 학습)

② IOSH 관리자 교육과정

〈표 Ⅲ-5〉 IOSH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개요	대상	기타
안전하게 관리하기 Managing Safely ®	OSH 비전문가인 관리자가 자신을 직장 안전보건과 안녕의 수호자로서 인식하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과정 학습목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주요 이유를 설명한다. 안전보건 관련된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법이 작업장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라인 관리자	4일 과정 Managing Safely 과정 이수자는 1일의 refresher 과정 수강 가능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명	교육개요	대상	기타
	<p>작업장 위험을 사정, 감소,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작업장 위해요인과 위험, 영향 및 관리방법을 식별한다.                      사고 평가 및 대응 방법을 확인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점 및 특성을 나열한다.                      양호한 안전보건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설명한다.</p> <p>주요내용                      위험평가                      위험관리                      책임 이해                      유해성 이해                      사고 조사                      성과 측정</p> <p>제공자: 1131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61개의 이러닝, 1122개의 대면 교육)</p>		
안전하게 관리하기 재교육과정  Managing Safely® refresher	<p>Plan-Do-Check-Act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둔 Managing Safely® 재교육</p> <p>주요 내용                      Managing Safely® 복습 리더십                      Plan: 안전보건 정책과 내용, 정책전달 방법                      Do: 위험평가 실시 후 결과와 안전보건 계획을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고려                      Check: 자료의 유형, 측정해야 할 사항과 계획의 수행과 작동 확인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                      Act: 학습내용을 작업장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성찰</p> <p>제공자: 243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27개의 이러닝)</p>	Managing Safely 과정 이수 관리자	1일 과정
기업을 위한 환경  Environment for Business	<p>환경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최신 이해와 실용적인 지침 제공</p> <p>주요 내용                      “환경” 용어의 의미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직이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p> <p>제공자: 17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3개의 이러닝)</p>	관리자, 감독자	1일 과정

교육명	교육개요	대상	기타
관리자를 위한 화재안전 Fire Safety for managers	화재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 실제 훈련  주요 내용 사업주의 책임 화재와 화재안전 방법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안전 문화 창조 제공자: 32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3개의 이터닝)	관리자, 감독자	1일 과정
직업건강과 안녕 관리하기 Managing Occupational Health and Wellbeing	건강하고 생산적인 작업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언과 도구를 제공  주요 내용 건강한 회사와 비즈니스에서 작업장 건강과 웰빙관리 이유 건강위험 관리 업무 적합성과 건강상태 변화관리의 중요성 웰빙 프로그램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 제공자: 51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11개의 이터닝)	관리자, 감독자	1일 과정
건설현장 관리자를 위한 안전보건과 환경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for Construction Site Managers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제공  주요 내용 법과 처벌 작업 준비 현장, 근로자, 계약자 관리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영향관리의 중요성 효과적인 건설 설계와 관리에 대한 원칙 주요 문제와 고소작업 관리 현장 건설노동자 복지를 위한 현장 요구사항 제공자: 60개의 IOH 네트워크에서 제공(8개의 이터닝)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자	5일 과정

### (3) 영국안전협의회(BSC)<sup>21)</sup> 교육과정

영국안전협의회(British Safety Council, BSC)<sup>22)</sup>는 1957년에 설립된 자선단체이며 전세계 60여개국에 회원(회원은 모든 규모의 조직 가능)이 있다. 교육은 BSC 자체 교육과정과 BSC 인증 협력사 연계교육과정이 있으며 일부 e-learning 프로그램은 Enterprise e-learning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48개로 30개의 BSC 자체교육과정(인증자격과정 9개, 일반과정 21개)과 BCS로부터 인증을 받은 파트너사와 연계한 교육과정(7개) 및 기타 파트너사 교육을 연계한 과정(11개)이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관리자 과정과 근로자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의 관리자과정은 관리자 인증과정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 (4) RRC International 교육과정

RRC International은 1928년에 설립되어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자격 교육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관으로 영국 외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Rapid Results College Ltd로 알려져 있다. 이 기관은 NEBOSH, IOSH, CITB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Board) 등으로부터 기관인증을 받아 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RRC International 교육과정은 건설유지관리시에 도급업자에 관한 계약 관리 과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부분 영국 외에 아시아, 유럽 중 연관되는 기관인증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4)</sup>.

21) British Safety Council의 국문명칭은 영국안전협의회, 영국안전협회, 영국안전위원회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음. <https://www.britsafe.org/>

22) British Safety Council. <https://www.britsafe.org/>

23)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84쪽 발췌 인용

24)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

#### (5) 산업안전보건청(HSE) 교육과정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하여 대면 과정(분야, 지역별), 온라인 과정, 사업장방문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주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6) 안전보건훈련기관 사이트

- [www.learndirect.co.uk](http://www.learndirect.co.uk) will help you find health and safety training courses.
- [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http://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can help you find a training course inScotland.
- [www.gov.uk](http://www.gov.uk).
- [www.ukces.org.uk](http://www.ukces.org.uk)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UKCES).

### 3. 미국

#### 1)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법적근거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of 1970) 제21조(훈련 및 직원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I-6〉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원문	<p>SEC. 21. Training and Employee Education</p> <p>(c)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hall --</p> <p>(1)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program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recognition, avoidance, and prevention of unsafe or unhealthful working conditions in employments covered by this Act, and</p> <p>(2) consult with and advise employers and employee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employers and employees as to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p>
번역	<p>제21조 훈련 및 직원 교육</p> <p>③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p> <p>가. 이 법이 적용되는 직업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 조건을 인식, 회피 및 예방하기 위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p> <p>나. 직업적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에 관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및 조언</p>

미국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사업주에게 일임하지 않고 정부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안전보건 상 위험한 작업 조건을 인식·회피·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상태를 감독하는 책무를 갖는다.

〈표 Ⅲ-7〉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원문	<p>§ 1926.21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p> <p>(a) General requirements. The Secretary shall, pursuant to section 107(f) of the Act, establish and supervise program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recognition, avoidance and prevention of unsafe conditions in employments covered by the act.</p> <p>(b) Employer responsibility.</p> <p>(1) The employer should avail himself of the safety and health training programs the Secretary provides.</p> <p>(2) The employer shall instruct each employee in the recognition and avoidance of unsafe conditions and the regulations applicable to his work environment to control or eliminate any hazards or other exposure to illness or injury.</p> <p>- 종 략 -</p>
번역	<p>§ 1926.21조 안전 훈련 및 교육.</p> <p>① 일반 요건. 장관은 법 제107조(f)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직업에서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인식, 회피 및 예방하기 위한 고용주 및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고용주의 책임.</p> <p>가. 고용주는 장관이 제공하는 안전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p> <p>나.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과, 작업 환경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하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이나 기타 노출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종 략 -</p>

OSHA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법 준수 지원(Compliance assistance),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법준수지원전문가(Compliance Assistance Specialist)가 무료로 사업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제공한다.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제공하는 안전보건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OSHA는 이에 따른 강제 기준(enforcing standard)을 만들고, 훈련(training), 파견교육(Outreach), 교육 및 지원(education and assistance)을 제공하고 있다.

OSHA는 다음과 같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Brochures/booklets;
- Fact Sheets;• Guidance documents that provide detailed examinations of specific safety and health issues;
- Online Safety and Health Topics pages;
- Posters;
- Small, laminated QuickCards™ that provide brie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nd
- QuickTakes, OSHA's free, twice-monthly online newsletter with the latest news about OSHA initiatives and products to assist employers and workers in finding and preventing workplace hazards. To sign up for QuickTakes, visit

2) OTI 교육 센터(OSHA Training Institute Education Centers)

OTI 교육 센터<sup>25)</sup>는 OSHA를 대신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감독자 및 고용주에게 산업 안전 보건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OSHA가 승인한 비영리 기관의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표준별 교육 요구조건(Training Requirements in OSHA Standards)를 규정하고 있고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Outreach Trainer 양성을 위한 교육이 많으며, 이를 이수한 자들이 위험작업에 종사하거나 근로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용주도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작업내용별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직무수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인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용주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소속 직원에게 이수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표 III-8〉 미국 OTI 교육 센터 개설 교과목<sup>26)</sup>

강의 번호	과 목 명
산업안전보건청 #500	건설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에 대한 트레이너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501	일반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에 대한 트레이너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502	건설 산업 아웃리치 트레이너를 위한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청 #503	일반 산업 아웃리치 트레이너를 위한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 #510	건설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

25) <http://www.osha.gov/dte/edcenters/background.html>

26) [https://www.osha.gov/otiec/courses/title\\_description](https://www.osha.gov/otiec/courses/title_description)

산업안전보건법 #511	일반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521	산업 위생에 대한 OSHA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2015	위험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2045	기계 및 기계 보호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2055	건설용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2225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2255	인간공학의 원칙(이전 OSHA #2250)
산업안전보건법 #2264	허가가 필요한 밀폐 공간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2455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 #3015	굴착, 트렌칭 및 토양 역학
산업안전보건법 #3085	스캐폴딩의 원리
산업안전보건법 #3095	전기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3115	낙하 보호(이전 OSHA #3110 낙하 방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3365	헬스케어
산업안전보건법 #5029	건설 산업 아웃리치 트레이너를 위한 Cal/OSHA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 #5039	일반 산업 아웃리치 트레이너를 위한 Cal/OSHA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 #5109	건설 산업을 위한 Cal/OSHA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5119	일반 산업을 위한 Cal/OSHA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5400	해양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에 대한 트레이너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5402	해양 산업 트레이너 업데이트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5410	해양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5600	재난 현장 근로자 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5602	재난 현장 근로자 교육자 과정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 #5810	육상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위험 인식 및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6005	기타 연방 기관을 위한 부수적 의무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6015	기타 연방 기관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과정
산업안전보건법 #7000	안전한 환자 취급을 위한 OSHA 교육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7005	창고 및 보관
산업안전보건법 #7100	기계 및 기계 보호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7105	대피 및 비상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7110	안전한 불팅: 원칙과 관행

산업안전보건청 #7115 잠금/태그아웃
산업안전보건청 #7120 가연성 분진 위험 소개
산업안전보건청 #7200 혈액매개 병원균 노출 관리
산업안전보건청 #7205 건강 위험 인식
산업안전보건청 #7210 전염병 질병 대비
산업안전보건청 #7215 건설, 해양 및 일반 산업의 실리카
산업안전보건청 #7225 보다 안전한 화학 물질로의 전환
산업안전보건청 #7230 직장에서의 감염병 대비
산업안전보건청 #7235 호흡 보호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청 #7300 OSHA의 허가 필요 밀폐 공간 표준 이해
산업안전보건청 #7400 직업적 소음 노출 위험
산업안전보건청 #7405 건설 산업을 위한 낙하 위험 인식
산업안전보건청 #7410 굴착/도랑 파기 작업 관리
산업안전보건청 #7415 OSHA 건설 산업 요구 사항: 주요 위험 및 예방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7500 안전보건관리 소개
산업안전보건청 #7505 사고 조사 소개
산업안전보건청 #7510 소규모 기업을 위한 OSHA 소개
산업안전보건청 #7515 작업 위험 분석(JHA)
산업안전보건청 #7845 기록 보관 규칙 세미나

〈표 Ⅲ-9〉 미국 OTI 교육 센터 개설 교과목의 교육과정 설명 예<sup>27)</sup>

OSHA #501 - 일반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에 대한 교육자 과정
<p>이 과정은 직원 및 기타 관심 그룹에 10시간 및 30시간 일반 산업 안전 및 건강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OSHA 일반 산업 표준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10시간 및 30시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주제와 가장 위험한 주제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효과적인 교육 방식과 시각 보조 자료 및 핸드아웃 사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OSHA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의 트레이너가 되어 10시간 및 30시간 일반 산업 아웃리치 수업을 진행하고 과정 완료 후 참가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OSHA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에 공인 트레이너로 참</p>

27) [https://www.osha.gov/otiec/courses/title\\_description](https://www.osha.gov/otiec/courses/title_description)

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원으로 지정된 OSHA 일반 산업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과정이 끝나면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최소 학생 접촉 시간: 26**

필수 조건: 학생은 OSHA #511 일반 산업을 위한 직업 안전 및 건강 표준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일반 산업에서 5년(5)의 안전 및 건강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 안전 및 건강 학위, 인증 안전 전문가(CSP) 또는 인증 산업 위생사(CIH) 지정은 2년(2)의 업무 관련 경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을 받으려는 OSHA 교육 기관 교육 센터에서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OSHA 일반 산업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강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년(4)에 한 번 OSHA #503 일반 산업 아웃리치 강사를 위한 업데이트에 참석해야 합니다.

OSHA #5109 - 건설 산업을 위한 Cal/OSHA 표준

이 과정은 Cal/OSHA Title 8 건설 표준 및 정책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직원과 그룹에 10시간 및 30시간 Cal/OSHA 건설 안전 및 건강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과정 주제에는 건설 산업 표준 및 규정 준수, 10시간 및 30시간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교육 주제와 건설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주제,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Cal/OSHA 교육 지침이 포함됩니다. 과정을 완료하면 학생들은 OSHA와 Cal/OSHA 표준, 정책 및 절차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Cal/OSHA 건설 표준, 정책 및 절차를 찾아 결정하고, Cal/OSHA 건설 표준 및 규정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안전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학생 접촉 시간: 26**

필수 조건: Cal/OSHA 건설 공인 트레이너 지정을 받으려는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너는 OSHA 건설 표준에 대한 OSHA #500 트레이너 과정 또는 건설 산업 아웃리치 트레이너를 위한 OSHA #502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건설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지위를 확인하고 1년(1)의 Cal/OSHA 건설 안전 경험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아웃리치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너 카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4. 독일

### 1)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법적근거

독일은 18C 후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건강 및 위생의 치안을 주요대상으로 보고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의사경찰(醫師警察, Medical Police)를 두어 사회환경 및 보건부분의 보호를 시작으로 건강과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 독일은 기본법인 산안법이 있고 필요에 따른 작업장 관련 안전보건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독일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은 있지만 시행규칙 등은 없고, 재해예방규칙 BGV(Berufsgenossenschaftliche Vorschrift)으로 대체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병렬적 관계이다.

즉 우리나라는 산안법 속에 기초적인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지만<sup>28)</sup> 독일은 각각의 시행령들과 시행규칙의 법률체계가 수평적인 관계이므로 독일 법체계는 정부(연방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DGUV: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산재예방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sup>29)</sup>.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12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장 근로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도입한 경우 교

28) 한국은 법률, 규칙, 시행령, 명령, 기준, 고시를 두어 법률집행시에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시행규칙(노동부장관령)의 형태로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 또는 필요에 따라 지침등이 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산안법 속에 기초적인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

29) 독일은 위반하게 되면 사용자도 처벌한다(SGB 제17조 위반시 규정), 또한 공장령(Gewerbliche Aufsicht 제139b, 감독관청규정)에도 처벌 규정이 있음. 그러나 처벌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사용자인 사측에서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즉 기준준수에 관한 근거자료, 교육자료등) 노동관청의 감독기능과 제재조치가 있다.(SGB 제50조 처벌 기준)

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과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조치나 설비,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최초 작업 전이나 작업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sup>30)</sup>.

대부분의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실시하는 규정으로 되어있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교육

- ①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시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 수행 장소 또는 업무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채용 업무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능력 및 경험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기타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법전(SGB : Sozialgesetzbuch)에서는 산재보험조합(DGUV)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GB VII 제23조에 따르면, DGUV에서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간 중 사업주가 정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30)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 작동성 제고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134쪽 발췌 인용

제23조 양성훈련과 심화훈련

- ①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사업장에서 노동재해, 직업병과 직무 관련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과 응급조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성훈련과 심화훈련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사업장 의사, 안전기술자와 기타 노동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업장 의사와 노동안전 전문 인력으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양성 또는 심화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산재보험운영기관들은 양성훈련 및 심화훈련 조치들의 직접적인 비용과 이에 필요한 교통비와 숙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해 시행되는 응급조치 요원을 위한 양성훈련과 심화훈련의 경우에는 재해보험 운영기관이 교육비만 부담해야 한다.
- ③ 교육과정 참가로 인하여 결근이 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계속지불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안전요원과 노동안전 전문인력 교육인 경우에는 노동안전을 관할하는 주 관청이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독일은 연방 및 주정부의 교육담당부서에서 교육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적인 교육은 산재보험조합이 수행한다. 산업재해 예방·보상·재활업무를 통합 수행을 위하여 DGUV 교육센터(IAG: Institut für Arbeit und Gesundheit)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실습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AG에서의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안전보건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 교육은 산업별 BG(Berufsgenossenschaft)에서 수행하고 BG에서의 안전감독관, 안전보건전문가, 주정부 안전담당자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산재보험조합 산하 교육센터(IAG) 안전보건 교육과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31)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 작동성 제고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135~157쪽 발췌 인용

(1) IAG의 교육과정

<p><b>&lt; 주요 특징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교육과정은 산재보험조합 회원사에게 무료 제공</li> <li>•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과정에 세미나 형식의 교육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이 필요한 경우 교육센터 보유 실습장비(18개)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실시</li> </ul> </li> <li>• 실습형 교육은 해당분야 기능장 수준의 전문가가 교육생과 쉰 과정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운영</li> </ul>
<p><b>&lt; 2017년 IAG 교육과정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전문가 자격과정(61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자 교육과정(18개 과정)</li> <li>- 감독자 계속교육과정(34개 과정)</li> <li>-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IFA) 교육(9개 과정)</li> </ul> </li> <li>• 산업안전분야 석사학위 과정(1개 과정)</li> <li>• 작업장 안전을 위한 경력근로자 자격과정(10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안전을 위한 과정(5개 과정)</li> <li>-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전문과정(5개 과정)</li> </ul> </li> <li>• 강사 자격과정(38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 기술: (4개 과정)</li> <li>- 강사 기술: 기초과정(8개 과정)</li> <li>- 강사 기술: 고급과정(12개 과정)</li> <li>- 개별상황 강사과정(3개 과정)</li> <li>- 강사 인증 자격 대비 과정(2개 과정)</li> <li>- 학습 가이드 과정(1개 과정)</li> <li>- 강사 교습, 인턴 및 협동 교육과정(6개 과정)</li> <li>- 고급 세미나 코칭 과정(2개 과정)</li> </ul> </li> <li>• 예방 전문분야 과정(32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및 전문가 과정(5개 과정)</li> <li>- 법적 요구사항 및 작업환경 평가 과정(9개 과정)</li> <li>- 사업장 내 운송 및 도로 안전과정(1개 과정)</li> <li>- 건강관리, 건강증진 과정(14개 과정)</li> <li>- 인구통계학(고령) 변화 과정(3개 과정)</li> </ul> </li> </ul>

IAG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예방전문가 자격과정, 산업안전분야 석사학위 과정, 작업장 안전을 위한 경력근로자 자격과정, 강사 자격과정, 예방 전문분야 과정 등 총 14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 전문분야 과정(32개 과정)중에서 임원 및 전문가 과정으로 5개 과정이 운영되어 경영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0〉 독일 IAG의 임원/전문가 교육과정<sup>32)</sup>

순번	과정명	비용	기타
1	화재 예방 전문가 훈련		
2	유해 물질 전문가 훈련		
3	크레인 사업자 트레이너 자격		
4	심리적 응급 처치 : 개별 위기 개입 (CISM 인증서 기본 과정)		
5	심리적 응급 처치 : 그룹에 대한 위기 개입 (고급 과정 CISM 증명서)		

(2) IAG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원칙

- ① 관련 연구결과를 교육내용에 반영
- ② 의사소통과 컨설팅 능력의 배양
- ③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안전보건사항을 반영
- ④ 과학적인 네트워크와 협력
- ⑤ OSH 지식을 사업장에 실질적인 반영
- ⑥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 ⑦ 교육방법은 세미나형식과 실습형 교육을 병행

32)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동성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143쪽 발췌 인용

## 5. 일본

### 1)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법적근거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19조의2(안전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I-11〉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상 안전보건교육 조문

원문	<p>(安全管理者等に対する教育等)</p> <p>第十九条の二 事業者は、事業場における安全衛生の水準の向上を図るため、安全管理者、衛生管理者、安全衛生推進者、衛生推進者その他労働災害の防止のための業務に従事する者に対し、これらの者が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能力の向上を図るための教育、講習等を行い、又はこれらを受ける機会を与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教育、講習等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p> <p>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昭六三法三七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p>
번역	<p>제19조의2(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 위생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 관리자, 위생 관리자, 안전 위생 추진자, 위생 추진자 그 외 노동 재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강습 등을 실시하거나 이들을 받을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교육, 강습등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쇼63법 37·추가, 헤이이치 1법 160·일부 개정)</p>
원문	<p>(安全衛生教育)</p>

	<p>第六十条の二 事業者は、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その事業場における安全衛生の水準の向上を図るため、危険又は有害な業務に現に就いている者に対し、その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を行う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教育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p> <p>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번역</p>	<p>(안전위생교육)</p> <p>제60조의2 사업자는, 전2조에 정하는 것 외에, 그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 위생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2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교육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p> <p>3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안전위생법 상의 사업주 교육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노동안전위생법 제60조2의 3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2016년 10월 12일 “안전 보건 교육 및 연수의 추진에 대해서 (安全衛生教育及び研修の推進について)”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지침의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는 노동자의 취업에 필요한 안전 위생에 관한 지식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안전 위생 관리 체제의 확립, 노동 안전 위생 법령의 준수의 철저, 위험 유해성의 조사, 자주적인 안전 위생 활동, 쾌적한 직장 형성 등의 시책과 함께 산업 재해의 방지의 실효를 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책이다. 또한,

교육 등은 기업은 물론 사회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의 보급·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이며,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후생 노동성에서는, 노동 안전 위생법에 기초한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교육, 직장 등 교육, 위험 유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전 위생 업무 종사자에 대한 능력 향상 교육 및 건강 교육은 물론, 산업 재해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법정 외의 것이어도 커리큘럼 등을 정해, 기업의 자주적인 안전 위생 활동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다.”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 대상자는 작업자, 안전 위생에 관련된 관리자, 경영 톱 등, 안전 위생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경영 톱에서 (1) 사업자, (2) 건강 및 안전 관리자, (3)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 및 안전 위생 책임자, (4)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침 상 사업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또한 지침의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등의 대상자·종류·실시기 및 내용 중 사업자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대상자	종류	시기	내용	비고
사업자	안전위생 세미나	수시	산업 재해의 현상과 방지 대책, 안전 위생과 기업 경영, 산업 안전 위생 관계 법령 등에 관한 사항	

## 2)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경영수뇌부를 위한 안전위생세미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의 경영수뇌부의 교육은 후생노동성의 행정지침인 “안전 보건 교육 및 연수의 추진에 대해서”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단체중앙회, 상공회의소 연학회 등의

33) www.google.co.kr/ 접속일자. 2024.6.3

경영자단체 및 산업재해방지단체와 연락을 취하여 종업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위생교육을 행하고 있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안전위생센터에서 하고 있다. 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또한 교육 수강은 1회의 세미나의 대상 인원은 50인 이내로 하고 당해 세미나의 강사는 산업안전컨설턴트·산업위생컨설턴트, 안전관리사·위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교재는 지구 안전위생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sup>34)</sup>.

**<표 Ⅲ-12> 안전위생교육지침에 의한 교육 과목, 범위 및 시간**

과목명	범위	시간
안전위생 상의 제문제와 대책의 방향	1. 산업재해의 현황 2. 산업재해 발생 상황으로부터 본 문제점 3. 산업재해방지계획 4. 국가 등의 산업재해방지대책	1.5시간
기업경영과 안전위생	1. 기업경영과 안전위생의 관계 2. 산업재해 비용 기타	1.5시간
시간문제	건강관리, 위험성 평가 해설	2시간
사업장에서의 안전위생관리의 추진 방법	1. 안전위생관리의 기본방침 2. 안전위생관리계획의 수립방법과 실행방법 3. 안전위생활동을 현자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 4. 질의응답	4시간

34) www.google.co.kr/ 접속일자. 2024.6.3

**安全衛生トップセミナー**  
2024 9/11(水)→12(木) 新横浜プリンスホテル  
企業を支える安全衛生に強い人づくり

**1日目 令和6年 9月11日(水)**

- 12:30~13:00 受付
- 13:00~13:05 オリエンテーション
- 13:05~13:20 開講挨拶 中央労働災害防止協会 理事長 竹経 徹
- 13:20~14:50 (90分) **講演① 『企業の安全管理事故から学ぶリスクマネジメント』** 横浜国立大学 名誉教授 総合学域高等研究院 上場特別教授 三宅 洋巳
- 14:50~15:00 休憩
- 15:00~16:00 (60分) **情報交流① 『安全衛生管理活動の現状と課題』**
- 16:00~16:10 休憩
- 16:10~17:40 (90分) **講演② 『人を育て組織を活かすトップの上司力』** 株式会社EtenWorks 社会取締役 青山学院大学 兼任講師 前川 孝雄
- 17:40~17:50 休憩
- 17:50~18:20 (30分) **労働安全衛生行政の動向** 厚生労働省 労働基準局 安全衛生部
- 18:20~18:50 チェクイン・会場移動
- 18:50~20:10 全体交流懇話会

**2日目 令和6年 9月12日(木)**

- 7:00~ 朝食
- 9:00~ 9:30 (30分) **講演③ 『安全行動調査によるヒューマンエラー傾向の見える化』** 中央労働災害防止協会 安全衛生管理室長 技術支援部
- 9:30~ 9:40 休憩
- 9:40~10:40 (60分) **事例紹介 『デンソーにおける安全の原点と半世紀に及ぶ安全活動の積み上げ』** 株式会社デンソー 安全衛生推進部 高田 謙
- 10:40~10:50 休憩
- 10:50~12:10 (80分) **情報交流② 『グループ対話』**
- 12:10~13:10 昼食 休憩
- 13:10~14:40 (90分) **講演④ 『人口減少時代の安全マネジメントと人材育成』** 吉城学院女子大学 社会学部 教授 大橋 徹
- 14:40~ 閉講

主催：中央労働災害防止協会  
https://www.jisha.or.jp/

[그림 III-1] 안전위생 톱의 세미나

\*file:///C:/Users/admin/Desktop/y1200\_top\_2024.pdf(35)

### 3) 노동안전위생법상의 형벌규정

일본의 형벌규정은 노동안전위생법 제12장에서 노동안전위생의 위반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총 7가지의 형벌규정을 정하고 있다<sup>35)</sup>.

- ① 7년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하의 징역,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5십만엔 이하의 벌금, 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 ⑥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십만엔 이하의 벌금, ⑦ 5십만엔 이하의 벌금 등이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 제99조의2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총괄안전위생관리자 등 산업재해방지업무중

35) www.google.co.kr/ 접속일자. 2024.6.3

36) 박민수외5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현장 작성 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132쪽 발췌 인용

사자에게 지정교육관이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강습의 지시)

제99조의2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산업재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괄안전위생관리자,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총괄안전위생책임자 등 산업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음 항에서 “산업재해방지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강습을 받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받은 사업자는 산업재해방지업무종사자에게 같은 항의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강습의 과목 등 제1항의 강습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더불어 노동안전위생규칙 제40조의3에서 지정 사업장 등의 안전 위생교육 계획 미 실시결과보고에 따라 지정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안전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동안 실시한 결과를 관할 노동감독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근로자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위생관리가 비교적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위생규칙**

(지정 사업장 등의 안전 위생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 보고)

제40조의3 ① 사업주는 지정사업장 또는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산재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업장은 법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실시한 법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양식 제4호의5에 따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 스웨덴

### 1)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법적근거

스웨덴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으로 “직장 안전보건에 관한 유럽 지침(European directive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근거하여 스웨덴의 “작업환경법(Arbetsmiljölög)”을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작업환경법은 1989년6월12일에 채택된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 기본 지침(The OSH Framework Directive)”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에 열거된 일반 예방원칙 및 고용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sup>37)</sup>.

〈일반 예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 회피</li> <li>• 위험 평가</li> <li>• 위험의 근원을 파악하여 대처하기</li> <li>• 작업을 개인에게 맞게 조정</li> <li>•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li> <li>•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 또는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li> <li>• 일관된 전반적인 예방 정책 개발</li> <li>• 집단적 보호 조치 우선(개별적 보호 조치보다)</li> <li>•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기</li> </ul>

37) <https://osha.europa.eu/en/legislation/directives/the-osh-framework-directive/1>

〈고용주의 의무〉

- 작업 장비 선택,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제, 작업장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모든 위험을 평가한다.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모든 계층적 수준의 기업 및/또는 시설의 모든 활동에 통합되는 조치를 구현한다.
- 그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길 때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근로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 새로운 기술 도입에 관해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직업적 위험의 보호 및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한다.
-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응급처치, 소화, 근로자 대피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산업재해 발생 목록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입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 당국에 제출한다.
-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며, 직장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근로자가 적절한 안전 및 건강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2) 유럽연합의 안전보건교육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제도<sup>38)</sup>는 근로자를 교육할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교육받을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교육은 특정 작업장 또는 직무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의 형태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며 교육의 시기는

38) <https://eur-lex.europa.eu/eli/dir/1989/391>,

COUNCIL DIRECTIVE(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89/391/EEC)” Article 12 Training of workers

국내 규정과 유사하게

- 채용시
- 전근 또는 직장 변경시
- 새로운 작업장비 도입 또는 장비변경시
- 새로운 기술 동입시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은 새로운 위험이나 변경된 위험을 고려하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교육하고, 교육주기는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수행하라고 하여 국내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외에도 자신의 사업체 또는 시설에서 작업하는 외부 사업체 또는 시설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체 또는 시설에서 활동하는 동안 건강 및 안전 위험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내와 유사하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근로자 대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내와 유사한 관리책임자등의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 3) 스웨덴의 안전보건 전문가양성 교육<sup>39)</sup>

2007년까지 스웨덴 국립 근로 생활 연구소(NIWL; Arbetslivsinstitutet)는 산업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다. 그 이후 연구소가 문을 닫고, 전문 교육은 대학과 단과대학으로 이전되었다. 그 목적은 산업 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위함이다. 그 결과 룬드, 스톡홀름, 우메오, 외레브로에 있는 대학과 단과대학은 산업 건강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산업 건강 교육

39) <https://oshwiki.osha.europa.eu/en/themes/osh-system-national-level-sweden>

은 고급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석사 수준의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다.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안전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환경법”은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없지만,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업무 환경 관리</li> <li>• 위험 평가 및 관리</li> <li>• 체계적인 업무 환경 관리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담당하는가?</li> <li>• 직장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문제</li> </ul>

다양한 OSH 주제에 대한 능숙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 자료와 여러 가지 고급과정이 있다. 스웨덴 OSH 분야의 여러 기관에서 안전 및 건강 주제에 대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OSH 분야 인식 제고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13〉 스웨덴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스웨덴 작업 환경 협회 (Arbetsmiljö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환경 문제에 대한 센터인 비영리 조직</li> <li>• 안전한 작업 조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안전 정기 간행물 Du&amp;Jobbet(당신과 당신의 작업)과 기타 자료를 발행</li> <li>• 경고 표지판과 포스터 등을 배포</li> </ul>
중앙 정부 사회적 파트너 협의회(Partsråd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작업 방법 및 새로운 파트너십 형태를 통해 국가, 정부, 직장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기구</li> <li>• 컨퍼런스,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서적, 보고</li> </ul>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p>서, 정보 및 지침 자료와 저널 "utveckla.nu"를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주와 노조가 합의한 지역 직장에서 시작 및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li> </ul>
BPS (Branschföreningen för personlig skyddsutrust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보호 장비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협회</li> <li>업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국 및 사용자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표</li> <li>직장에서의 사고 및 부상 예방을 위한 승인된 제품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여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표준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정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함</li> </ul>
직업 및 환경 건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톡홀름 공중보건 센터 및 스톡홀름 주 의회 산하 기관</li> <li>과학적으로 직장 관련 건강 문제를 기록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직장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함</li> </ul>
Sveriges Företagshäl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건강 관리 제공자들의 독립적인 비정부 협회</li> <li>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교육, 자문 활동, 품질 보증 및 정보를 제공</li> </ul>
스웨덴 ESF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사회 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li> <li>위원회의 목적은 직장 생활에서 개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것</li> </ul>
스웨덴 직업 안전 보건 협회 (FTF, Arbetsmilj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 환경을 주요 목표로 기술-인간-환경 간 협력을 포괄하는 활동을 수행</li> <li>협회 회원은 기술 작업 및 외부 환경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li> </ul>

스웨덴은 특별히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은 찾을 수 없었으며, 안전보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각 기관별로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7. 소결

외국(영국, 일본, 독일, 미국)의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법률제도와 현재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중심으로 찾아본 결과 교육제도의 강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처벌 규정은 일부 과태료부과로 가능하지만 사업주교육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률 속에 근로자가 수강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종류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해야 하는 내용만 형식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교육이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업주 교육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은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있어 사업주 교육도 강제적으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세미나 형식, 또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 교육은 법률제도나 인식 전환에 관한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적인 측면은 근로자 중심의 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두어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전보건교육의 특징은 민간교육기관이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설되므로 수요가 없으면 교육과정의 개발이 어려워 교육 콘텐츠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보다 사업주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교육주제를 각 산업분야별로 필

요한 경영자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표 III-14〉 국내·외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 비교

구분	한국	영국	일본	독일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안전관리규정 제7조 등	노동안전위생법 제60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사회법전 VII
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망케 한 자	경영자	사업자	예방전문가 과정
교육 종류	- 중대재해시 수강명령제도	경영자과정 (IOSH 사업주 및 경영자, 임원)	- 안전위생세미나 중대재해방지협회 (경영수뇌부세미나)	- IAG예방 전문분야 과정(임원 및 전문가과정)
교육 내용	중대재해발생시 수강명령	- 산업안전보건이 조직의 기존 기업 지배구조 CEO 위험관리문화	- 산업 재해의 현상과 방지 대책, 안전 위생과 기업 경영, 산업 안전 위생 관계 법령	전문가 훈련 및 그룹 위험위기
교육 방법	집체교육	세미나 위주 온라인	세미나 위주	세미나 위주 집체교육
교육 시간	200시간 이내	세미나 위주 (3.5시간) 온라인 (5시간)	1.5시간 ~2시간	1.5시간

## IV.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설계(안)





## IV.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설계(안)

### 1.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기가 있었다.

사업주 교육제도를 신설(1990.1.13.)할 당시에는 관리책임자등의 직무교육 대상자 중에 포함하였고, 예방교육과 별칙교육을 병행하여 규정하였으나, 교육기관 등 교육시장 조건 미성숙, 하위법령체계 미구축,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으로 예방교육을 삭제(1994.3.29.)하고 별칙교육만 존치하였으나 기업규제완화법의 교육면제 조문 신설(1997.8.3.)에 따라 법령은 존재하였으나 시행을 정지하였다가 전면 폐지(2007.7.27.)하였다.

사업주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어 일부 업종 및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제도를 부활(2013.6.4.)하고 자율제로 운영하되 이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인하정책을 도입하였고, 산안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사업주 별칙교육을 부활하였다.

사업주 대상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방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사업주 교육 실효성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산재발생현황, 교육제도의 변천 과정, 관계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외국사례 조사, 국내 안전보건교육 여건 조사 등을 수행하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설계(안)은 교육대상 사업장,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형태, 교육내용, 교육강사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교육제도 정착을 위한 법규 개정방안과 연구과정에서 얻은 교육제도 관련 개선(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필요성

### 1) 재해현황 분석을 통한 타당성

#### (1) 사업장 종류별, 규모별 분포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수는 2,976천 개 사업장이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173천 명이였다.

사업의 종류별 사업장수의 분포는 기타의 사업이 전 산업의 66.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13.8%), 건설업(13.3%), 운수창고통신업(3.3%) 순이었으며, 업종별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사업장수의 분포 순위와 유사하였다.

사업의 규모별 사업장수의 분포는 5인 미만이 전체의 74.8%(근로자는 17.0%), 5~50인 미만이 23.5%(근로자수는 42.8%), 50인 이상은 1.7%(근로자수는 40.2%)이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70만 개 사업장이나 되고 있다. 이 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이고, 안전보건 관련 리더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2) 사업장 종류별, 규모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사업장의 규모별 재해발생 현황은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매우 높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업장 100개당 발생하는 재해자수는 오히려 급격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수는 전체 평균 4.39명이고, 제조업은 7.69명, 건설업은 7.88명이였다<sup>40)</sup>. 이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도 경미한 재해

40) 고용노동부의 “2022 산업재해현황 분석(2023.12.)”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 통계임

가 단 1건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결과이다.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만인율은 매우 높지만 사업장 1,000개당 사망자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매우 낮게 나타난다. 사업장 1,000개당 사망자수는 전체 평균 0.75명이고, 제조업은 1.23명, 건설업은 1.36명이었다. 이러한 통계 값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1,00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때 1건 정도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사고예방은 근로자의 몫으로 본인이 주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와 같은 경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 (3) 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부담하여야 할 업무의 과다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의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주가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할 내용 및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소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라는 것이 법령 제정 취지이다.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한 것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 이상이면 선임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그 이하인 경우는 선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련 법령, 안전보건정책, 자율 안전보건관리 활동 등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역량을 갖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리더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자가 부재하게 되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

산재발생은 재해자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행자의 잘못된 결과가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안전하게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비계붕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재해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사업장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 유리조각 또는 모난 자갈들이 널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 다친 때에 어린이가 부주의하여 넘어졌으니 어린이의 잘못인가 아니면 놀이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인가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놀이터는 조금은 자갈이 있더라도 놀이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거의 완벽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인력 등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사용자 또는 관계자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최적의 합의점을 결정하는 체계구축, 놀이시설의 정기적 점검,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지원 등은 놀이시설 관계자보다 상위 지위자 또는 제3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이며, 쾌적한 작업환경의 정도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나 해태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억울한 재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최소한 방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모르는 자는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는 산업재해를 포함한다.

## 2)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필요성

### (1) 설문조사 결과의 고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자는 사업주가 가장 우선이며, 다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의견수렴,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사업주가 주로 이행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실질적 이행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거쳐 담당직원으로 전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2.3%가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에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 자료 및 정보 습득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았다.

산재발생 주된 원인에 대한 설문에도 응답자의 77.0%가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다음이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58.0%)’이라 답하였다. 이는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의식 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설문결과이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조차 사업주의 몫이라 한다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계도 할 사업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교육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벌칙교육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정비하는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2) 전문가의 의견

반드시 사업주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무제 또는 자율제를 떠나서 사업장의 경영활동의 최종 결정권자인 사업주를 교육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는 것에 모든 전문가가 공

감하였다.

안전보건에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때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으로 얻은 지식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인식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사업주 교육은 반드시 사업주가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도 좋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다만, 그러한 때에 대부분 본인이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하위 직원에게 교육 이수를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 (3)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예방교육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업무를 전문분야별 분담하는 자를 둔 경우이므로 이들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그러하지 않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열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는 관계 법령,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정책, 사고사례 등을 습득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리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주 교육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3) 사업주 교육제도의 역사를 통한 필요성

#### (1) 예방교육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1981.12.31.)한 이래 약 10년이 경과 한 후 전부개정(1990.1.13.)을 통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직무교육에 포함하였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 것은 아니고, 장관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업주교육을 도입한 이유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와 직결하고, 사업주 의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사회적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업주 교육의 시행에 있어 교육기관의 기반조성이 미흡하고, 국가 외환위기사태 등으로 사업주 교육제도는 일시 정지 후 폐기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의 미성숙 영향도 있었으나 사업장의 지나친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이 더 큰 이유이었다.

사업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주조차도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여건 마련이 중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규제완화에 대한 주장에 앞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고, 단 한 건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업의 도산 또는 치명적 경영 위기에 이를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안정적 기업 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한 현실에는 사업주의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업주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를 통하여 사업주의 예방교육을 정착시킨다면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사업주 교육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사업주 예방교육제도가 부활하긴 하였으나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일부 업종에 국한한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율 인하가 실질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사업주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교육 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형태 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 4) 외국 사례를 통한 필요성

### (1) 사업주 교육의 규정

여러 국가들의 안전보건교육제도를 고찰한 결과 사업주를 교육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정책적으로 사업주 교육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의무교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사업주 교육의 사례

독일은 BG 등에서 사업주 대상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장 평가를 통해 독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에도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은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국내 안전보건교육 시장의 여건

#### 1) 사업장의 현황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종류별, 규모별 운영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였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에 대한 요구도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66.3%)과 의무교육을 원하는 응답자(55.0%)가 다수이기 는 하나, 종래 사업주의 예방교육을 도입하였다가 폐기된 사례를 주의깊게 살 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교육기관 등록 현황과 사업주 교육 대상자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1>은 사업장 종류별, 규모별 사업장수, 근로자수, 요양재해자수, 사망자수 등의 현황이다.

〈표 IV-1〉 사업장 종류별, 규모별 분포<sup>41)</sup>

(단위 : 개소, 명, %, ‰)

구 분	항목	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사업장수	2,976,026	2,224,981	700,026	30,167	16,468	4,384
	근로자수	20,173,615	3,424,470	8,638,041	2,056,397	2,649,823	3,404,884
	요양재해자수	130,348	38,432	52,690	9,958	12,878	16,390
	재해율	0.65	1.12	0.61	0.48	0.49	0.48
	사망자수	2,223	572	800	184	256	411
	사망만인율	1.10	1.67	0.93	0.89	0.97	1.21
광업 (50인 이상)	사업장수	1,055	623	419	5	5	3
	근로자수	9,850	1,155	6,029	331	682	1,653
	요양재해자수	3,873	145	691	221	715	2,101

41)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 분석”, 2023.1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구 분	항목	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재해율	39.32	12.55	11.46	66.77	104.84	127.10
	사망자수	453	19	76	29	104	225
	사망만인율	459.90	164.50	126.06	876.13	1,524.93	1,361.16
제조업 (50인 이상)	사업장수	410,117	273,119	126,103	6,617	3,497	781
	근로자수	3,988,609	452,878	1,680,964	456,575	554,716	843,476
	요양재해자수	31,554	6,521	14,133	2,530	2,920	5,450
	재해율	0.79	1.44	0.84	0.55	0.53	0.65
	사망자수	506	103	240	48	37	78
	사망만인율	1.27	2.27	1.43	1.05	0.67	0.92
	전기가스 수도업 (100인 이상)	사업장수	3,502	2,341	766	242	118
근로자수	79,103	2,915	14,814	16,919	20,332	24,123	
요양재해자수	129	8	55	20	27	19	
재해율	0.16	0.27	0.37	0.12	0.13	0.08	
사망자수	3	1	1	1	0	0	
사망만인율	0.38	3.43	0.68	0.59	0.00	0.00	
건설업 (50인 이상)	사업장수	396,622	324,203	65,153	3,382	2,938	946
	근로자수	2,494,031	395,474	844,185	234,170	504,312	515,890
	요양재해자수	31,245	11,522	11,838	2,009	3,466	2,410
	재해율	1.25	2.91	1.40	0.86	0.69	0.47
	사망자수	539	224	185	34	60	36
	사망만인율	2.16	5.66	2.19	1.45	1.19	0.70
운수창고 통신업 (100인 이상)	사업장수	98,044	73,153	21,447	2,013	1,153	278
	근로자수	1,071,768	95,954	310,724	139,228	185,815	340,047
	요양재해자수	12,468	4,459	2,946	876	939	3,248
	재해율	1.16	4.65	0.95	0.63	0.51	0.96
	사망자수	198	53	53	29	31	32
	사망만인율	1.85	5.52	1.71	2.08	1.67	0.94
임업 (100인 이상)	사업장수	16,483	7,387	8,941	63	73	19
	근로자수	124,991	16,279	87,406	3,449	10,289	7,568
	요양재해자수	968	641	320	6	1	0
	재해율	0.77	3.94	0.37	0.17	0.01	0.00

IV.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설계(안)

구 분	항목	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망자수	13	8	5	0	0	0
	사망만인율	1.04	4.91	0.57	0.00	0.00	0.00
어업 (300인 이상)	사업장수	2,163	1,839	324	0	0	0
	근로자수	5,565	3,023	2,542	0	0	0
	요양재해자수	59	31	28	0	0	0
	재해율	1.06	1.03	1.10	0.00	0.00	0.00
	사망자수	1	0	1	0	0	0
	사망만인율	1.80	0.00	3.93	0.00	0.00	0.00
농업 (300인 이상)	사업장수	22,509	18,011	4,425	52	20	1
	근로자수	84,180	30,568	47,296	3,181	2,735	400
	요양재해자수	682	320	336	11	15	0
	재해율	0.81	1.05	0.71	0.35	0.55	0.00
	사망자수	12	5	7	0	0	0
	사망만인율	1.43	1.64	1.48	0.00	0.00	0.00
금융보험업 (300인 이상)	사업장수	44,013	14,781	26,957	1,448	616	211
	근로자수	815,562	26,268	421,862	95,186	94,229	178,017
	요양재해자수	666	73	371	135	38	49
	재해율	0.08	0.28	0.09	0.14	0.04	0.03
	사망자수	16	1	9	3	0	3
	사망만인율	0.20	0.38	0.21	0.32	0.00	0.17
기타의 사업 (300인 이상)	사업장수	1,981,518	1,509,524	445,491	16,345	8,048	2,110
	근로자수	11,499,956	2,399,956	5,222,219	1,107,358	1,276,713	1,493,710
	요양재해자수	48,704	14,712	21,972	4,150	4,757	3,113
	재해율	0.42	0.61	0.42	0.37	0.37	0.21
	사망자수	482	158	223	40	24	37
	사망만인율	0.42	0.66	0.43	0.36	0.19	0.25

(주) 업종 구분에서 ( )안의 규모는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 규모  
다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나 개략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같음하여 검토

##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현황

사업주 교육은 직무교육에 포함되기에 직무교육 수행기관 및 직무교육 수행실적을 조사하였다<sup>42)</sup>.

〈표 IV-2〉 2023년도 직무교육 수행 실적

(단위 : 명, 회, 개소)

지역 (노동청)	교육구분	이수인원수	교육횟수	교육기관수
울산 (공단교육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859	8	1
	안전관리자	861	8	
	보건관리자	50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0	0	
	안전검사등 종사자	938	42	
	소계	3,708	62	
서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643	528	10
	안전관리자	12,625	375	
	보건관리자	2,989	8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48	23	
	안전검사등 종사자	1,657	28	
	소계	32,372	1,163	
경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547	184	8
	안전관리자	1,767	56	
	보건관리자	908	3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26	17	
	안전검사등 종사자	817	29	
	소계	9,565	316	
대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222	89	4
	안전관리자	461	22	
	보건관리자	29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1	2	

42) 안전보건공단, 2023년 교육기관 교육실적 자료 참조

IV.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설계(안)

지역 (노동청)	교육구분	이수인원수	교육횟수	교육기관수
	안전검사등 종사자	15	1	
	소계	<b>2,788</b>	115	
광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703	515	4
	안전관리자	428	15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5	5	
	안전검사등 종사자	474	43	
	소계	17,710	478	
대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50	36	2
	안전관리자	706	16	
	보건관리자	344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6	1	
	안전검사등 종사자	49	2	
	소계	2,595	66	
부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65	41	4
	안전관리자	1,356	38	
	보건관리자	562	1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78	6	
	안전검사등 종사자	282	5	
	소계	3,843	104	
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3,889	1,401	33
	안전관리자	18,204	530	
	보건관리자	4,882	14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464	54	
	안전검사등 종사자	4,232	150	
	소계	72,671	2,280	

(주) 2023년 직무교육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의 수로 산출

2023년 직무교육 수행실적은 교육이수자 72,671명, 교육시간 2,280시간이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현황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2023년도 직무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분석

(단위 : 명, 회, 개소)

구 분	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소계	단일방법	혼합방식	소계	단일방법	혼합방식	
계	인원	72,716	42,583	38,051	4,532	30,133	26,988	3,145
	횟수	2,254	1,273	1,176	97	981	883	98
집체교육	인원	67,805	39,490	38,051	1,439	28,315	26,988	1,327
	횟수	2,186	1,241	1,176	65	945	883	62
인터넷 교육	인원	4,911	3,093	-	3,093	1,818	-	1,818
	횟수	68	32	-	32	36	-	36

집체교육 인원은 67,805명이었고, 집체교육횟수는 2,186회이었다.

〈표 IV-4〉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분석

(단위 : 명, 회, 개소)

구 분	계	신규교육			보수교육			
		소계	단일방법	혼합방식	소계	단일방법	혼합방식	
계	인원	43,889	28,521	25,757	2,764	15,368	13,986	1,382
	횟수	1,401	886	835	51	515	464	51
집체교육	인원	40,487	26,148	25,757	391	14,339	13,986	353
	횟수	1,349	860	835	25	489	464	25
인터넷 교육	인원	3,402	2,373	-	2,373	1,029	-	1,029
	횟수	52	26	-	26	26	-	26

2023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집체교육 40,487명이었고, 인터넷 교육은 3,402명으로 총43,889명이 이수하였다. 집체교육이 전체 교육이 수자의 92.2%이며, 신규교육 28,521명으로 전체의 65.0%이었다.

<표 IV-1>에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수는 51,019개소이었다. 이 사업장이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장<sup>43)</sup>이라고 가정하고, 이 중에서 신규교육 28,52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22,498개소)의 1/2이 보수교육<sup>44)</sup>을 받았다고 하면, 신규교육(28,521명)과 보수교육(11,249명)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대상자(39,770명)가 된다. 그런데 2023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보다 약4,000명이 더 많은 인원이 이수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교육 참여도가 높은 것을 방증하고 있다.

### 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행 실적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대상 사업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사업주 교육 수행실적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2023년도 공단 지역본부 사업주 교육 수행 실적

(단위 : 명, 회, 개소)

교육과정	교육횟수 (A)	사업장수	교육시간 (B)	교육인원	회당교육 시간(B/A)	교육방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483	14,263	1,932	14,263	4.0	대면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608	17,523	1,259	19,117	2.1	대면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82	<b>154</b>	98	<b>1,637</b>	1.2	대면교육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146	5,996	285	6,359	2.0	대면교육
	2	38	4	39	2.0	화상교육

43) 법령상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으로 구분

44) 보수교육의 주기는 2년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교육횟수 (A)	사업장수	교육시간 (B)	교육인원	회당교육 시간(B/A)	교육방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1,062	29,114	2,147	67,624	2.0	대면교육
	5	24	16	255	3.2	화상교육
	1,153	38,442	2,314	64,693	2.0	인터넷, 원격교육
1,000대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34	670	72	680	2.1	대면교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주(관계자) 교육	79	2,598	158	3,497	2.0	대면교육
소계	3,654	108,822	8,285	178,164	2.3	

2023년에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수행한 사업주 교육은 총 3,654회, 108,82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8,285시간을 교육하고 178,164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평균 10명 이상이 참석하기도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은 화상교육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평균 1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으며 대면 교육도 한 사업장에서 평균 2명 이상 수강자가 있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에 관한 수강 요구도가 높았던 결과라 생각된다.

#### 4) 교육시장의 종합의견

전체 사업장수는 2022년 기준으로 2,976천 개이고, 50인 이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이라 가정)은 51천 개, 5~50인 미만은 700천 개, 5인 미만은 2,225천 개다.

기존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이고 관리책임자 교육은 별개로 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교육할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50인 미만 사업장수는 70만 개 사업장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1년간 수행한 사업장의 수는 약 11만 개 사업장이었다.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장을 1회씩 교육하기 위해서는 약 6.4년이 소요된다. 사업장이 신생,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하에 그러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분포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표 IV-6>에 나타내었다.

**<표 IV-6>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장수 분포**

(단위 : 개소)

위험군 구분	업종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고위험군	광업	623	419	13	1,055
	제조업	273,119	126,103	10895	410,117
	건설업	324,203	65,153	7266	396,622
	운수창고통신업	73,153	21,447	3444	98,044
	임업	7,387	8,941	155	16,483
	어업	1,839	324	0	2,163
	농업	18,011	4,425	73	22,509
	소계	698,335	<b>226,812</b>	21,846	946,993
저위험군	전기가스수도업	2,341	766	395	3,502
	금융보험업	14,781	26,957	2275	44,013
	기타의 사업	1,509,524	445,491	26503	1,981,518
	소계	1,526,646	473,214	29,173	2,029,033
계		2,224,981	700,026	51,019	2,976,026

(주) 고위험군은 전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저위험군은 그 이외

사업주 교육의 설계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 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선임의무 사업장의 업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4.30., 전부개정)와 명칭이 상이하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2024.1.5., 일부개정)과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구분하고 있는 사업종류별 명칭은 산재발생현황 조사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사업장의 명칭이 달라서 혼선이 있다.

명칭 통일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선임 사업장의 규모를 일원화하거나 선임의무를 자율로 하는 검토도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같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sup>45)</sup>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들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내용들이지 규모가 작다고 수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업규모가 클수록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45)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4.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설계

### 1) 교육대상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

#### (1) 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의 종류는 고위험군으로 국한할 것인지 전산업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법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7〉 사업주 교육의 대상 사업의 종류

구 분	대상 사업장	장 점	단 점
제1안	전 산업	·법의 형평성에 가장 부합	·사업주 참여도가 낮을 수 있음 ·사업주 단체의 반발 예상
제2안	고위험군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업종이라는 명분 있음	·평균 재해율에 근접한 업종이 향후 낮아질 때 대상 사업장이 변경되는 등 번거로움 존재 ·사업주 입장에서 혼선 초래
제3안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 한함	·선택과 집중에 가장 적합 ·재해자수, 사망자수 등이 가장 많고 이에 소속한 근로자수도 상대적으로 많음(광업은 예외) ·현행 교육기관 여건 등에 적합	·법의 형평성에 저촉될 가능성

<표 IV-7>에서 사업주 교육 대상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3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교육 대상 사업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사업장의 규모

사업주 교육은 관리책임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규모에 도입하자는 의견과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사람을 정하였기에 사업주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한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업무를 주도하기에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사업주 교육 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대하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표 IV-8> 사업주 교육의 대상 사업장의 규모**

구 분	대상 사업장	장 점	단 점
제1안	50인 미만 (5인 미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책임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무교육 이수</li> <li>·법의 형평성에 가장 적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이 교육대상이 되어 교육환경 마련 미흡</li> <li>·산안법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의무교육이 많이 존재하여 불편함 호소 가능성</li> </ul>
제2안	5~5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과 일치</li> <li>·교육대상 사업장이 70만 개 정도 증가하여 그나마 적절한 증가 폭이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에 따라 법 적용상의 문제 내재</li> <li>·간헐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교육대상 또는 비대상 여부의 혼선</li> </ul>
제3안	모든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 최소한의 사업주 교육 시행 가능</li> <li>·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의 사업주도 교육대상이 되어 사업주의 인식 제고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까지 사업주 교육 이수로 중복 규제</li> <li>·규모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나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 제공 어려움</li> </ul>

<표 IV-8>에서 사업주 교육 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3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교육 대상 규모와 사업의 종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교육형태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교육은 지식의 전달, 정보의 공유, 의식의 제고 등 다방면으로 그 효과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무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주 교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5~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45.8%만 의무교육을 선호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86.2%로 강하게 의무교육을 주장하고 있다<sup>46)</sup>. 의무교육이 도입된다면 가장 우선 적용하여야 할 제조업 소속 응답자는 37%만 의무교육을 찬성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인 사업주는 43%만 찬성하였다<sup>47)</sup>.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V-9〉 근로자 행동에 기인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 류	재해발생 원인	대책방안
안전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	·재해자 본인이 안전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작업 방법을 알면서 미준수 ·인적 오류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근로자의 정기교육, 특별교육 실시
안전작업 방법을 모르기 때문	·작업안전절차 등에 관한 지식 부족 ·작업지휘자 미지정 또는 부재 ·재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해 발생	·관리감독자 특히 고위험작업의 작업지휘자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필요
안전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	·작업환경의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기계기구·가설구조물·안전시설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46) 이 보고서 <표 II-60> 참조

47) 이 보고서 <표 II-44> 참조

분 류	재해발생 원인	대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등</li> <li>· 선행 작업자의 불안정한 이행결과에 기인한 후속 작업자에게 미치는 불안정한 작업조건</li> <li>· 재해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였으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li> <li>· 재해자가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나 재해자의 권한 밖의 작업조건으로 인해 재해 발생</li> <li>· 예를 들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안전예산 부족, 공사기간 부족,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된 가설구조물, 불안정한 작업환경, 여러 공중 혼재로 인한 간섭, 신호 미배치 등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li> <li>· 설계자의 작업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설계기준, 설계시방서 등)</li> <li>· 발주자의 안전에 관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li> <li>· 각종 안전규제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관계 종사자의 직무교육</li> </ul>

원인이 없는 사고는 없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는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작업하던 상황에서 재해는 대부분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안전작업을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재해는 그러하지 않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조건에 방치되었거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들에게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교육하여야 하나 그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해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작업을 하였으나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었기에 발생하는 재해가 많이 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기인하고, 그 뒤에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 또는 정부의 책무와 관계되며, 교육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원인 제거의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해발생원인을 설문 응답자와 관계 전문가들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높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많은 관계자들이 사업주 교육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정작 그 교육 대상자들의 과반수가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업주 교육의 의무교육 도입은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되어 전면 의무제, 선택적 의무제, 전면 자율제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표 IV-10〉 사업주 교육의 교육형태(의무 또는 자율) 검토

구 분	교육형태	장 점	단 점
제1안	전면 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 책무를 강조하고 이를 인식하게 함</li> <li>·사업주도 안전보건 직무교육 대상자임을 강조하여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본보기 기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여한 책임자를 둔 경우에도 교육 이수 의무 부여는 불합리</li> <li>·채택하기 어려움 존재</li> </ul>
제2안	선택적 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예방의 실효성 확보 가능</li> <li>·의무화 도입에 따른 명분이 가장 적절</li> <li>·직무교육 대상 사업장을 정의함으로써 제도적 도입이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책임자가 아닌 형식적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개연성 높음</li> </ul>
제3안	전면 자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사업장의 자율에 의존하므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업주만 참여함으로써 교육이수자의 교육효과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사업주 미참여</li> <li>·참여의식이 없는 자들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li> </ul>
대안 정의	전면 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li> </ul>	
	선택적 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한 사업주는 제외(법정 선임의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선임 가능)한 모든 사업주는 사업주 교육 이수 의무화</li> <li>·(2)상기 (1)안의 대상 사업주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일부 업종의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이수 의무화</li> </ul>	
	전면 자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 교육은 원하는 사업주만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원 또는 무보상</li> </ul>	

사업주 교육의 의무제를 도입하는 대안 중 어느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기관, 교육방법 등의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 3)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교육주기와 교육시간이다. 설문 응답자의 교육주기에 관한 의견은 매년(56%)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2년(30%)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년 작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재인식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시간은 2시간(40%), 4시간(35%)의 순이었고, 사업장 소속 응답자 118명 만의 의견은 2시간(56%), 4시간 (24%)의 순이었다. 전문가들도 교육시간은 교육주기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며, 1년마다 4시간 또는 2년마다 6시간을 많이 선호하였다.

현재 사업주 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을 검토하여 다음 표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기와 교육시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표 IV-11〉 현행 사업주 교육 관련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주기	교육시간	관련 근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1년	4시간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	2시간	정책적 지원, 대면교육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	2시간	정책적 지원, 대면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	2(3)시간	정책적 지원, 화상교육은 3시간
1,000대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	2시간	정책적 지원, 대면교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주(관계자) 교육	-	2시간	정책적 지원, 대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년	6시간	산안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9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년	16시간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사업주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은 사업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교육형태(의무교육 또는 자율교육), 교육방법(대면교육 또는 화상교육), 교육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교육대상 범위(전면 또는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기는 선호도가 높은 1년과 2년만을 검토하였고 선호도가 낮은 3년과 최초 1회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시간은 선호도가 높은 2시간과 4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인 3시간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대안별 장단점을 정리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공감대가 높은 방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은 의무교육 여부와 관계없으나 교육주기는 의무교육인 경우에 한한다.

〈표 IV-12〉 사업주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검토

구분	대안	장점	단점
주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안전에 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계기 부여</li> <li>·급변하는 사회적 현상 등을 신속히 반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의 경영활동 중 매년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존재</li> <li>·주기가 짧아 자칫 교육 이수 일자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미이수 사례 발생하거나 어느 시기에 수강생이 몰리는 현상 발생할 우려</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주기와 일치하여 사업장의 혼선 최소화</li> <li>·교육주기가 비교적 길어서 사업주의 경영활동 일정 조율을 위한 여유 제공</li> <li>·대상 사업장이 많으므로 이를 반분하여 이수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수강인원 배분에 적합(대면교육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사업주의 안전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 미흡</li> <li>·안전보건 인식제고에 비교적 비효율적</li> <li>·급변하는 사회적 동향 변화에 대처 곤란, 정보 공유의 둔화</li> </ul>
시간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집약적인 교육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교육인 때 여러 법정 의무를 전달할 교육시간 부족</li> </ul>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시간으로서 가장 적합</li> <li>·경우에 따라 2시간+1시간으로 분리하여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주제를 모두 강의하기는 곤란</li> <li>·하나의 주제만을 강의하기는 다소 여유있음</li> </ul>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간으로 2개의 주제를 강의할 수 있음</li> <li>·3+1시간으로 실습교육 병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면교육인 경우 비교적 긴 시간</li> <li>·사업주가 동시에 4시간을 할애하기 곤란(나누어 수강하는 경우는 가능)</li> </ul>

####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사업주 교육을 수강한 설문 응답자 65명 중 5명(7.7%)이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과 실무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육내용을 수강자의 눈높이에 모두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강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방법 또한 중요하다.

설문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할 때, 사업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항목 중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실무활용에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를 희망하였다. 사고발생 원인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유해위험요인 미파악, 근로자의 안전정보 및 교육 미흡 등이었다.

설문을 통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한 역량,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교육내용, 현행 사업주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주 교육의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나, 제안한 교육내용별로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3〉 사업주 교육의 교육내용 제안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책무 이해</li> <li>·안전보건조직체계의 이해</li> <li>·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의무 이해</li> <li>·적격수급인 선정의무의 이해</li> <li>·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이해</li> </ul>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li> <li>·위험성평가의 주체에 관한 사항</li> <li>·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li> <li>·유해위험요인의 도출 방법에 관한 사항</li> <li>·유해위험요인별 대책수립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li> </ul>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의 이행 및 이행결과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li> <li>·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권(요인도출, 결과고지 등)에 관한 사항</li> <li>·위험성평가 결과의 자료정리 및 이행 환류체계에 관한 사항</li> </ul>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경영 인증제도의 소개(KOSHA MS, ISO 45001)</li> <li>·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설정 방법</li> <li>·사업장별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이행, 확인, 개선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li> <li>·자료관리, 이행상태 점검, 구성원의 성과측정 등에 관한 사항</li> <li>·우수 안전보건활동의 사례 전파 및 공유</li> </ul>
사업진흥과 연계한 안전보건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사업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소개</li> <li>·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경영 투자와의 상관관계</li> <li>·도급사업에서 안전경영이 미치는 영향</li> <li>·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른 수급활동에서 안전경영이 미치는 영향</li> <li>·국가계약법(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른 안전경영수준평가 지표</li> <li>·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필요성</li> </ul>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li> <li>·문화적 수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li> <li>·여러 사례(교통안전, 자살률, 개발도상국 등)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과 국민 삶의 질향상과의 관계 등</li> <li>·기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li> </ul>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효율적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주인으로서의 근로자의 지위 인식에 관한 사항</li> <li>·사고사례를 통한 산업재해의 심각성 교육</li> <li>·여러 우수한 교육교재 및 교육 내용의 전파</li> <li>·기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노하우</li> </ul>
경영활동을 위한 조직관리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경영에 따른 안전경영의 중요성</li> <li>·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규정의 필요성(사규의 지위 확보)</li> <li>·의사소통체계 구축(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소개)</li> <li>·구성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하우</li> <li>·성과측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li> <li>·예측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내용</li> </ul>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안전장치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li> <li>·작업 또는 기계·기구에 활용하는 안전장치의 소개</li> <li>·안전시설물의 종류별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여러 보호구의 성능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li> <li>·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li> <li>·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산업재해 발생 대비 응급구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실습</li> <li>·사고발생 시 경보, 대피, 대응, 복구 등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li> <li>·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비상시를 대비한 행동 매뉴얼 작성 및 정기 훈련에 관한 사항</li> </ul>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안전보건 관련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예방요율제 정책에 관한 사항</li> <li>·위험성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li> <li>·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에 관한 사항</li> <li>·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li> <li>·산재보상보험 납입 및 보험급여 수령에 관한 사항</li> <li>·기타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ul>
산업보건 분야의 작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특성에 대비한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li> <li>·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대비한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li> <li>·뇌심혈관 질환 예방 및 징후 발견에 관한 사항</li> <li>·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li> <li>·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li> <li>·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기타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사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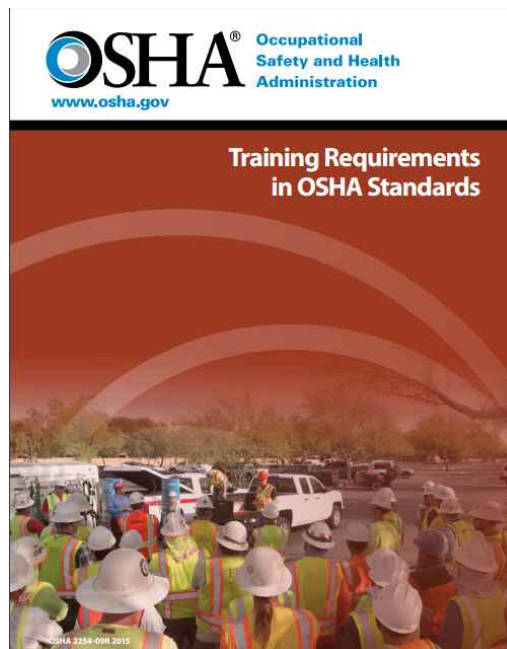
사업주의 교육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교육과정별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유사하게 교육과정별 표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여야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별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직무교육, 사업주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그 교육과정별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내용 규정은 지나치게 범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차별화가 미흡하는 등 많은 내용을 동시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어렵고, 보수교육도 동일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므로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특별교육은 작업별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에 다른 교육에 비하여 구체성이 나은 편이다.

교육대상 및 교육종류별 여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두고 이를 이수하였을 때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구체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개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교육규정」의 [별표]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안전보건교육기준”으로 제정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IV-1] 미국 OSHA의 안전보건교육 요구 기준<sup>48)</sup>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대면(집체)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도 대면교육이 주된 교육방법이고 인터넷교육은 일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설계를 위하여 현재 교육기관의 여건과 교육대상자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교육방법별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교육방법은 집체 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현장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48) <https://www.osh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osha2254.pdf>

다소 거리가 있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대면(집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교육장까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 거리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기에 이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V-14〉 사업주 교육의 교육방법별 장단점 비교

교육방법	장 점	단 점
집체(대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효과의 극대화</li> <li>·강사와 수강자의 실시간 교감</li> <li>·수강자 간의 교육내용 이외 정보교환 가능</li> <li>·토론식 또는 실습형 교육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관과 사업장이 원거리일 경우 접근성 결여</li> <li>·사업주의 바쁜 일정으로 교육참여 어려움 존재</li> </ul>
인터넷 원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강자의 여유시간을 활용 수강 가능</li> <li>·수강자의 수강의욕 높을 때 반복 학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화한 강의이기에 교육효과 미흡</li> <li>·수강자의 교육참여 열의가 낮을 때 형식적 교육 가능성 존재</li> <li>·수강자 간에 정보교류 단절</li> <li>·수강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곤란하여 대리수강 가능성 존재</li> </ul>
혼합형 (집체+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 효율적 운영</li> <li>·단순한 정보제공 교육은 원격교육 채택, 토론식 교육은 집체교육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분산으로 교육관리 복잡</li> <li>·교육이수 실적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망 구축 필요</li> </ul>
교육기관 현황 및 대상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관수 : 민간교육기관 32개소, 공단 교육원 및 지역본부 7개소</li> <li>·2023년 교육기관의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자 43,889명, 교육횟수 1,401회, 교육기관당 평균 약 40회/년</li> </ul> </li> <li>·2023년 공단 지역본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강자 192,622명</b>, 교육횟수 4,321회</li> </ul> </li> <li>·수강 대상자수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업 전규모 사업장수 : 2,976,026개</li> <li>- 전산업 5인 미만 2,224,981개, 5~50인 미만 700,026개, 50인 이상 51,019개</li> <li>- 고위험 산업 전규모 사업장수 : 946,993개</li> <li>- 고위험 산업 5인 미만 698,335개, <b>5~50인 미만 226,812개</b>, 50인 이상 21,846개</li> </ul> </li> </ul>	

## 5) 교육기관 및 교육강사

전체 설문응답자의 57.6%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교육하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서비스업 소속 응답자만 등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높게 희망하였다. 사업의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신뢰성, 교육이수결과의 증빙 등을 고려하여 설문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사업주 교육의 교육기관의 선정은 교육대상 사업주의 수(<표 IV-6> 참조)와 교육기관의 여건(<표 IV-4> 및 <표 IV-5> 참조)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에 이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존 교육기관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5~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고위험군 사업장은 공단 지역본부에서 대면교육으로 수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반분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표 IV-15〉 사업주 교육의 교육대상자수와 교육기관 여건의 검토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구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사업장수	고위험군 <sup>1)</sup>	698,335	226,812	21,846	946,993
	저위험군	1,526,646	473,214	29,173	2,029,033
	계	2,224,981	700,026	51,019	2,976,026
교육이수자수	관리책임자교육 <sup>2)</sup>	-	-	43,889	43,889
	공단 사업주교육 <sup>3)</sup>	-	178,164	-	178,164
	계	-	178,164	43,889	222,053

주) 1) 고위험군은 전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저위험군은 그 이외

2) 관리책임자교육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

3)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교육이므로 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산정

## 6) 교육과정의 수립 및 승인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공단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육기관별 교육의 구분은 관리책임자등 직무교육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공단 교육원에서 승인하되, 이를 근거로 교육을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정 승인을 위해서는 교육의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방법, 교육장소 등을 계획하여 승인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전산망 활용)하는 등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 수강후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은 2~3시간 정도로 구성하여 여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수강자들에게 수강 선택 폭을 넓혀줘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기관을 공단 교육원 또는 공단 지역본부로 국한하는 때는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일정 수준 자체 관리할 것이지만, 민간교육기관에 위임할 경우는 엄격한 교육관리가 요구된다. 수강자의 출결관리 및 이수증 발급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자율교육제로 운영하는 때에도 최근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관련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지표로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교육을 의무교육 또는 자율교육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육 이수증 발급 체계를 엄밀히 구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교육기관으로 사업주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승인, 교육이행, 이수증 발급의 신뢰성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

## 7) 종합의견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관계자가 공감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으로 법령에서 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은 모르는 자를 계몽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지식수준을 갖도록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무교육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지나치게 자율교육에 의존할 경우는 자칫 방임에 가까울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업주 교육은 자율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사회적 환경이 안전보건교육에 많은 사업주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주 교육의 교육 대상자 및 교육형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표 IV-10>에서 검토한 대안별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표 IV-16> 사업주 교육의 교육대상자 설정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교육형태	해당 법령	필요 내용
전면 의무제	산안법 제32조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주도 안전보건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근거 마련 필요
선택적 의무제(1)	산안법 제15조 또는 산안법 제32조	·제15조를 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문 필요 - 사업주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제32조 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교육 대상에 포함 -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의 사업주를 규정
선택적 의무제(2)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주 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토록 규정 -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노동관서에 장관 지침으로 사업주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하여도 가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만 해당

교육형태	해당 법령	필요 내용
전면 자율제	산안법 제61조 또는 장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의 평가항목은 대통령령(또는 장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 반영</li> <li>- 시행령(또는 시행규칙)에 여러 평가항목 제안(사업주 교육 참여실적 포함)</li> <li>·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협조문 발송하여 적정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요청</li> <li>- 일부 대기업은 수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실적을 반영하고 있음</li> <li>· 산재보험요율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지표로 반영</li> <li>- 현재 산재보험수지율만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요율 인하·인상 현실화 필요</li> </ul>

현재의 대안 중에서 가장 수용하기 용이한 것은 ‘선택적 의무제(2)’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적 의무제(1)’를 채택하고 자율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평가항목으로 사업주 교육의 참여를 견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시간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명령의 반감으로 인하여 교육효과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년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를 권하며, 가능하다면 약 3년간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에 따라 법령정보, 정책정보 등 정형적인 내용의 수강은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의식 제고 교육 또는 위험성평가 등 전문교육은 대면교육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교육의 교육과정은 가능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도를 향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V. 결론 및 건의사항





## V. 결론 및 건의사항

###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사업주(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정책을 결정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행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교육은 지식 전달, 의식 제고, 비전 제시, 문화 형성 등을 위한 귀중한 매체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 왔으며, 국가경제개발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었다.

그러한 일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가 일정 크기 이상인 때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활동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공감하여 약 34년 전인 1990년에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교육을 도입하였으나 실행을 위한 교육기관의 여건 미흡, 기업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실행 정지 및 폐지되었다.

하지만 사업주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교육기관의 여건 확보, 산업재해 발생이 기업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많은 관계자의 사업주 교육 시행에 대한 높은 요구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의 책임강화로 인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수준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주 교육제도를 정립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견인할 정부의 책무 이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 2. 교육과정 설계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형태(자율, 의무), 교육방법(집체, 원격), 교육기관(공공, 민간),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행 법령,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강자들의 요구도 높은 교육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운영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사업주 교육을 의무교육(또는 권고)으로 적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국한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은 자율교육으로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기를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고만 하더라도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사업주 교육 이수를 의무(또는 권고)하는 때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여야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 (3) 사업주 교육은 자율교육을 기반으로 점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사업장은 의무교육으로 전향하거나 많은 사업주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요구되므로,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수급활동과 직결한 안전보건활동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4) 의무교육은 공단 교육원 또는 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자율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적합할 것

이라 판단된다.

- (5)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에 따라 2~3시간으로 개발하고 이를 공단 교육원 등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하되, 교육과정의 정보공개, 수강자 모집 및 이행, 결과보고, 이수증 발급, 만족도 조사 등 정교한 교육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6) 사업주 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고, 자칫 교육내용의 부실화 또는 목적 외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승인절차를 갖기를 희망한다.
- (7) 교육방법은 정형화된 법령정보, 정부정책 등은 원격교육으로 수행하고, 인식제고 교육, 전문화 교육, 사례중심교육 등은 토론 또는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으로 하는 것이 좋고, 집체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에 정보교류 등 회합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기타 교육제도 개선(안)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주 교육 이외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의 의견이므로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규모 재검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종류별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등으로 정하여 그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안전보건업무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별 규모를 구분한 것은 사업 특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책임있게 수행할 사람을 정할 목적으로 관리책임자 선임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는 위험성과 사업주의 업무량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굳이 300명 이상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없고 안전관리자만 있는 형상이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는 직책이 아니고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업주가

되었든 소속 근로자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굳이 업종별 구분한다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명칭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기준표 및 산업재해통계조사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 2) 작업지휘자의 안전보건교육 신설 및 차별화 필요

관리감독자의 정의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sup>49)</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는 업무와 관련한 지휘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당 생산업무의 관리감독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한 직책이므로 다소 모호하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정기교육 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소 직책에 맞는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는 관리감독자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고위험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sup>50)</sup>, 작업지휘자가 작업 시작전 작업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이를 지휘하며, 근로자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직무를 부여받는다. 이들 작업지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작업지휘자의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다. <표 IV-9>에서 근로자가 ‘안전작업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휘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고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지휘자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교육제도의 큰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법규에서 정한 고위험작업의 작업지휘자는 그의 전문역량 강화를

49)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위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제14조, 제60조에서 작업주임자(作業主任者)와 직장(職長)<sup>51)</sup>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3) 안전보건교육의 표준 제정

국내 안전보건교육 운영 방식이 공단 교육원만 하더라도 교육과정명을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검사원 양성교육 등 교육목적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운영형태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교육 이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내용은 후순위로 한 결과이다.

여러 교육내용을 알려주고 그 교육내용을 수강한 때는 교육내용과 관계된 직무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면, 동시에 6시간을 수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을 듣고 이를 합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각각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교육훈련 요구 기준(Training Requirements in OSHA Standards)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일본도 고위험작업군으로 분류한 작업의 작업주임자에 대한 기능강습규정(技能講習規程)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1) 작업주임자는 우리나라 작업지휘자와 유사하고, 직장은 관리감독자와 유사

## 참고문헌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04.16.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2023.12.13.

박민수 외 4인(202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작동성 제고 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문윤경 외 3인(2022),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개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명구 외 3인(2018),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장안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태구 외 5인(2022),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유리 외 5인(201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강화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상문 외 6인(2017),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흠학(2014), “사업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방안 연구”, 안

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용일 외 3인(2012),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윤조덕 외(2013), “외국의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bstract

### Activation Plans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Employer

#### **Objectives :**

The employer is the supreme decision maker on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the workplace and is a core leader in the safety and health programs of the workplac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t the workplace depends largely on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mployer or CEO, an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an important means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ively redesign and seek ways to revitalize education for employer so that employer can not only recognize the role and obliga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ut also carry out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effectively. In regard of employe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eventative education before accident is more important than penal education after accident.

#### **Method :**

In order to analyze the necessit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the accident statistics by trades and sizes of establishments were analyzed, and the current history and problems

were analyzed. With a case study on education system practices for employers abroa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to education for domestic business owners was investigated .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demand on improvement of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the current operation environment of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was analyzed, a survey was conducted for business owners, workers at workplace, and related experts, an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for expert groups.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sses, the curriculum design (draft) of employer education system and other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education system were suggested.

**Results :**

The curriculum for employer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argets of education, curriculums, legal demand (autonomy, compulsory), education method (collective, remote), education institution (public, private), education time, and reeducation cycle. For effective curriculum operation, current legal requirements and social conditions must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education content on demands from students, and to prepare a device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education operation system. By summarizing these contents, opinions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for employers were presented as follows.

- (1) It is recommended the workplace that need compulsory employer education (or recommendation) are limited to workplace that do not oblige to appoint a gener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charge, and whose accident rate is lower than the average

accident rate of the same industry. For the other workplace, education system need open their doors to participation with autonomous bases.

- (2) When an employer is obliged (or recommended) to complete education, it is judged that the education effect will be high only when the education conten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is completed for at least three hours every three year.
- (3) Based on autonomous education, employers' education is gradually required to convert to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workplace where gener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charge is not oblige to appoint, and to create social environment for many employers possibly to participate in education, so we think it is better to actively utilize the obligation to select eligible recipients which reflect it in the evaluation index of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that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and demand activities of the project.
- (4) It is judged that compulsory education will be operated by the KOSHA's education center or their regional headquarters, and autonomous education will be operated b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of education institutions.
- (5) The curriculum shall be developed for two to three hours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and shall be operated with the approval of KOSHA's education center, but the establishment of a sophisticated education management system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curriculum, recruitment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 reporting results, issuance of completion certificates, and satisfaction surveys is required.

- (6) It is hoped that the curriculum of employer's education should be open so that various education contents can be developed and the desired education can be freely taken, and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approved in order to prevent poor education contents or operation outside the purpose.
- (7) For the education implementation method, standardized legal inform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could be carried out through on-line education, and off-line education should be used to raise awareness, specialized education, and case-based education so that discussions or practices can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nd through collective education, it would be better to create a meeting place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articipants.
- (8) The job contents of the management supervisor and the work conductor are distinguished. However,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as a curriculum for management supervisors, but there are no job training regulations for work leader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a lack of job-related experti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job train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job competency of the work conductor.
- (9) The designation of the domest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urses is set according to the education purpose, such as job

training for management supervisors and training for inspectors, an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re operated in a way that cannot be identified in detail. In order to know the necessary education cont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rse participants, a curriculum is opened in each unit of education content, and when the curriculum is completed, a confirmation method that recognizes the completion of job training related to the education content is necessary.

- (10) If a person is required to complete job training, such as a manager, he/she should not take 6 hours at the same time, but rather attend to various education institutions with various contents of education, and adopt an operation method that combines them to maximize the education effect.
- (1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urriculum standards for each education content, such 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in the United States or the "Technical Training Regulations" in Japan, and to plan and educate curriculums accordingly.

### **Conclusion :**

The curriculum and activation plan for employe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ere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using the research results. The curriculum should specifically define the training hours, retraining cycles, and education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types and sizes of workplace, and whether the applicant workplace is

in obligation or autonomy. In each case, a proposal was made by comparing pros and cons, and for the future, stake-holders should meet to reach a social consensus.

**Key words :**

Employe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Job competency, Incentives

## 부록 설문조사지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설문지

〈작성대상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운영담당자, 안전보건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 등이 경영상, 법령상의 의무를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이하 '사업주 교육')를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시행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며,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하단의 설명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자 설명문 전문보기(링크)
- 문의처) 을지대학교 교수 함은구

2024년 05월

위의 설명문을 확인하였음  
( 연구참여자  확인, )

## A. 기초 사항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대 (10단위로 기재)	(      )대
근무경력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작성자 유형	사업장	① 사업주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안전담당임원(실장, 이사 등)	
	전문가	④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기관)    ⑤ 직능단체 등 기타 교육운영담당자 ⑥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등)    ⑦ 학계 등 기타 전문가(교수 등)	
사업장 유형만 작성	업종	① 제조업      ②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③ 운수창고통신업 ④ 서비스업      ⑤ 기타(      )	
	종사자수 (‘23. 12. 기준)	① 5인 미만      ② 5~50인 미만      ③ 50~100인 미만 ④ 100~300인 미만      ⑤ 300인 이상	

## B. 안전보건관리 현황

☞ 사업장 소속 작성자만 응답해주세요

※ 1번~7번 문항의 법적의무주체는 사업주이나 실제 수행하는 주체에 대하여 응답 바랍니다.

문항	내용
1. 귀 사업장에서는 누가 실제 안전 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합니까?	① 미 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2. 귀 사업장의 실제 안전보건조치 주체는 누구입니까? * 안전설비, 안전난간, 안전덮개, 접지 설치 등	① 미 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3. 귀 기관의 안전보호구 실제 제공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미 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4. 귀 기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제 정보 제공 주체는 누구입니까? * 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	① 미 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문항	내용			
5. 귀 기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제 실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미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6. 귀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수렴 실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미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7. 귀 기관의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비 매뉴얼 작성 실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미실시	② 사업주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④ 안전담당 임원
	⑤ 담당 부서장	⑥ 담당 직원		
8. 귀 기관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인력이 선임되어 있습니까?(모두 응답)	구분	선임 (체크)	구분	선임 (체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타(겸직)	
9. 귀 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약간 높음	④ 매우 높음

### C.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태

문항	내용	
1. 귀하는 사업주교육 과정에 참여/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1번 문항의 '① 있음'에 응답한 경우에만 '1-1'부터 '2-2'까지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고 'D. 사업주교육 인식'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없음'에 응답한 경우에는 'D. 사업주교육 인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문항	내용					
1-1. '①의 있음'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운영하였습니까? (모두 응답)	법정교육(의무)	체크	공단교육(자율)	체크	민간교육(자율)	체크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		④산재예방요율제		⑨원하청/계열사	
	②중대재해처벌법 교육명령(처분)		⑤위험성평가		⑩직능단체(직종)	
	③산업안전보건법 수강명령(처벌)		⑥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⑪안전보건전문기관	
			⑦중소규모 산재사업장		⑫경영단체	
		⑧외국인 고용				
1-2. 다음의 사업주교육 중 효과가 높은 순으로 3가지만 응답하십시오.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법정-공단교육	체크	민간교육(자율)	체크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⑥원하청/계열사 사업주교육			
	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⑦직능단체(직종) 사업주교육			
	③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⑧안전보건전문기관 사업주교육			
	④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교육		⑨경영단체 사업주교육			
	⑤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교육		⑩외국인 고용 사업주교육			
2. 귀하가 이수한 사업주교육은 산재예방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2-1. (③, ④번 응답자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이유					체크
	① 법적 의무 안내					
	②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					
	③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④ 정책과 지원사업 소개					
	⑤ 안전경영 노하우 공유					
	⑥ 안전경영 의지 향상					
⑦ 기타 ( )						

문항	내용
2-2. (①, ②번 응답 자만)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모두 응답)	① 알고 있는 내용      ② 실무에 활용 불가능 ③ 위험하지 않음      ④ 참석이 어려움 ⑤ 기타( )

#### D.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1. 귀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재예방은 누구의 역할이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업주(안전담당임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③ 관리감독자(부서장) ④ 안전/보건관리자 ⑤ 담당 직원																
2.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산 업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재해발생원인</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① 시설, 도구 등 작업환경 불량</td> <td></td> </tr> <tr> <td>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못함</td> <td></td> </tr> <tr> <td>③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경영의 후순위로 인식)</td> <td></td> </tr> <tr> <td>④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td> <td></td> </tr> <tr> <td>⑤ 근로자의 정보 및 교육(훈련) 부족</td> <td></td> </tr> <tr> <td>⑥ 자체감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td> <td></td> </tr> <tr> <td>⑦ 기타( )</td> <td></td> </tr> </tbody> </table>	재해발생원인	체크	① 시설, 도구 등 작업환경 불량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못함		③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경영의 후순위로 인식)		④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⑤ 근로자의 정보 및 교육(훈련) 부족		⑥ 자체감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⑦ 기타( )	
재해발생원인	체크																
① 시설, 도구 등 작업환경 불량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못함																	
③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경영의 후순위로 인식)																	
④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⑤ 근로자의 정보 및 교육(훈련) 부족																	
⑥ 자체감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⑦ 기타( )																	
3. 귀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 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 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요한 역량</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① 시설개선 등 예산 확보</td> <td></td> </tr> <tr> <td>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식</td> <td></td> </tr> <tr> <td>③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td> <td></td> </tr> <tr> <td>④ 교육 및 정보 확보 및 제공</td> <td></td> </tr> <tr> <td>⑤ 조직관리 노하우</td> <td></td> </tr> <tr> <td>⑥ 기타( )</td> <td></td> </tr> </tbody> </table>	필요한 역량	체크	① 시설개선 등 예산 확보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식		③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		④ 교육 및 정보 확보 및 제공		⑤ 조직관리 노하우		⑥ 기타( )			
필요한 역량	체크																
① 시설개선 등 예산 확보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식																	
③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																	
④ 교육 및 정보 확보 및 제공																	
⑤ 조직관리 노하우																	
⑥ 기타( )																	
4. 귀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와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교육의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귀하는 사업주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체크</th> <th>항목</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①교육 의무화</td> <td></td> <td>⑥실시 주체</td> <td></td> </tr> <tr> <td>②교육 과정</td> <td></td> <td>⑦강사 역량</td> <td></td> </tr> <tr> <td>③교육 내용</td> <td></td> <td>⑧교육 시설(편의성 등)</td> <td></td> </tr> <tr> <td>④교육 주기와 시간</td> <td></td> <td>⑨실무활용 연계</td> <td></td> </tr> <tr> <td>⑤교육 실시방식</td> <td></td> <td>⑩이수시 혜택</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체크	항목	체크	①교육 의무화		⑥실시 주체		②교육 과정		⑦강사 역량		③교육 내용		⑧교육 시설(편의성 등)		④교육 주기와 시간		⑨실무활용 연계		⑤교육 실시방식		⑩이수시 혜택	
	항목	체크	항목	체크																					
	①교육 의무화		⑥실시 주체																						
	②교육 과정		⑦강사 역량																						
	③교육 내용		⑧교육 시설(편의성 등)																						
	④교육 주기와 시간		⑨실무활용 연계																						
⑤교육 실시방식		⑩이수시 혜택																							
<p>4-1. 귀하는 사업주 교육을 경영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책임자 교육(실무상 교육)과 차별화한 사업주 교육(경영상 교육)의 구분</p> <p>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p>																									
4-2. 다음 중 사업주 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명</th> <th>체크</th> </tr> </thead> <tbody> <tr> <td>①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 중소기업장 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td> <td></td> </tr> <tr> <td>②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 등 법령상 의무</td> <td></td> </tr> <tr> <td>③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안전투자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 등</td> <td></td> </tr> <tr> <td>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와 실무 - 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계획 수립, 성과측정 등</td> <td></td> </tr> <tr> <td>⑤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 안전인식 제고, 안전생활 실천 등</td> <td></td> </tr> <tr> <td>⑥ 조직관리 역량 강화 - 의사소통, 구성원 역량 및 참여 강화, 책임과 권한 부여 등</td> <td></td> </tr> <tr> <td>⑦ 기타( )</td> <td></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명	체크	①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 중소기업장 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②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 등 법령상 의무		③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안전투자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 등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와 실무 - 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계획 수립, 성과측정 등		⑤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 안전인식 제고, 안전생활 실천 등		⑥ 조직관리 역량 강화 - 의사소통, 구성원 역량 및 참여 강화, 책임과 권한 부여 등		⑦ 기타( )									
	교육과정명	체크																							
	① 안전보건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 중소기업장 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②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 역할과 의무 이해 -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 등 법령상 의무																								
	③ 안전경영의 성과와 필요성 이해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안전투자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 등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와 실무 - 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계획 수립, 성과측정 등																								
	⑤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 안전인식 제고, 안전생활 실천 등																								
	⑥ 조직관리 역량 강화 - 의사소통, 구성원 역량 및 참여 강화, 책임과 권한 부여 등																								
⑦ 기타( )																									
4-3.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절한 교육주기와 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주기    ① 매년    ② 2년마다    ③ 3년마다    ④ 최초 1회</p>																								
	<p>시간    ① 2시간    ② 4시간    ③ 8시간    ④ 기타( )</p>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6. 귀하는 사업주 교육의 참여도를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3가지만 체크)	교육과정명	체크
	① 정부의 근로감독 면제	
	② 안전보건개선자금(시설, 용자) 지원액 확대	
	③ 산재보험요율 할인	
	④ 법인세 감면	
	⑤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⑥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등 혜택	
	⑦ 사업운영을 위한 용자금 지원 확대(저금리)	
	⑧ 기타( )	
7. 기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 증진을 위한 귀하의 고견을 알려 주세요.		

※ 모바일 쿠폰을 제공받기 위한 귀하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진

연구기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명구 (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함은구 (조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배계완 (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이경희 (교수, 을지대학교)

연구원 : 조흠학 (교수, 인제대학교)

연구보조원 : 최동식 (박사과정, 을지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민용 (박사과정, 을지대학교)

보조원 : 공건웅 (학부생, 을지대학교)

연구상대역 : 김영형 (차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 연구기간

2024. 04. 11. ~ 2024.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4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555)

발 행 일 : 2024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교수 이명구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29  
팩 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4453-05-5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